

충남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2020. 11.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

제 출 문

충청남도의회 귀하

본 보고서를 「충남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 11.

충남연구원 원장 윤 황

차 례

I. 과업의 개요	1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3
2. 과업의 수립 방법 및 내용	6
II. 남북교류협력과 통일교육의 현황	9
1. 정부의 남북관계 의의와 방향	11
2.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의의와 현황	21
3. 중앙 및 지방정부의 통일교육 현황	49
III. 충남 남북교류협력의 현황	57
1. 충남 남북교류협력 정책 현황	59
2. 통일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65
IV. 남북교류협력의 국내 사례분석	69
1. 남북교류협력 체계와 분석 개요	71
2.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사례분석	75
3. 사례분석의 시사점	104
V. 충남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107
1. 충남 남북교류협력의 추진방향	109
2. 충남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체계 제안	113
3. 충남 통일기반 조성의 방향과 과제	124
[참고문헌]	133
[부 록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135
[부 록 2]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152

표목차

[표 1] 남북관계 변화 요인	13
[표 2] 정부 남북협력기금 연도별 조성 현황	14
[표 3]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운용 현황(2020년 4월)	15
[표 4]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장점	23
[표 5]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면제규정	25
[표 6] 광역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관련 조례 현황	27
[표 7] 광역자치단체 남북교류위원회 현황	28
[표 8] 광역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추진조직 현황	29
[표 9] 광역자치단체 통일교육위원회 현황	31
[표 10] 광역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담당조직 현황(2020년 5월 기준)	33
[표 11] 광역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기금 현황	34
[표 12] 남북교류협력 현황	36
[표 13] 2002-2005년 남북교류 인도적 지원사업 현황	37
[표 14] 2005-2009년 개발지원사업 전환기의 주요사업 현황	39
[표 15] 이벤트성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사례	43
[표 16] 스포츠 분야 남북교류협력 사업계획	44
[표 17] 역사분야 남북교류협력 사업계획	45
[표 18] 학술분야 남북교류협력 사업계획	46
[표 19] 농축산분야 남북교류협력 사업계획	46
[표 20] 문화관광분야 남북교류협력 사업계획	47
[표 21] 보건의료분야 남북교류협력 사업계획	47
[표 22] 인도적 지원분야 남북교류협력 사업계획	48
[표 23] 산림분야 남북교류협력 사업계획	48
[표 24] 광역자치단체의 평화통일교육 관련 조례 제개정 현황	55
[표 25] 기초자치단체 및 교육청 평화통일교육 조례제정 현황	56
[표 26] 충남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로드맵	61
[표 27] 충남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전략	61
[표 28] 충청남도 추진 남북교류협력 주요사업	63
[표 29] 충남 교육청 평화통일교육 사업 및 예산	66
[표 30]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 주요 사업 현황	79

표목차

[표 31]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단체	79
[표 32]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세부 추진사업(안)	81
[표 33] 경상남도 남북교류기금 조성 및 사업별 지출	82
[표 34]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의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관련 내용	85
[표 35]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2020년 9월 현재)	86
[표 36] 전라남도 남북교류 통일교육관련 보조사업 현황(2020년)	87
[표 37] 전라남도청 남북교류 및 통일교육 주요 사업	88
[표 38]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서 수행한 주요 사업	90
[표 39]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	92
[표 40] 인천시와 소속 군구의 남북교류협력기금 현황	93
[표 41] 남북교류협력담당관 주요 업무와 인력(2019년말 기준)	94
[표 42] 인천 통일+센터 기능과 주요사업	95
[표 43] 인천광역시 남북교류 추진계획 목표와 전략	96
[표 44] 인천광역시 남북교류 추진계획(2019)	97
[표 45]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	99
[표 46]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액	99
[표 47]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현황	100
[표 48] 경기도청 평화협력국의 주요 업무	101
[표 49]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세부 집행내역	102
[표 50] 울산광역시 남북교류실무추진단의 조례 근거	119
[표 51] 지방자치단체 통일교육 관련 조례 내용	126

그림목차

[그림 1] 과업추진 흐름도	7
[그림 2] 통일교육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50
[그림 3]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정책과제	51
[그림 4] 평화통일교육 추진체계	51
[그림 5] 경남남북교류연구센터의 운영방향	78
[그림 6]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의 기본구상	80
[그림 7] 충남 남북교류 추진 거버넌스 구축(안)	122

I.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배경 및 목적

(1) 과업배경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관심 증대

-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 이후 변화된 대북정책의 인식과 현재 북한의 상황에 부합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활동의 관심이 증대되는 상황
-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및 6월 판문점의 남북미간 만남 이후 실제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였고 2020년 본격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책적 주목을 받지 못함
- 이후 북미관계 및 북핵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하면서 2020년 6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고 남한의 비자주적인 행동을 비난하는 성명이 발표되는 등 남북관계가 냉각되는 과거의 분위기로 회귀
- 하지만 우리나라는 최근 통일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현재도 대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또한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관계개선의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

- 따라서 코로나-19의 감소 및 종식과 대북관계 개선의 시점에 맞추어 교류협력 활동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내실을 다지는 전략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들의 사업추진 제도화

- 2019년 10월 통일부의 대북지원사업 주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남북교류협력활동의 주체(대북지원사업자)로 가능하게 됨
- 위 규정 근거와 함께 2019년 11월 충청남도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대북지원 사업자로 선정되어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교류협력활동이 가능하게 되어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대두

▶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충남의 관심

- 충청남도는 민선7기의 중점 추진 11대 분야 중 하나인 '환황해권 시대를 주도하는 충남'에서 강조하는 사업으로 '남북지역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수행하고 있음
- 충청남도는 2018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하여 11월에 의결되었음
- 충청남도의 전담조직 또한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남북교류TF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2019년 1월 자치행정과 남북교류팀을 상시조직으로 구성하였고 팀장을 남북교류협력활동 경험을 가진 민간전문가를 채용하였음
- 2019년 기준 충남은 남북통일기금을 43억 적립하였으며 통일교육, 남북정상회담 사진전, 열린 통일강좌 및 통일공감 콘서트 등 교류협력 공감대 형성 관련 사업들을 추진중에 있음
- 이처럼 대외여건변화와 충남도의 관심과 적극적 정책추진에 따른 구체적 남북교류협력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지원의 방향이 필요한 상황임

(2) 목적

▶ 현 시점에서 충청남도의 남북교류협력 활동의 방향성 확립

- 2018년 충남도의 관련 조례 개정, 2019년 통일부 규정개정을 비롯해 2020년 남북의 인식 및 대북정책의 기조에 따른 충청남도의 남북교류협력 활동의 방향과 원칙의 수립
- 2020년 현재 남북교류관계가 매우 어렵다는 판단아래, 북한 및 통일부의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도출과 기반구축 방안

▶ 기존 충남도의 남북교류협력 활동의 보완

- 현재 충남도의 남북교류협력 추진의 체계와 함께 기존에 도출된 남북교류협력사업들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

▶ **충남 남북교류협력의 지속적 운영체계 확보**

- 현재 남북교류 초기단계인 충남의 교류협력활동을 위해 각 부문의 주체발굴 및 역량강화, 거버넌스 체계 등 선제적인 기반구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충남이 구체화 및 실행화 되지 못한 남북교류사업 발굴과 추진의 한계 극복을 위한 사업 검토 및 발굴을 통한 성공사례 마련의 방안

▶ **남북교류 인식확산을 위한 통일교육의 방안 마련**

- 충청도민들의 남북교류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대하고 장기적인 통일기반 마련을 위해 북한의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 교육 활동 지원체계를 제안

2

과업의 수립 방법 및 내용

1) 과업범위

(1) 공간적 범위

- ▶ 충청남도 광역자치단체와 소속 시군 기초자치단체

(2) 내용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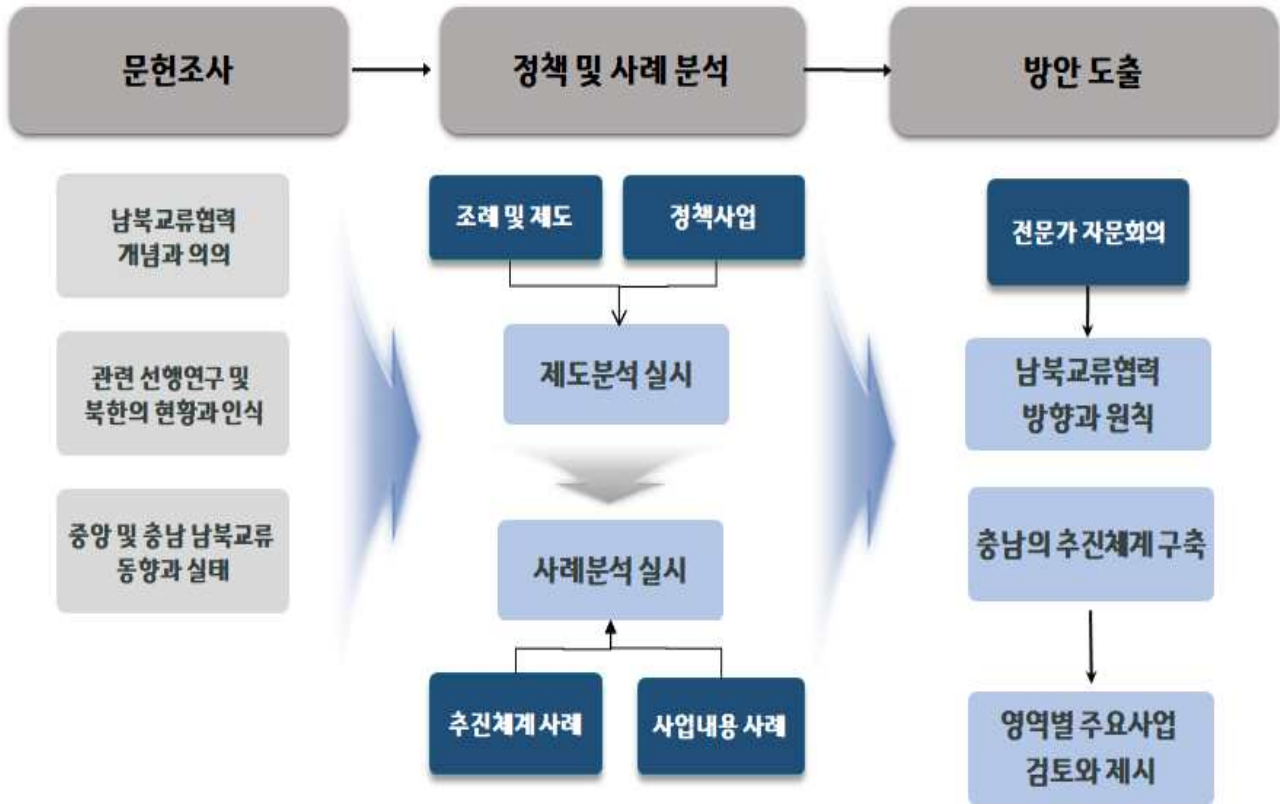
- 대북관계 및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의의
- 충남 남북교류협력 활동의 현황
- 타 광역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동과 운영체계
- 충남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위한 추진체계와 운영방안 및 통일교육

(3) 기대효과

-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협력의 추진체계 구축
- 충남 남북교류협력의 방향과 운영 사업도출 및 체계적 통일교육활동 수행

(4) 과업의 절차와 흐름

[그림 1] 과업추진 흐름도



II. 남북교류협력과 통일교육의 현황

1

정부의 남북관계 의의와 방향

1) 정부 남북관계의 개념과 의의

(1) 남북교류협력과 남북관계

▶ 남북교류협력의 개념

- 일반적인 교류협력활동은 주체들간의 이익추구와 목표달성을 위해 상호교류를 통한 의존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함(사득환, 2002)
-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교류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간에 무엇인가를 주고받는 양식으로 남북교류는 남북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양식으로 말할 수 있음
- 하지만 남북의 지방자치단체가 교류는 남북의 국가적 차원에서 공간적 특성에 따른 특성의 고려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헌법에 따른 영토의 범위 및 영토고권에 대한 복합적 검토가 필요함
- 남북교류협력의 본질적 목적은 남북의 통일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도구라는 정치적 특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류협력의 행위보다 영역 및 개념적 제한이 존재함

▶ 대북정책과 남북교류의 관계

- 국내의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구조적, 지정학적 요건의 영향을 받으며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종속적 흐름이 있었으나 대체로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를 보임
- 한국의 대북정책은 두 차원으로 규정할 수 있음(안용준 외, 2018)
 - 첫째, 협의적인 의미로 북한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통일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으로 규정할 수 있음
 - 둘째, 광의적인 의미로 통일문제와 관련된 대내외정책을 모두 통칭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음
- 결국 대북정책은 통일이라는 거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국가 및 지역과 상호교류 정책이라는 본질적 행위와는 구분됨
- 이러한 대북정책 차원에서 남북관계는 한국의 대북정책, 북한의 대남정책 및 국제정세의 영향을 받는 행위들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음(박영호, 2005)

▶ 남북관계 변화의 요인

- 일반적 국제교류와 구분되는 남북관계를 변화시키는 추동적 요인들에 대해서는 다음을 거론할 수 있음(신종호 외, 2016)
- 첫째, 대통령의 대북철학관으로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인식과 철학에 좌우되는 요인을 의미함
 - 한국 정치체제는 대통령중심제로 정책방향 결정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음
 - 역대 대통령들의 대북철학관이나 북한관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남북관계의 변화를 견인함
- 둘째,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상 국제정치의 역학관계는 매우 큰 변화의 요인
 -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의 대북전략에 대한 변화와 인과성은 남북간 상호체제에 대한 인식을 변화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 셋째,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는 국내의 대북관계에 큰 변화를 야기함
 - 시기별로 북한의 도발행위는 한국정부의 대북관계 인식을 변화하거나 고착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 국방부(2015)에 의하면 북한의 도발행위는 1960년대가 3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2000년대 276건으로 기록되고 있음
 - 이러한 북한의 도발행위는 기존 적대인식을 더욱 심화시키며 기존의 상생협력의 분위기를 적대적으로 변화를 야기하기도 함
- 넷째, 국내 정치의 환경과 정치적 수요
 - 대북정책 인식 규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정부들의 국내 정치적 수요를 거론할 수 있으며 남북문제 또한 국민의 삶과 연관되는 속성상 국내정치와 연관속에서 관계변화의 요인임
- 이러한 국내의 남북관계 변화요인과 함께 북한정부에서도 북남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존재하며 이를 종합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1] 남북관계 변화 요인

대한민국	북한
대통령의 북한관 및 철학관	이념적 체제, 최고지도자의 대남관
국제정세의 변화	국제정세의 변화
북한의 군사적 도발	대남 경제력의 우열
정부별 국내 정치의 수요	한국의 정치적 정세 변화

자료: 신중호 외(2016)

(2) 남북교류협력의 관련 법·제도 현황

▶ 남북교류관련 법 현황

- 남북교류협력 관련 기본법인 「남북교류협력법」은 1990년에 제정되어 남북 간의 방문, 주민접촉, 교역, 협력사업에 대한 규정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음
- 이와 같은 주요한 법 기반의 사업내용들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설치 및 구성하고 있으며 협의회는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에 대한 협의조정의 기능이 있으며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통일부에 설치하였음
- 2020년 정부는 교류협력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남북교류협력을 견인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안정성 보장: 남북교역, 경험 기업의 피해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근거 마련하며 남북경협기업에 대해 공적보험으로서 경험보험 가입 의무화 근거를 마련
 - 추진체계 강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규모와 권한을 강화하고 '경제협력사업'과 '사회문화협력' 사업을 별도 규율하며 승인요건도 차별화
 - 자치권 확대: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제2조)하며 정부와 지자체 간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실무협의회 근거를 마련(제8조의 2 신설)

▶ 남북교류 관련 조직 현황

- 남북교류협력 관련된 기능은 중앙정부부처의 통일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된 교류협력국을 2020년 교류협력실로 격상하였음
-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부서를 통일정책실, 기획조정실의 2실에서 통일정책실, 기획조정실, 교류협력실의 3실로 변경함
- 통일부의 교류협력실은 남북교류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들을 수행함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과 추진 / 분석 및 평가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장기 / 현안의 정책 수립 및 추진
-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 운영 및 제도의 기획
- 남북교류협력 관련 합의서 이행에 관한 사항
- 한반도 신경제구상 관련 기본계획 수립과 남북간 협의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원 및 조정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관련 남북한 주민 접촉, 왕래에 대한 기획 조정 승인 및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물자의 반출·반입 승인

- 이와 함께 주요한 남북교류협력 조직으로 북한 개성에 위치한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

-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연락 및 실무적 협의 지원
- 대북 교역 및 투자에 대한 알선과 상담
- 남북한 간 교역당사자 사이의 연락 지원
-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된 방북인원의 편의제공
- 남북한간 교역, 투자와 관련된 정보 자료 제공
- 교역상품전시회 등 남북경제교류협력 촉진활동의 추진 및 지원
- 남북한 교류협력과 관련된 기관 단체와의 연락 및 협의 지원

▶ 남북교류 관련 기금 및 재정 현황

- 남북교류협력 관련하여 정부는 남북한의 상호교류 협력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고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협력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 남북협력기금 관련하여 연도별 조성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2] 정부 남북협력기금 연도별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정부출연금	정부외출연금	공자기금예수금	운용수익 등	총조성액
합계	486,211	13	1,570,400	988,020	14,642,940
2020	47,000		177,000	1,355	165,355
2019	100,000		203,000	6,574	309,574
2018	63,711	11	278,400	12,153	354,275
2017	183,000	1	765,000	9,631	957,632
2016	92,500	1	207,000	27,399	326,900

자료: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현황(2020.06)

- 이와 같은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운용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 2019년 대비 2020년 운용계획 예산이 27.7% 증가하여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의 정책적 의지를 볼 수 있으며 특히, 인도적 문제 해결(구호지원) 및 경험기반의 용자 사업 예산이 증가하였음

[표 3]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운용 현황(2020년 4월)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계획	2020 계획	증감	증감율
남북협력기금 총계		1,490,298	1,902,762	412,464	27.7
사업비	1. 통일정책	6,341	4,125	△2,216	△34.9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6,341	4,125	△2,216	△34.9
	2. 남북사회문화교류	20,530	22,364	1,834	8.9
	-사회문화교류지원	20,530	22,364	1,834	8.9
	3. 인도적문제해결	572,345	620,921	48,576	8.5
	-이산가족교류지원	39,510	28,070	△11,440	△29
	-구호지원	81,539	141,759	60,220	73.9
	-민생협력지원	451,296	451,092	△204	0
	4. 남북경제협력	504,367	555,581	51,214	10.2
	-경제교류협력보험	9,500	4,750	△4,750	△50
	-경협기반(무상)	309,281	236,970	△72,311	△23.4
	-경협기반(유상)	119,655	252,025	132,370	110.6
	-경제교류협력대출(융자)	23,750	18,000	△5,750	△24.2
	-DMZ 평화적 이용	10,990	12,642	1,655	15.1
	-개성공단 운영대출	15,071	15,071	-	0
	-개성공단 기반조성	16,120	16,120	-	0
	합계	1,103,583	1,202,991	99,408	9
기금 운영비	1.기금관리비	100	90	△10	△10
	2.위탁수수료	2,250	2,250	-	0
	3.사업관리비	389	303	△86	△22.1
	합계	2,739	2,643	△96	△3.5
공자 기금 원리금	1.공자기금예수원금상환	203,000	548,600	345,600	170.2
	2.공자기금예수이자상환	100,873	98,907	△1,966	△1.9
	합계	303,873	647,507	343,634	113.1
여유자금 운용		80,103	49,621	△30,482	△38.1

자료: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현황 자료

2) 정부의 남북관계에 따른 정책의 변화

(1) 정부의 남북관계 시기별 변화

- 우리나라의 정치적 변화에 따라 대북관계도 정권별로 시기에 다른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었으며 이를 다음의 4시기로 구분할 수 있음
- 우선 본격적인 대북정책의 시작은 1988년부터 출범한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음

▶ 통일과 교류기반의 구축(1988~1997년)

- 1987년 정치적 민주화의 경험은 대북정책의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노태우 정부는 1988년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남북간 경제교류 촉진을 위한 개방조치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
- 이후 문민정부는 군사정권을 탈피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북 및 통일정책을 주도하였고 1994년에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하며 한국정부의 공식적 통일 방향을 정립함
- 이 시기는 민주화 이후 본격적인 한국사회에서 통일과 남북교류의 공공적 행위들이 시작되고 제도적 기반과 남북교류의 형태들이 구축되어 가는 시기였음(안용준 외, 2018)

▶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1998~2007년)

- 이후 김대중 정부 및 참여정부 시기에는 구축된 기반위에서 통일과 남북교류협력 활동이 분출되던 시기였음
- 김대중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북정책기조를 보였으며 2000년 6월 분단 이후로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이어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제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의 틀을 구축하였음
- 이 시기는 남북경협의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경험합의서를 마련하였고 남북합동음악회 등 문화, 예술, 종교, 체육 등 교류협력과 남북간 민간단체의 행사들이 다방면으로 확장되었음
- 참여정부 시기에는 미국의 대북강경기조 속에서도 남북교류협력과 경협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켰고 2003년도에는 북한의 대남 무역의존도가 높아져 중국에 이어 제2의 교역상대로 증가하였음
- 또한 본격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들이 도출되었는데 2005년부터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되었고 금강산 관광사업이 2003년 9월 본격화되었음(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2014)

▶ 남북관계 냉각(2008년~2017년)

-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관계는 갈등과 긴장이 반복되었는데, 금강산 관광객의 사망으로 인한 중단 및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인한 5.24조치(2010년)로 남북교역 및 투자 금지조치가 시행됨
- 이어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러한 정책기조는 유지되었는데, 북한은 3차 핵실험으로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남북간의 신뢰프로세스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주장하였음
- 하지만 2016년 개성공단의 운영중단과 함께 그동안 확장되어 왔던 남북교류 활동도 미흡한 상태로 유지됨

▶ 남북교류협력의 재추진

- 2017년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이 이어졌으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이후 남북관계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개선됨
- 이후 2018년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었고 2019년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의 만남을 기회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의 관계가 조성되었음
- 하지만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의 관계가 고착화되면서 남북교류 및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없고 코로나-19의 상황까지 겹치면서 남북관계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이에 대한 새로운 국면 돌파가 필요한 시점임

(2) 현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¹⁾

▶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방향

-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아우르는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고자 하는 우리 주도의 장기적으로 포괄적인 정책’으로 평화정착을 가장 우선시 하고 있음
- 이러한 기조 속에서 대북정책의 방향은 4가지로 제시하였음
 - 점진적 협력 확대: 북한에 물자와 재정 이전을 최소화 하는 범위에 한해 사회문화교류와 인도적 협력을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범위를 확대
 - 남북채널의 복원: 남북채널은 관계발전의 필수적 조건이며 의사소통 수단이 다양할수록 관계는 활발해질 수 있음
 - 민간협력 활성화: 정부와 비정부기구 및 민간단체의 협력적 관점은 대북정책 및 남북교류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것임
 - 국제협력 공조: 한국 대북정책에서 국제협력은 한국의 국제적 지지를 확대하고 북한이 평화적 체제변화를 유도하는 의미가 있음

▶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목표와 전략

-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핵문제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책,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이라는 3대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정부는 또한 이와 같은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을 함께 제시하였음
 - 첫째, 단계적, 포괄적 접근으로 북한에 대해 제재와 압박, 대화를 병행하면서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평화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면서 안보와 관련된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할 것임
 - 둘째,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병행 진전을 위한 접근으로 남북한이 지속적 교류를 통해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구축된 신뢰관계에서 많은 협력이 가능하게 될 것임

1) 박은주(2018), 대전세종연구원(2018)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 셋째, 남북합의의 법제화를 통해 관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한반도에 견고한 평화 구조를 정착하려는 전략임
- 넷째, 남북간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의 조성으로 주민들을 위한 경제적 환경개선 및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확대 등의 공동체적 관계를 구성하려는 전략임
- 이러한 3대 목표와 4대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원칙으로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의 내용을 종합하여 5가지를 제시하였음
- 이는 ① 우리주도의 한반도 문제해결, ②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유지, ③ 상호존중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 ④ 국민과의 소통과 합의 중시, ⑤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추진이 포함됨
-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대북정책의 전략과 5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를 위한 정책적 협력과 추진이 필요함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0년 8월)

- 통일부는 202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음
-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적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남북한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였음. 또한 분야별 협력사업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남북협력지구 운영 등의 규범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지방자치단체 시사점

- 반출·반입 물품 확대(2조)
 - 기존 “물품 등의 이동”에서 “용역의 제공,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인도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등”으로 반출·반입 물품을 확대함
- 협력사업자 확대(2조)
 - 남북교류·협력사업자를 기존 “법인·단체”에서 “법인·단체·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함
 - 지방자치단체가 교류협력사업자에 포함됨으로써, 향후 충남도는 향후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음.(제17조의2) 그러나 충남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통일부에 승인신청을 할 때, 사업추진의 재정추진력을 점검하기 때문에, 지자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향후 지자체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 교류협력사업자의 중개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있어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따라서 충남도는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와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협의회 구성(제8조의2)
 - 통일부 소속으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협의회를 신설하게 됨. 본 협의회를 통해 지자체간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중복, 교류협력지역에 중복 등을 협의할 수 있을 것임
- 교역사업자에 대한 지원
 - 우수교역업체 인증(제14조의2): 통일부장관은 우수교역업체를 인증하여 교류협력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 절차 간소화(제17조의2):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는 제출서류 간소화 등의 편의를 받을 수 있음
- 교역사업의 지속성 지원(제15조)
 - 조정명령에 의해 교역을 상당기간 중단하게 경우,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가능해 짐
- 협력사업의 구체화(제17조의2)
 - 경제협력사업, 사회문화협력사업, 인도협력사업 등의 성격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충남도는 향후 신설된 사업의 내용에 따라 통일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따른 충청남도의 대응방향

① 추진체계의 정비

-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협력의 교역당사자가 됨으로써, 충남도 차원에서 직접 주도적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官·民 협력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② 협력사업의 구체화

- 협력사업이 경제협력/사회문화협력/인도협력 등으로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법제화 될 것으로 전망됨. 충남도는 새로이 세분화된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교류협력을 실국별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

(2)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협력 영향

▶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① 미국 일방주의로부터 동맹·다자주의 회복을 통한 미국 외교정책

- 트럼프의 미국 1國 일방주의에 의한 미국과 북한과의 “1대1” 북핵접근은 지양될 것으로 전망됨
- 과거, 바이든 부통령 당시 ‘6자 회담’ 의 틀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모색하였음
- ‘6자 회담’ 의 구조에서 바이든은 한·미·일동맹 회복을 통해 중국·소련과의 협력체계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됨

② bottom-up방식의 북핵문제 해결 모색

- 바이든은 트럼프식의 top-down 방식을 지양하고, 실무협상을 통해 북핵문제를 포함한 동북아질서를 구상할 것으로 전망됨
- 북한과의 bottom-up 방식은 과거의 경험에서 비추어볼 때, 수년에 걸쳐 많은 시소게임 을 거칠 것으로 전망됨

③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의 부조화

- 바이든행정부는 북핵에 대한 제재완화 조건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바이든은 2004년 부통령 당시 북한에 대한 첫 제재를 주도하였고, 2006년에는 미국의 첫 대북제재 조치(『북한비확산법』)을 주도하였음
- 대선 TV토론에서도 “북한의 핵 축소를 전제로 미북정상회담이 가능” 하다고 함으로써, 북핵 문제해결을 전제로 함으로 분명히 함. 또한 “아무런 조건 없이 김정은을 만나지는 않겠다” 고 하여, “검증 가능한 북핵 폐기” 를 전제조건으로 강조하였음
- 바이든의 “先 북핵문제 해결” 주장은 “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 를 주장하는 김정은과 상반되고 있음
- 문재인행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대북제재와 북핵문제 해결을 단계적으로 점진적·동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갈등관계에 놓일 것으로 전망됨

④ 북한인권문제 제기로 인한 북미관계 악화

- 바이든은 2004년 북한인권법 제정을 주도하여, 북한 독재정권의 비민주성을 부각
- 바이든은 김정은을 “독재자, 폭군” 으로 표현함으로써, 북미간 신뢰구축에 어려움이 예상됨

▶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협력 영향

- 바이든행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북미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북미간 갈등이 단시일 내에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바이든행정부 출범에 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밖에 없는 문재인 정부이기에, 남북간 교류협력이 재개될 전망도 불투명할 것이며 따라서 향후 우리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도 현재의 답보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2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의의와 현황

1)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의 개념과 특성

-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간 교류협력은 지자체를 주체로 하는 복수간 교류협력으로 이들간 공동의 목표와 이익을 도모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임
- 하지만 남북의 지방정부들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가적 차원 및 국제정세의 차원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활동은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상호 이익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지만 남북의 지방정부들은 주체들 간의 동질성을 형성하는데 목적을 두는 교류활동을 수행함
- 또한 일반적 국제교류협력과 달리, 분단국의 교류협력은 통합을 전제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의미에서 통합을 저해하는 정치적 분야 등은 제외되는 경향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이러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서순복·금창호, 2016)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의 이러한 특성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성태규, 2008)

- 첫째, 지방자치단체간 남북교류의 목적은 교류주체들의 상호이익 도모 보다는 동질성 확보에 있다는 점
 - 둘째,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는 남북관계라는 큰 틀에 구속되어 있다는 점
 -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는 교류분야의 제약이 수반된다는 점
-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비정치적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 지자체가 서로 무엇인가를 주고받는 국제교류를 총칭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음(안용준 외, 2018)
 - 보다 구체적인 개념을 구성하면 남한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인도주의적 지원을 포함하여 학술, 문화, 체육, 경제 등의 비정치적, 비군사적 영역에서 북한의 지역 및 주민들과 상호 교류 및 협력하는 제반 사업과 활동으로 규정할 수 있음(경기연구원, 2018)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장점

- 중앙정부는 남북관계와 국제정세에 상당부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유연성 있는 남북교류협력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
- 또한 민간단체와는 달리 정부기관이라는 공공적 성격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의 공공성과 일관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유연성과 공공성, 일관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여 중앙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실천하는 역할을 담당함
- 남북교류협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의 필요성과 장점을 정리하면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경기연구원, 2018)
 - 첫째,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은 접근 채널과 교류 방식의 다양화를 수반하여 확대를 가져옴
 - 둘째,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은 실제 남북한 주민들간의 상호 이해와 민족 동질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
 - 셋째,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은 남과 북의 교류협력이 지속가능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넷째, 장기적으로 남북한 전 지역간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한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통일 논의와 관심의 확산을 통해 한반도 통일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음
 - 다섯째, 남북통일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남북한 주민들의 관심과 논의 그리고 열정을 이끌어내어 통일환경을 조성하고 통일의 시간을 앞당기는 역할 수행
-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행위의 장점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4]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장점

구분	주요 장점
내적통합	-통일에 대한 공론과 합의 형성 -시민 참여형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용이
사업의 필요성	-비정치적 교류협력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기능적 연계성 강화, 사업의 지속성 보장 -북한에 실질적 행정지원이 가능 -지역적 특성에 기반한 교류협력으로 남북한 간 이질성 해소와 격차 해소 촉진 -자체예산으로 민간단체보다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추진 가능

자료: 서울연구원(2018)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한계

-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이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남북교류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성공적인 추진결과는 찾기가 힘들고 성과는 미흡함
- 우선 남한과 북한 지방자치단체의 위계와 권한의 차이가 있는데 북한의 지방정부(인민위원회)는 권한이 없는 하위 행정기관에 불과하여 실질적 권한은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가 관장하는 구조로 볼 수 있음
- 결국 지방정부의 교류 또한 통일전선부를 대상으로 하는 북한 중앙정부와 관계를 의미하며 통일전선부 소속의 다양한 대남교류 외곽단체들과 주로 교류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 분야별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대남교류 단체: 민족화해협력연합회(인도지원, 사회문화 교류), 민족경제협력연합회(경제협력), 해외동포원호위원회(해외동포 사업), 조선아세아 태평양평화위원회(국제교류)
- 또한 북한은 교류행위에 대해 국제적 성격을 분단의 영속화로 간주하며 비정치적 분야에서 교류분야를 한정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방향

▶ 남북교류협력의 방식²⁾

- 종합교류방식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서 종합교류는 자매결연방식으로 대표되며 자매결연은 지방자치단체의 전통적인 교류수단으로 인적 물적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위해 상호간에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자매결연 방식은 특별히 제한되지 않으며 단체장의 상호방문 등 상징적 친선도모도 있지만 자매결연을 계기로 분야별 교류를 확대 심화하는 사례도 많음

2) 다음의 내용은 성태규·유병선(2008)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함

- 반면에 자매결연 방식은 친선도모처럼 관계개선에는 기여하지만 구체적이고 특정분야의 실질적 교류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미흡함

• 개별교류방식

- 개별교류방식은 종합교류방식과 달리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교류를 추진하는 것을 의미함
- 개별교류방식은 특정분야의 교류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에 있으며 특히 경제통상분야의 교류가 경제활성화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교류로서 개별교류방식의 성격을 보여줌
- 개별교류방식의 교류협력행위는 다양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문화체육분야, 행정분야, 청소년 분야, 경제통상분야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개별교류방식은 체제나 이념이 상이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간에도 교류의 추진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 종합교류방식에 비해 교류자치단체가 상호 이해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 측면은 저감되는 특징이 있음
- 따라서 남북교류협력과 같은 특성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종합교류방식보다 개별교류방식을 통해 상호 신뢰 및 동질성 회복을 위한 행위의 수행이 보다 효과적일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의 전제조건

- 앞서 서술한 바처럼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비해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주체인 동시에 민간조직에 비해서는 정책수행에 따른 사업기획과 재정동원의 역량을 갖춘 특징이 있음
- **(북한의 체제고려)** 북한의 지방정부는 교류의 권한이 없고 중앙의 통일전선부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교류의 방향성 수립이 필요함
 - 특히 북한은 종합교류방식인 자매결연보다는 개별교류방식을 선호하며 현재까지 성사된 자매결연 사례는 없음
 - 남한의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의 특정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을 추진함에도 북한의 지방정부는 이에 대응할 권한이 없어서 사실상 성사되기 어려움
 - 북한은 한국과의 남북교류를 체제 특성상 민화협과 민경련으로 일원화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교류는 문화체육분야로 한정하여 민화협이 담당하고 있음
 - 북한은 남한 지자체를 중앙정부와 같은 정부개념으로 인식하기 보다 민간단체와 동일한 협력대상자로 인식하고 있음
- **(국내적 요건고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 행위를 위해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다음의 조건들을 고려해야 함
 -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 협력사업으로 인하여 남한과 북한 간에 분쟁을 일으킬 사유가 없을 것
 -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없을 것
 - 협력사업을 하려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기술·경험 등을 갖추고 있을 것
 -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없을 것

- (UN 대북제재 고려) 국제적으로는 UN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북한의 핵확산 금지를 위한 대북제재 조치가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으며 이에 따른 대북제재 예외조치에 대한 접근 고려가 필요함
 - UN 대북제재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대북인권 개선 요구가 높아지면서 2017년 대북제재 2397호 25항을 통해 대북제재 관련 면제조항을 두었음
 -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북한 내 인도적 지원을 주 목적을 추진해야 함
 - 2018년 8월 발표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면제 규정’을 발표하고 지침서류를 배포하였음
 - 아래 표와 같은 안전보장이사회의 면제 규정을 충족해야 함

[표 5]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면제규정

구분	주요 내용
면제 요청 형식	-북한에 제공할 인도주의적 지원은 북한주민의 이익을 위한 것 -북한 수혜자에 대한 설명 및 수혜자 선발을 위해 채택된 기준 -위원회 면제가 필요한 이유 -향후 6개월 이내에 북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제공될 것인지와 상품 및 서비스의 수량 그리고 관련 사양에 대한 자세한 설명 -향후 6개월 이내에 북한으로의 이전 계획 일자 -선적을 위한 입출항 항구를 포함한 계획된 운송 경로와 방법 -신청서 제출 시 확인될 수 있는 양도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 -이전과 관련된 금융거래 -수량과 계획된 일자를 포함한 모든 계획된 운송 물품과 서비스의 목록을 담은 부속 서류 -북한에 대한 지원이 의도된 목적으로 사용되고 금지된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면제의 제한	-위원회에 면제 요청하는 모든 국제 또는 비정부기구는 제안된 거래 및 관련 당사자의 모든 측면을 관할하는 회원국의 관련 규제 및 라이선스 요구사항을 완전히 준수해야 함
면제 요청 방법	-유엔기관과 국제적십자위원회, 국제적십자연맹,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위원회에 직접적으로 면제요청을 할 수 있음 -국제 또는 비정부기구가 위원회에 면제를 요청할 방법 ① 회원국: 결의안은 회원국에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북한에 제공하고자 할 때는 국제 또는 비정부기구를 대신하여 회원국이 위원회에 면제 요청을 제출한다 ② 유엔: 회원국이 그러한 요청을 위원회에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북한의 유엔 거주 코디네이터 사무소는 국제 또는 비정부기구를 위해 위원회에 면제요청을 한다 -요청기관은 과거에 북한이나 다른 국가에 원조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국제 또는 비정부 기구이며 비정부기구는 관련 회원국에 의해 국가적으로 인정됨 -북한에 제공될 지원의 본질은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한 것이며 북한의 주민에게 이익이 있어야 한다.

자료: UN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면제 규정 참조

- 이러한 면제규정과 함께 대북제재의 규정을 참조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의 남북교류협력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의 검토가 필요함
 - 지원가능한 품목과 규제대상인 품목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북한주민의 생계와 관련된 인도적 지원과 교류는 규제에서 제외 등)

- 교류협력행사 관련 비용과 같은 대북 금융제재에 대한 검토(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사용과 함께 대북제재위원회에 투명한 보고가 중요)
- 북한 대상 물자 운송 검토(문화체육행사 등 개최 위한 주요 운송수단의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는 선박 및 항공의 이착륙, 입항을 금지하기 때문에 사전에 UN, 미국, 중앙정부의 검토가 필요함)

2)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현황

(1)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기반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제도적 기반

- 2020년 기준 현재 광역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관련 조례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 남북교류협력 관련된 조례는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모두 제정되어 있으며 대부분 90년대 말-2000년대 초중반 남북교류협력이 가장 활발한 시기에 제정되었음
- 이 시기에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제도나 추진체계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앙정부의 관련 법률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조직과 기금을 마련하기 시작함
- 통일교육에 관련된 조례는 모두 9개 광역자치단체에 제정되어 있으며 이와 별도로 충청남도는 남북교류협력과 통일교육을 하나의 조례로 개정한 전국에서 유일한 사례임
- 통일교육 관련 조례의 재·개정은 2011년-2016년의 대북관계가 경색되어 남북교류협력이 사실상 중단된 기기로 교류협력 활동의 불가능으로 인한 내부적 인식개선과 확대로 정책의 방향전환을 의미함
- 최근 2018년 이후 강원, 충남, 경남, 울산, 인천 등 일부 지자체들이 조례를 개정하였는데 통일교육 및 기금 등 최근의 대북관계의 변화와 내부적 상황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임

[표 6] 광역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관련 조례 현황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	통일교육 관련 조례
서울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04. 7. 20)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 (2015. 4. 2)
부산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07. 7. 11)	-
대구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05. 8. 10)	-
인천	인천광역시 평화도시제정에 관한 조례 (2008. 10. 8)	인천광역시 평화도시제정에 관한 조례 (2008. 10. 8)
광주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03. 1. 1)	광주광역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2011. 9. 15)
대전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08. 6. 20)	대전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조례 (2015. 12. 18)
울산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06. 4. 6)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15. 7. 30)	-
경기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2001. 11. 9)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1. 4. 7)
강원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1998. 12. 31)	강원도 통일교육·문화 활성화 조례 (2016. 12. 30)
충북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2012. 11. 2)	-
충남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1. 11. 10)	
전북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07. 12. 28)	전라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2016. 9. 30)
전남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2003. 6. 5)	전라남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1. 10. 20)
경북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08. 1. 10)	-
경남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2005. 4. 7)	-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07. 5. 9)	제주특별자치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6. 5. 13)

(2)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주체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관련주체

-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에 의거하여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에 대한 심의와 도의 남북교류 정책계획 및 활동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음
- 이러한 광역자치단체 남북교류위원회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7] 광역자치단체 남북교류위원회 현황

지역	조직명	인원구성	임기	위원장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	30명 이내	2년 (연임가능)	위원 중 호선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	50명 이내	2년 (2회연임)	시장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	20명	2년 (1회연임)	행정부시장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평화도시조성위원회	30명 이내	2년 (1회연임)	시장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	30-50인	3년 (연임가능)	위원중 호선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	20인	2년 (1회연임)	위원중 호선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	30명 이내	2년 (1회연임)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	20인 이내	2년 (1회연임)	행정부시장
경기도	경기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	30명 이내	2년 (1회연임)	위원중 호선
강원도	강원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	20명 이내	2년 (연임가능)	도지사 임명
충청북도	충청북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	25명 이내	2년 (2회연임)	행정부지사
충청남도	충청남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	30명 이내	2년 (2회연임)	행정부지사
전라북도	전라북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	20명 이내	2년 (1회연임)	정무부지사
전라남도	전라남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	30명 이내	2년 (연임가능)	행정부지사
경상북도	경상북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	20명 이내	2년 (연임가능)	행정부지사
경상남도	경상남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	20명 이내	2년 (1회연임)	위원중 호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30명 이내	2년 (연임가능)	위원중 호선

- 이러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17개 시도에 모두 설치되어 있으며 경기도를 제외하고 모두 남북교류협력위원회로 구성되었음

- 위원수는 대부분 20-3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는 50명, 광주광역시는 30-50명으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음
- 광주광역시(3년)를 제외한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 연임이 1-2회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은 17개 지자체 중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는 시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단체장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고 7개 지자체(대구,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는 부단체장이 맡고 있음
- 이외에 위원장은 강원도는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6개 지자체는 위원 중 호선하도록 되어 있음

▶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관련 조직

- 조례를 통해서 17개 시도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포함한 추진조직의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 우선 17개 시도 중에서도 위원회 소속으로 하위조직 운영의 근거를 갖추고 있는 곳은 충청남도를 포함하여 12개로 파악됨
- 그 중 실무위원회의 형태가 6개(부산, 인천, 충북, 충남, 경북, 제주)이며 실무기획단이 3곳(경기, 강원, 전북)이고 그 외에 실무추진단(울산), 전문위원회(경남)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음
- 또한 특징적인 점은 실무위원회 등은 대부분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정도로 명시하지만 실무기획단이나 실무추진단은 자료수집, 조사발굴 수행 및 안전 검토 등의 구체적인 기능을 명시하고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역할을 강조함
- 경기도와 전라북도는 남북교류협력 관련된 연구조사를 시도 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표 8] 광역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추진조직 현황

지역	조직명	세부조직	사업위탁	기타 협력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		법인단체, 개인 사업위탁, 보조금 지원 가능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		법인단체, 개인 사업위탁 가능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평화도시조성위원회	실무위원회	법인단체, 개인 사업위탁 가능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의 위원회 출석 요청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남북 교류협력위원회		법인단체, 개인 사업위탁 가능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남북 교류협력위원회	실무추진단 (자료수집, 조사, 사업 발굴 수행)	법인단체, 개인 사업위탁 가능	
세종특별 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법인단체, 개인 사업위탁 가능	
경기도	경기도남북교류 협력위원회	실무기획단 (관련연구 연구기관 의뢰 가능)	법인단체, 개인 사업위탁, 보조금 지원 가능	-대학에 북한과 교류협력 관련 학과 설치 장려 -민간전문가 등 국외여비 지원
강원도	강원도남북교류 협력위원회	남북교류협력기획단 (자료수집조사, 안건 사전 검토 조정)	법인단체, 개인 사업위탁, 보조금 지원 가능	
충청북도	충청북도남북교류 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 (문화·체육·경제·농업 ·인도주의사업 분야별 구성)		
충청남도	충청남도남북교류 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 (문화·체육·경제·농업 ·인도주의사업 분야별 구성)	법인단체, 사업위탁, 보조금 지원 가능	
전라북도	전라북도남북교류 협력위원회	실무기획단 (관련 연구를 연구기관 의뢰)	법인단체, 개인에게 보조금 지원 가능	관련사업 시·군에 보조금 교부
전라남도	전라남도남북교류 협력위원회	실무기획단	법인단체, 개인 사업위탁 가능	
경상북도	경상북도남북교류 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 (문화, 체육, 학술, 농림, 수산해양, 경제, 보건의료, 교육 분야별 구성)	법인단체, 개인 사업위탁 가능	
경상남도	경상남도남북교류 협력위원회	전문위원회 (경제협력, 사회문화 등 분야별 구성)	출자출연기관, 법인단체, 개인 사업위탁 가능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 (분야별 구성)	법인, 단체에게 사업일부, 전부 위탁가능	

- 또한 17개 중 14개의 시도 조례에서는 남북교류협력 관련하여 법인, 단체, 개인에게 사업위탁이나 보조금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사업에 민간조직 및 단체들의 참여를 지원·독려하고 있음
- 이와 함께 경상남도의 경우는 민간단체와 함께 경남의 출자출연기관에게도 남북교류협력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함
- 이외에 기타 주체와 협력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전라북도의 경우는 남북교류협력 관련하여 시·군에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시군과 함께 협

력사업 추진을 제도화 하였고 경기도의 경우 지역 내 대학과 협력하여 북한과 교류협력 관련 학과 개설을 장려 및 지원함을 제시하였음

▶ **광역자치단체 통일교육 관련 위원회**

-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에 의거하여 통일교육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통일교육계획 수립 및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이러한 광역자치단체 통일교육위원회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9] 광역자치단체 통일교육위원회 현황

지역	조직명	인원구성	임기	위원장	세부조직
서울특별시	-	-	-	-	-
부산광역시	-	-	-	-	-
대구광역시	-	-	-	-	-
인천광역시	-	-	-	-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통일교육활성화 지원위원회	20명 이내	2년 (1회 연임)	위원중 호선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통일교육활성화위원회	-	-	-	-
울산광역시	-	-	-	-	-
세종특별자치시	-	-	-	-	-
경기도	경기도 평화통일교육위원회	20명 이내	2년 (1회 연임)	평화부지사	평화통일 교육협의회
강원도	-	-	-	-	-
충청북도	-	-	-	-	-
충청남도	-	-	-	-	-
전라북도	전라북도 평화통일교육위원회	15명 이내	2회 (1회 연임)	행정부지사	-
전라남도	전라남도 통일교육활성화위원회	15명 이내	2회 (연임 가능)	행정부지사	-
경상북도	-	-	-	-	-
경상남도	-	-	-	-	-
제주특별자치도	-	-	-	-	-

- 위원수는 15명-2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주광역시 20명, 경기도 20명으로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음
- 통일교육위원회 위원장은 5개 지자체 중 광주광역시는 위원 중 호선이며, 경기도는 평화부지사, 전라북도, 전라남도는 행정부지사가 맡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조직**

- 이러한 남북교류 관련 조례의 정책적 실현을 위해 설립된 광역자치단체의 남북 교류협력 전담조직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 남북교류협력 등 특정 정책추진에서 전담부서 설치와 역할 및 기능 배분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정책업무에 대한 추진의지와 관심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임
-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남북교류협력 관련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중인 곳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4개 지역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자치행정 및 자치분권 관련된 부서 소속의 팀 단위로 주로 운영하고 있음
- 부서의 담당자 또한 해당 실국 및 부서에서 남북교류협력만을 전담으로 담당하는 인력은 강원도가 20명 내외, 서울시 15명, 인천시 9명, 경기도 7명 수준이며 대체적으로 2-4명 정도의 실무자를 두고 있는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추진에서 독립된 전담부서와 업무에 따른 인력배치는 정책의 중요도와 적극적 추진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점에서 현재도 남북 교류협력 관련 정책의 주요한 실행 사례지역임을 판단할 수 있음

[표 10] 광역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담당조직 현황(2020년 5월 기준)

지자체명	남북교류협력 담당 조직	총원	비고
서울특별시	남북협력추진단(3급) : 2과 7개팀	30명	국
부산광역시	성장전략국 남북협력기획단(4급) : 1과 2개팀	10명	과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교류협력팀(5급) : 1팀	4명	팀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남북교류협력담당관(4급) : 1과 3개팀	12명	과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 남북교류협력과(4급) : 1과 3개팀	12명	과
대전광역시	자치분권국 자치분권과 남북교류팀(5급) : 1팀	4명	팀
울산광역시	행정지원국 시민소통협력과 평화협력팀(5급) : 1팀	4명	팀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문화국 자치분권과 자치협력팀 남북교류담당(6급)	1명	1담당
경기도	평화협력국(3급) : 3과 11개팀	60명	국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 남북교류과(4급) : 1과 4개팀	16명	과
충청북도	행정국 자치행정과 남북교류소통팀 : 1팀	6명	팀
충청남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남북교류팀(5급) : 1팀	4명	팀
전라북도	대외협력국 국제협력과 남북국제교류협력팀(5급) : 1팀	2명	팀
전라남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남북교류팀(5급) : 1팀	4명	팀
경상북도	미래전략기획단 사회기획팀(5급) : 1팀	3명	팀
경상남도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남북교류팀(5급) : 1팀	4명	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평화대외협력과 평화사업팀 : 1팀	5명	팀

▶ 광역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기금 현황

- 정부는 정책활동을 위한 재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실제 추진의 가능성과 여부는 재정확보로 인한 안정성이 매우 필수적임
- 이에 따라 모든 광역지자체에 제정된 조례에서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확보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금으로 사업재정을 마련하고 있음
- 단순한 기금 적립에서 벗어나 광주, 울산, 충남, 전북, 경북, 제주 등의 지자체는 기금조성 외에도 도 정책보조사업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특히 매년 사용금액 이상의 기금적립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안정적 재원 마련을 도모하고 있음
- 2020년 기준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100억원 이상 적립한 지자체는 경기도, 강원도, 서울시이고 부산시도 근접하고 있음
- 반면 울산, 세종은 20억원도 안되어 기금적립이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으며 대전, 충북, 충남, 경남은 50억원 미만의 기금적립 현황을 보이고 있음
- 2020년의 조성액을 살펴보면 서울이 158억 수준으로 기금을 대규모 조성하였으며 이외에는 경남이 20억원으로 최근 매우 적극적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적립하고 있음
- 충남도 2020년 10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적립하여 부산, 충북, 경북과 유사한 수준으로 볼 수 있음

[표 11] 광역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지자체명	2019 조성액	2019 집행액	2019 12월 현황	2020 조성액	2020 1월 현황
서울특별시	39,075	7,314	32,391	15,867	48,258
부산광역시	8,552	353	8,199	1,000	9,199
대구광역시	5,242		5,242		5,242
인천광역시	6,665	656	6,009		6,009
광주광역시	6,378	40	6,338		6,338
대전광역시	4,130		4,130	64	4,194
울산광역시	1,000	100	900	500	1,400
세종특별자치시	1,100		1,100		1,100

경기도	43,515	4,641	38,874	456	39,330
강원도	18,841	414	18,427	83	18,150
충청북도	3,442		3,442	1,000	4,442
충청남도	3,992	697	3,295	1,000	4,295
전라북도	5,425		5,425		5,425
전라남도	4,000	500	3,500	1,500	5,000
경상북도	5,246		5,246	1,094	6,340
경상남도	2,000	300	1,700	2,000	3,700
제주특별자치도	6,323		6,323		6,323
합계	165,556	15,015	150,541	24,564	175,102

(2)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흐름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수행

- 국민의 정부시기에 남북교류협력이 가장 활성화된 시기였으며 2000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남북교류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됨
- 현재의 문재인정부까지 각 시기별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의 변화는 있으나 남북교류 특성상 중앙정부의 태도 및 교류활동은 유사함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사업의 시기별 구분에 대해 1998-2001년, 2002-2005년, 2006-2010년, 2011-2017년, 2018년 이후로 유사하게 분류하고 있으며 모색(발아, 태동)기, 인도적 지원사업시기, 개발지원사업 전환, 쇠퇴(전면 중단)기, 재추진기 등으로 명칭 또한 대동소이함
- 따라서 본 과업에서도 남북교류협력의 구체적인 시기구분에 대해 남북교류협력의 모색⇒인도적 지원사업 추진⇒개발지원사업으로 전환⇒남북교류협력의 중단⇒남북교류협력 재추진으로 구분함

▶ 남북교류협력의 모색(1999-2001년)

-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한의 많은 지자체들에 의한 교류협력사업들이 추진되었으며 첫 출발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감귤보내기' 사업이라 할 수 있음

[표 12] 남북교류협력 현황

심사위원회	지자체	사 업 명	결과
1차 (‘00.8)	부산	제81회 전국체전 금강산 성화 채화	성사
	대전	제2차 WTA 총회 북한과학도시 초청	무산
	경북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북한인사 초청	무산
	제주	한라에서 백두까지 통일염원 합수·합토	무산
2차 (‘00.10)	충남	2002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북한 참여	무산
	충남	2002 동아마라톤 북한 초청	무산
	경남	남북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방북	무산
3차 (‘00.12)	강원	「금강-설악권」 솔잎흑파리 공동예방사업	성사
	강원	남북공동 어린 연어 방류사업	성사
	충남	제82회 전국체전 성화 채화	무산
	충남	특산품 교류전 북한 참여	무산
	전북군산	오페라 「탁류」 북한 공연	무산
	전남목포	신의주시 인도적 지원 사업	성사
4차 (‘01.1)	전북	군산-전주 간 국제마라톤대회 북한 초청	무산
	강원철원	남북 철원군 간 농업교류	무산
	강원철원	궁예·태봉국 학술회의 및 태봉제 북철원 초청	무산
5차(‘01.5)	대전	북한도시 WTA 참여를 위한 남북교류사업	무산
6차 (‘01.8)	서울강동	선사문화학술회의	무산
	강원고성	농축산분야 교류·협력 추진	무산
	전남	우량씨감자 생산지원	무산

- 모색기 기간 동안 많은 교류협력사업들이 추진되어 정부(행정자치부)는 지자체가 신청한 총 30건 중 20건을 승인하였지만 실제로 북한과의 교류협력이 성사된 것은 4건에 불과함
- 이처럼 교류협력사업의 과도가이자 탐색기였던 시기에 남한의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를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충청남도, 2018)
 - 북한이 수용하기 어려운 남북교류사업으로 주로 남한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
 - 중앙정부 및 중국창구를 주로 활용한 북한과 안정적 접촉 창구의 확보 어려움
 - 교류권한이 없는 북한 정치체제와 지방정부에 대한 인식 부족
 - 남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주최행사에 북한의 과도한 요구

▶ 인도적 지원사업의 추진(2002-2005년)

- 모색기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로 추진한 사회문화교류는 북한의 입장에서 체제 유지 차원에서 당시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북한은 경제적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인해 실익이 크지 않은 이벤트성 사회문화교류 사업이 성사되기 어려운 환경
- 따라서 2002년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은 북한 당국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고 모색기에서 성과를 낸 제주도 및 강원도의 사례에 대한 제도적 확산의 의미도 있음(통일연구원, 2018)
- 특히 2002년 영변의 북핵 시설사건으로 인해 대북교류협력은 민간단체를 통한 우회적인 인도적 지원사업 중심으로 전환되어 주로 실시됨

[표 13] 2002-2005년 남북교류 인도적 지원사업 현황

지자체	년도	사업내용 및 사업품목	금액 (백만원)
경기	2002	-경운기 200대, 지붕개량제 180천㎡, 축구공 2002개	1,000
	2004	-농업: 경운기 100대, 콤팩트 20대 -보건: 치과장비 5세트, 환자수송용 버스 5대 -식품: 평양 식품가공공장 설치(착공) -구호: 긴급구호 의약품 지원	1,340
	2005	-벼농사 시범사업(3ha) 및 농기자재 지원 등	1,936
강원	2000	-못자리용 비닐 27,000롤	234
	2001 ~ 2005	-매년 어린연어 공동방류(50만~55만 마리) -연어 부화장 건설(부화장비 및 건축자재) -금강산 산림 병충해 방제약품 및 기자재	4,284

전남	2003	-평남 대동군 농기계수리공장 건설 지원	470
	2004	-대동군 농기계수리공장 수리 부품 및 장비 지원	470
	2005	-못자리용 비닐, 모내기 및 온실 자재 등 지원	680
제주	1999 ~ 2005	-감귤지원: 1999년(4,336톤), 2000년(3,031톤), 2001년(6,105톤), 2002년(4,000톤), 2003년(7,500톤), 2004년(8,107톤), 2005년(3,049톤) -당근 지원: 2000년(2,000톤), 2001년(4,000톤), 2005년(7,000톤)	4,510
제천	2004	-북고성군 삼일포 과수원 조성사업	
서울	2005	-북한 아동 대상 제과 원료 지원	1,030
경남	2005	-남북농업교류를 통한 식량 증산, 기술교류	105
전북	2005	-농기계 수리공장 및 농기계 지원	1,786
인천	2005	-페인트 124톤 등	3,130

- 특히 이 시기는 경운기 및 콤파인과 같은 농기계 지원과 기술교류 등의 농업분야에 집중된 특징이 있음
- 대표적으로는 경기도가 2002년 경운기 200대 지원을 시작으로 경운기 및 콤파인 지원과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농업과학원과 벼농사 시범사업의 추진하였고 강원도는 못자리용 비닐 지원과 연어치어 공동방류 사업, 금강산 산림 병충해 방제 약품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
- 이와 함께 보다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 제정, 기금 조성, 전담부서 설치 등 제도와 추진체계를 갖추기 시작(통일연구원, 2018)

▶ 개발지원사업으로 전환(2006-2009년)

- 이전의 인도적 지원사업이나 긴급 구호사업이 주로 수행되었다면 2006년 이후에는 단순한 물자지원에서 탈피하여 북한의 개발지원사업으로 프로젝트성격으로 전환되었음
- 이는 북한이 2005년부터 일방적으로 인도적 지원사업이 아닌 개발지원사업으로의 전환을 요청하였기 때문인데 2006년부터 국내의 지방자치단체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를 본격적으로 정비함

[표 14] 2005-2009년 개발지원사업 전환기의 주요사업 현황

지자체	년도	교류협력사업 내용	진행상황
서울	2005	-북한 아동 대상 밀가루 등 제과원료 지원 -남북 전통공예 교류전	완료
	2006	-금강산 윤이상 음악제 개최 -평양 조선중앙연구소 의료장비 지원(~2009년)	완료
부산	2006	-평양 향생제 공장 건립 및 원료지원사업(~2007년)	완료
인천	2005	-제16회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 북한참가	완료
	2007	-평양축구장 현대화 사업 지원	완료
	2008	-평양 치과병원 리모델링, 창광거리 현대화 사업	완료
울산	2007	-영유아 이유식 생산시설 지원	완료
	2008	-결핵치료약품지원	완료
강원	2003	-연어부화장 건설	완료
	2005	-금강산 병해충 방제사업	계속사업
		-원산농업기술소 개보수작업 -남북강원도 민속문화축전	완료
		-남북강원도 겨울철 체육경기 개최	완료
	2008	-안변 연어사료공장 건설	완료
경기	2005	-평양시 룡성구역 벼농사 시범농장 사업 -평양 강남군 당곡리 협동농장 조성·농업현대화 사업 -개성 산림녹화사업	완료
		-개성 양묘장 조성	완료
	2008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 -남북유소년 축구교류 지원	계속사업
전남	2007	-평남 대동군과의 농업협력사업	계속사업
		-평양 발효콩 공장 건립 사업	완료
	2008	-평양 발효콩 빵공장 건립 지원	완료
전북	2007	-농기계 수리공장 및 농기계 지원	계속사업
		-평남 남포시 대대리 양돈장 건설 지원 사업	완료
경남	2005	-평양시 강남군 장교리 협동농장 농업협력사업	계속사업
제주	2005	-흑돼지 사육협력사업	계속사업
충북 제천	2004	-북고성군 삼일포 과수원 조성사업	완료
	2005	-삼일포 농장 관리동 신축 지원	완료
	2007	-제천시-북고성군 남북협력사업 확대 지원	계속사업

- 개발지원 사업은 북한 현장의 주민접촉의 빈도가 높고 진행과정에서 북한 당국자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다 유연한 교류협력행위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짐
- 개발지원사업 과정에서 농업, 축산, 보건의료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었는데, 농촌개발지원사업이 북한도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효과적으로 수행됨
- 특히 이 시기에 충청남도는 2006년 인삼을 생산, 가공하는 합영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금산지역 인삼재배 농가와 인삼가공업자들이 설립한 '통일고려인삼영농조합법인'을 통해 북한 광명성총회사와 계약을 체결함
- 이후 2007년 합영회사의 이름을 통일고려인삼으로 확정하고 개성-평양 고속도로 평양 나들목 인근에 합영회사를 준공하였음(김영윤, 2008)

▶ 남북교류협력의 중단(2010-2017년)

-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2010년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5.24조치가 시행되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거의 중단되었음
- 5.24 조치 이후 순수한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모든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중단되었으며 2012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일부 유지되던 민간차원의 인도적 자원사업조차 중단되고 2016년 개성공단도 폐쇄됨(안용준 외, 2018)
- 특히 2012년 4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서 일부 유지되던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조차 전면 중단되어 남북교류협력 자체가 성사되지 못했음
- 이 시기 유일하게 추진된 사업은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본부가 추진한 '말라리아 남북 공동 방역사업'으로 5.24 조치 이후 지방자치단체 기금이 투입된 유일한 사업임

▶ 남북교류협력의 재추진(2018-현재)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5월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급진전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간 교류협력의 분위기도 개선됨
- 이후 2019년 10월 통일부의 '인도적 대북지원 및 남북협력 사업처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대북지원사업자로 역할 수행이 가능해짐
- 이러한 규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2019년 11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충청남도가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됨
- 2020년 7월 현재 그 이후 강원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의 3곳이 추가적으로 대북지원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성남시가 선정되었음

(3) 성공적인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함의

▶ 성공적인 남북교류협력의 사례³⁾

-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가 북한과 공동으로 진행한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
 - 본 사업은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교류가 전면 중단된 시기에 진행된 성공사례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교류성공가능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임
 - 우선 남북한 지자체 모두 말라리아로 인한 전염병이 확산됨에 따라 공동으로 협력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 사업으로 남한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공동방역을 추진해야 예방의 효과성이 있는 매우 적합한 추진 아이템임
 - 2008년-2011년 공동방역사업을 추진하였고 상호정보 교환을 합의하여 결과적으로 말라리아 환자의 높은 감소율을 보이는 효과를 달성하였으며 북한 지자체와 협력 뿐만 아니라 남한의 지자체들간 협력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달성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제주도 ‘감귤보내기 운동’사업
 - 1999년부터 시작된 제주도의 감귤보내기 운동사업은 2002년 서해교전과 2004년 북핵 실험 등 남북관계 경색의 국면에서도 지속된 사업으로 특히 2006년 북한 핵실험 강행 직후에 제주도가 감귤 1천톤 당근 4천톤을 북송한 유례없는 사업성과를 이룸
 - 본 사업은 북한의 인도적 성격이 강했지만 제주도내 생산량 급증으로 인한 감귤가격 하락 안정을 위한 주민차원의 생계지원의 성격도 함께 고려된 복합적 사업임
 - 본 사례는 대북 무상지원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최초의 사업이면서 민간조직인 향만 하역업체, 향운노조 등이 비용을 받지 않은 인도적 지원사업의 취지를 살린 사업임
- 경상남도 ‘통일딸기사업’
 - 경남은 2006년 수해로 인해 딸기모종 부족을 타계하기 위해 경남통일농업협력회가 2005년 한국 딸기품종 원종을 평양시 강남군에서 키운 딸기 모종 5만주 중 1만 주를 도내로 들여옴
 - 이는 북한에서 딸기모종을 재배해 국내로 반입하여 인건비 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었으며 그동안 저렴한 중국산 모종 수입에 대한 북한산의 대체효과도 있었음
 - 북한은 경남에 비해 서늘하고 일교차가 큰 날씨로 인해 딸기모종 생산에 유리한 환경을 갖고 있어서 남북교류사업의 상징성과 함께 실질적 경제적 이익도 남북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어서 상생협력모델을 제시하였음
- 충북 제천시의 과수지원사업
 -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성공한 유일한 사례인 충북 제천시는 제천시 새농민회가 북한 북고성군 남새온실재배단지를 기술지도 목적으로 방문하면서 시작
 - 제천시새농민회는 금강산 주변 과수농장조성을 검토하여 시민의 동의와 모금을 통해 제천시가 과수묘목과 자재를 북송하였고 과수전문가를 파견해 기술전수를 실행함

3) 다음의 내용은 서울연구원(2017), 통일연구원(2018), 대전세종연구원(2018)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함

- 제천시 과수지원사업은 금강산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판매되었고 수익금은 북한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등 남북영농협력 성과와 함께 제천사과의 홍보의 목적을 달성
- 2006년에는 금강산 제천사과축제를 개최하고 ‘금강산 제천사과’라는 새로운 사과 브랜드 구축하였음
- 이러한 제천시 사례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의 사례와 함께 공공기관과 영농회 등 민간조직이 함께 협력적 관계를 통해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임

▶ 성공적인 남북교류협력의 특징

- 남북한 지방자치단체의 상호호혜관계에 기반한 신뢰성 구축은 사업 추진과 지속의 가장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침
 - 제주도 감귤지원이나 제천시 과수지원의 시민 기금모금처럼 주민인식개선과 함께 양쪽의 신뢰형성이 사업추진 성공의 밑바탕이 됨
 - 제주도 감귤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신뢰구축은 2007년 제주도의 흑돼지 평양농장지원사업 실행의 기반이 되었음
- 남한 및 북한의 일방향 교류추진이 아니라 상호간 이익을 고려하고 타 분야로 연계 가능한 사업들이 주로 수행됨
 - 제주 감귤지원사업은 북한의 인도적 지원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의 감귤폭락 방지를 위한 수매라는 양방향의 만족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
 - 제천시 과수지원사업도 북한에 과수재배 기술전수와 수익금의 북한주민지원의 지원과 함께 제천시는 금강산사과 브랜드화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상호간 이익 실현
 - 경남 통일딸기 또한 수해로 인한 경남의 딸기 모종부족의 해결과 북한의 모종기술 전파 및 판매수익으로 인한 상호이익을 도모한 공통점이 있음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의 특징
 -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본 사업들이 수행되는 시점에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의 제정과 기금이 설치되어 본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었음

▶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의 실패

- 일부 성공사례들이 존재하지만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실패한 사례가 더 많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공통적인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첫째로 대부분의 남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방적인 시혜와 수혜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북한의 시각에서 사업으로 인한 혜택이 크지 않은 경우 추진이 무산된 경우가 많음
- 둘째로는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의 일회성 이벤트 중심의 사업추진을 거론할 수 있음

- 북한에 대한 정부와 이해 부족의 상황에서 교류협력사업의 충분한 검토가 불가능하고 지자체장의 임기 내 성과 도출과 재선을 위한 이벤트성 사업 기획추진의 경향들이 있음
- 북한의 시각에서도 사업으로 인한 효과가 크지 않으며 남한 지자체의 과도한 예산투입과 지속성의 한계로 인한 주민인식개선 효과도 없다는 점에서 일회성 이벤트 사업의 성공적 사례를 찾기가 어려움

[표 15] 이벤트성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사례

지자체	사업내용
서울특별시	-북한 아동대상 제과원료 지원사업(2005.2)
	-남북 전통공예 교류전(2005.7)
	-금강산 윤이상 음악제 개최(2006.4)
	-평양 조선중앙연구소 의료장비 지원(2006.5)
	-평양 고구려 안학궁 터 공동 발굴(2006.4-12)
	-경평축구대회
부산광역시	-겨레사랑 평양 향생제 공장건립 및 원료지원사업(2006.1-12)
	-부산국제영화제 참가 요청(2005.10)
인천광역시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참가(2005.9)
	-동아시아 4개국 친선축구대회 참가 추진(2006.5)
울산광역시	-전국체전 북한지역대표단 참가 추진(2005.10)
경주시	-세계역사도시회의 참여 요청(2005.10)
포항시, 나주시 등	-북한 지자체 자매결연 교류추진

자료: 김정수·우명우(2010), 안용준(2018), 통일연구원(2018) 참고

- 셋째로는 북한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의 판단이 부족한 사업들을 거론할 수 있음
 - 본 사업들은 북한체제의 이해부족으로 북한의 체제 유지에 대한 강한 의지에 대한 몰이해 및 간과하여 추진이 무산된 경우임
 - 비정치적 교류협력일지라도 남북한 경제적 사회적 격차를 극명하게 대비하여 보여주게 되는 사업은 성사되기 어려우며 이는 북한주민의 대규모 남한 방문의 사업들이 대표적임(친선축구대회, 아시안게임 공동개최 등)
-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외부환경변화로 인한 불가능성이라는 근본적인 부분을 거론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매우 효과적인 사업 아이템으로 지속적인 북한과 교류협력을 추구해도 중앙정부가 과거처럼 전면중단하는 시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움에 직면
 - 결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업수행시작 전에 대외환경 및 사업의 성사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경험이 많은 민간단체들과 충분한 협의과정이 필요함

(3)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주요 사업계획

▶ 2020년 광역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조사

-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2020년에 수행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 사업들에 대해 연초에 작성된 각 시도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종합하고자 함
-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들은 차별점보다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활동들이 다수 있으며 이를 유형화 하면 스포츠(체육)분야, 역사와 정체성 분야, 학술분야, 농축산 분야, 문화관광분야, 보건의료 분야, 인도적 지원 분야, 산림분야로 구분할 수 있음

▶ 스포츠 체육분야 남북교류협력 계획

-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계획하는 스포츠 체육분야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다음과 같음

[표 16] 스포츠 분야 남북교류협력 사업계획

지역	사업(계획)
서울특별시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
서울특별시	동북아 국제친선탁구대회, 경평통일축구 등 서울-평양 체육교류
부산광역시	2020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대구광역시	대구국제마라톤대회 북한 선수단 초청(4월)
인천광역시	성인축구대회 재개, 한강하구 평화수영대회, 인천시국제경기 북한 선수단 초청
울산광역시	2021년 제102회 전국체전 북한 초청
세종특별자치시	남북 여자대학 축구 친선 스포츠 교류(고대 세종캠)
강원도	국제 유소년(U15) 축구대회
충청북도	남북 체육(무예) 교류
충청남도	태권도 교류
전라북도	남북 태권도 교차 시범공연, WTF-ITF 융합 국제컨퍼런스 개최
전라북도	남북스포츠교류 구상 및 추진 (종목 선정, 선수 선발, 전지훈련 적합지역 선정, 선수단 유치 등)
전라남도	남북 체육교류협력사업(국도1호선 평화통일 마라톤 대회 등)

- 하계올림픽 및 탁수선수권대회, 국제마라톤 등 국제 스포츠 이벤트 행사와 함께 남북간 특정 체육분야의 교류행사로 구분할 수 있음
- 이러한 스포츠 체육분야는 과거 올림픽 등 일부 국제행사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실제 실행한 경우가 매우 적음

▶ 역사분야 남북교류협력 계획

-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업수행을 계획하고 있는 역사분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다음과 같음
- 남과 북 공동의 역사적 정체성(이순신 장군 및 서산대사, 김종서 장군 등)을 보이고 있는 사업이나 북한의 역사유적 활용을 위한 사업제안이 주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음

[표 17] 역사분야 남북교류협력 사업계획

지역	사업(계획)
서울특별시	남북·러 녹둔도(이순신 장군 유적) 공동발굴, 서울-평양 도시 학술대회
전라남도	서산대사 제향 상호방문 공동봉행(해남 대흥사-묘향산 보현사)
경상북도	북한 소재 목판 공동조사 및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2020년, 북 목판소재 파악 등)
세종특별자치시	김종서 장군 학술 역사 교류 및 역사탐방 사업, 세종-나선 도시간 자매결연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 남북공동조사 연구
인천광역시	고려 수도 개성과 강화 역사문화 협력을 위한 남북학술회의 등 개최
충청북도	단체 신채호 남북 학술심포지엄 등 학술교류
충청북도	북한소장 고문헌자료 남북공동조사연구 사업

▶ 학술연구분야 남북교류협력 계획

-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업수행을 계획하고 있는 학술분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다음과 같음
-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분야의 워크숍, 토론회와 함께 연구기관 운영 등이 주요한 학술연구분야의 남북교류협력으로 수행되고 있음
- 학술연구분야는 남북교류와 통일인식의 기반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요한 사업의 분야임

[표 18] 학술분야 남북교류협력 사업계획

지역	주요사업
대전광역시	시민평화통일교육, 시민 공감대 확산 사업 등
울산광역시	남북교류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 및 워크숍 등
세종특별자치시	시민 통일교육, 아카데미
경상남도	경남연구원 남북교류협력센터 운영지원
경상남도	평화통일교육사업
대전광역시	과학기술분야 남북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남북교류협력위원회 현장세미나 개최(DMZ, 남북연락사무소 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경기 공동 남북교류협력 워크숍 제주 개최

▶ 농·축산분야 남북교류협력 계획

-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업수행을 계획하고 있는 농축산분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다음과 같음

[표 19] 농축산분야 남북교류협력 사업계획

지역	주요 사업
충청북도	우수농업기술 전수 및 전문가 교류
전라남도	농업기술교류(농업 씨감사, 임업 표고버섯, 수산업 양식 기술 교류 및 공동 개발)
경상남도	경남통일딸기 등 경남형 농업협력사업 확대 추진
강원도	옥수수 등 남강원도 식량작물 개발 품종의 북강원도 적응성 및 수량성 평가
경상남도	농림축산, 보건의료, 주거복지 등 1개군 현대화사업
경기도	북 농촌시범마을 스마트온실 및 자동화 양돈장 협력 지원
강원도	금강산 공동영동 사업(공동 경작, 온실 농장, 양돈사업, 농기계 수리소 운영 등)
전라북도	자원순환형 낙농단지 조성
충청남도	빠르미 종자 지원, 남북공동연구

- 농축산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은 주로 남한의 농업 및 축산의 기술에 대한 북한의 지원을 비롯한 기술교류, 복지 차원의 지원 사업이 주로 실행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사업은 단순한 인도적 지원에서 나아가 개발협력을 지향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일방향 지원 성격보다 상호교류를 통한 상생발전의 사업이 주요한 성과를 보였음

▶ 문화관광분야 남북교류협력 계획

-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업수행을 계획하고 있는 문화관광분야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다음과 같음

[표 20] 문화관광분야 남북교류협력 사업계획

지역	주요사업
서울특별시	서울-평양 관광루트 '평양의 길' 개척
인천광역시	도시협력을 위한 북한 개별관광(실향민 등 제3국 통한 개별관광)
강원도	금강산관광 재개
전라남도	남북 청소년 어깨동무 수학여행
서울특별시	서울-평양 문화유산 상호 답사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	개성 역사 문화유적 탐방

- 문화관광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비롯해 남북한의 역사유적의 방문을 통한 문화교류의 성격을 보이고 있음
- 실제로 남북교류협력의 사업에서 문화관광 분야의 교류행위가 많이 수행되었으나 주로 남측의 북측방문의 형식으로 형성됨

▶ 보건의료분야 남북교류협력 계획

-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업수행을 계획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다음과 같음

[표 21] 보건의료분야 남북교류협력 사업계획

지역	주요사업
서울특별시	결핵관리 지원
인천광역시	바이오의약품 제조공장 건학 초청 (인천, 단일도시 기준 세계1위 바이오의약품 생산도시)
인천광역시	원료의약품 지원으로 취약계층 보건 향상
인천광역시	감염성 질환 예방 및 방역체계 협력을 위한 보건의료 협력
경기도	북한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지원
충청북도	취약계층 의약품 지원(도내 생산 기초의약품 감기약 등 지원)
전라북도	가축 전염병 방역약품(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및 수의방역기술 지원
전라남도	(주)녹십자 화순공장 생산 백신 지원(BCG(결핵)백신)
충청남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지원, 식량 및 의약품 지원
강원도	말라리아 공동방역 및 결핵퇴치 의료진 연수

- 보건의료분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북한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이나 인력의 지원의 사업이 주로 제시되고 있으며 북측의 요구에 따라 말라리 공동방역 등 성공적으로 실행된 사업들이 일부 존재함

▶ 인도적 지원 분야 남북교류협력 계획

-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업수행을 계획하고 있는 인도적 지원분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다음과 같음

[표 22] 인도적 지원분야 남북교류협력 사업계획

지역	인도적 지원분야 주요사업
부산광역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민간단체 사업공모 등)
강원도	취약계층 대상 쌀가루 지원
전라남도	평양 발효콩 빵 생산 제2공장 건립
전라남도	인도적 지원(신안 천일염 5억, 의약품 3억)

- 2000년대 초반 시기에는 인도적 지원분야 남북교류사업이 많이 제안되었으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인도적 지원분야는 쌀가루 및 의약품 등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산림 분야 남북교류협력 계획

-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업수행을 계획하고 있는 산림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다음과 같음

[표 23] 산림분야 남북교류협력 사업계획

지역	산림분야 주요사업
서울특별시	산림녹화 협력(양묘장 조성 현대화 및 물자지원)
경기도	북한 산림복구지원
강원도	남북 산림(양묘),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사업
충청북도	과수 및 조림용 묘목 지원(옥천군 등 지원 경험, 민간 통한 지원 계획)
전라북도	황해북도 지역 산림복원 등 협력사업(산림청)

- 산림분야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주로 접경지역에서는 공동사업으로 수행되며 산림복원 및 녹화사업 지원의 분야에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음

3

중앙 및 지방정부의 통일교육 현황

1) 중앙정부의 통일교육 현황

(1) 제도적 기반

▶ 관련 근거 법률 「통일교육지원법」

- 우리나라의 통일교육의 법적근거가 되는 「통일교육지원법」은 1999년 2월 5일 제정되어 8월 6일 시행되었음
- 「통일교육지원법」은 통일교육의 체계적·종합적·효율적 실시를 위해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통일교육에 대한 국민적 합의절차를 제도화하여 통일교육 실행의 정당성을 강화하는데 의의
- 추가적으로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통일교육 활성화 도모를 통해 통일교육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본 법률에서 통일교육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교육으로 정의함(「통일교육지원법」 제3조)

- 본 법률은 우리사회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 통일교육이 실행될 수 있도록 통일교육의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며 교육법과 사회교육법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본 법을 적용하는 보충법적 성격을 지님
- 본 법률은 통일교육의 범국민적 확산을 위한 기반강화, 통일교육의 교육과정 반영, 통일교육주간 운용, (평화)통일교육 방향 설정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8차례 개정
- 통일교육의 추진체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들은 일정한 책무를 지며 법에 따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함을 명시하고 있음
-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통일교육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

▶ 관련 기본계획 「통일교육기본계획」 4)

- 통일부는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통일교육기본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며 세부계획은 연 단위로 시행계획을 수립
- 2019년 수립된 통일교육기본계획의 비전은 ‘남북 평화공존과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시민 양성’이며 5가지 목표와 추진방향을 통해 정책과제와 함께 학교교육의 플랫폼 활성화, 사회교육의 체계적 확장, 전문인력 양성의 내실화, 국민참여와 통일공감대 확산, 뉴미디어 및 콘텐츠 개발, 체험공간의 특성화,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의 정책과제를 제시함
- 통일교육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는 다음과 같음

[그림 2] 통일교육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4) 통일교육원, 2018, 통일교육기본계획(2019-2021) 및 2019년도 시행계획, 통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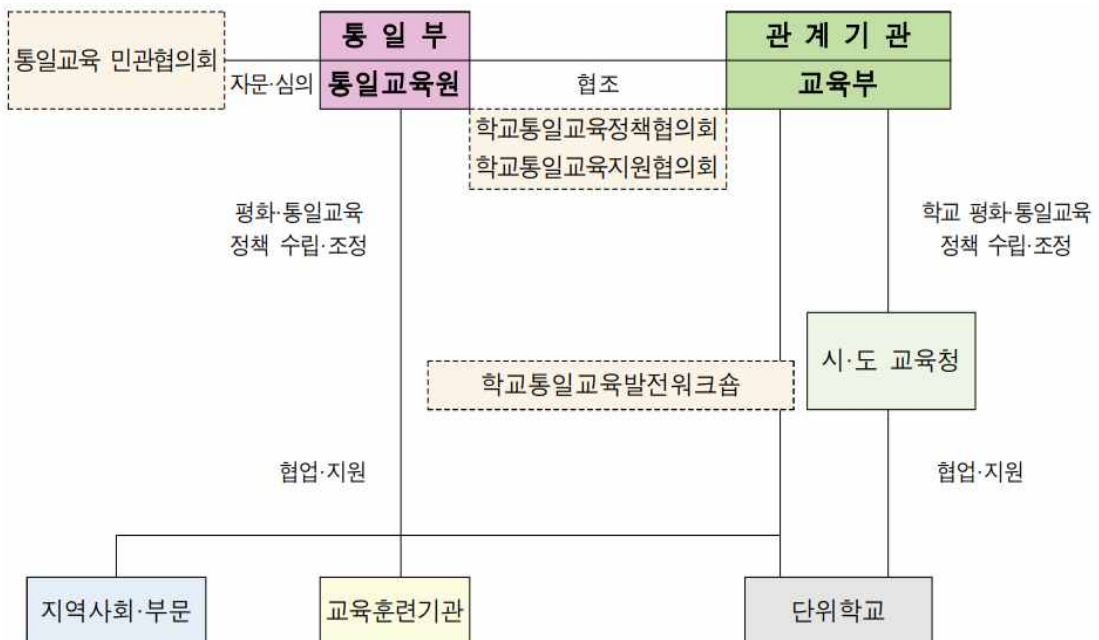
- 비전과 목표에 따른 계획의 정책과제들은 다음과 같음

[그림 3]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정책과제

정책과제	세부추진과제
학교 교육의 플랫폼 활성화	○ 학교 교육 기반 강화 ○ 학생 인식 제고 ○ 대학 교육 기반 조성
사회 교육의 체계적 확장	○ 공공부문 ○ 지역사회 ○ 2030세대 ○ 부문별
전문인력 양성의 내실화	○ 핵심 전달자 역량 제고 ○ 전문가 양성 및 파급력 제고
국민 참여와 통일공감대 확산	○ 참여형 문화행사 ○ 온라인 홍보
뉴미디어 및 콘텐츠 개발	○ 콘텐츠 개발 ○ 이러닝 개발 ○ 실태조사 및 연구
체험공간의 특성화	○ 통일관 ○ 체험연수 시설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글로벌 교육 추진

-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은 범정부 차원의 교육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함을 제시하고 있음

[그림 4] 평화통일교육 추진체계



- 통일부는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정책을 수립하며, 교육부는 학교 내 평화통일교육 추진 정책 수립 등 상호협조의 관계(학교통일교육정책 및 지원협의회)를 구축함
-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기관, 교육청, 각급 학교의 유기적인 평화통일교육 추진을 위해 조정과 협업체계를 마련
- 전문가, 시민단체 등 평화통일교육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제도화 하며 특히 '통일교육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교육의 방향, 제도, 내용 등에 대한 협의 및 자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2) 현 정부의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현황

▶ 중앙정부 통일교육의 정책기조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통일교육의 정책기조는 '평화 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으로 변화 하였는데, 이전 정부와 차이점은 평화협력과 공동번영의 새로운 질서 구축의 시각에서 평화의 관점에 기초한 통일교육을 제시함⁵⁾
- 문재인 정부의 평화통일교육은 5가지 목표로 제시됨
 - ① 평화통일의 실현의지 함양
 - ② 건전한 안보의식 제고
 - ③ 균형있는 북한관 확립
 - ④ 평화의식 함양
 - ⑤ 민주시민의식 고양
- 이에 따른 평화통일 교육의 방법은 다음을 제시함
 - ① 학습자 특성에 맞는 통일교육
 - ② 인지·정의·행동적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통일교육
 - ③ 학습자 중심의 통일교육
 - ④ 흥미와 관심을 증진하는 다양한 방법의 활용

▶ 중앙정부 통일교육과정의 운영

- 통일부는 중앙정부차원에서 다양한 통일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통일교육을 영역별로 구분하면 7가지로 제시할 수 있음
 - ① 전문과정: 통일정책 최고위과정, 통일정책 지도자과정, 통일미래기획과정, 통일교육 전문강사과정 등 운영
 - ② 공무원 통일교육과정: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대상으로 평화통일 교육을 실시하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함

5) 통일교육원, 2017,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통일부.

- ③ 학교통일교육과정: 각급 학교 교사의 통일교육전문성 향상을 위한 과정으로 교육 대상 별로 교육을 실시
- ④ 사회통일교육과정: 사회 각 분야에서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활동하는 통일교육위원, 민주평통자문위원, 통일 관련 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 ⑤ 글로벌 교육과정: 재외동포 및 외국인 학생이 한반도 분단 현실을 이해하고, 우리의 평화통일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통일에 대한 국제적지지 기반이 되도록 하는 교육과정
- ⑥ 특별 교육과정: 해외 주요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내 전문가와 학생 및 일반인들 대상으로 특강과 토론진행 및 해외 주요국 차세대 전문가 대상으로 통일 아카데미 실시
- ⑦ 사이버 교육과정: 공공과정, 교원과정, 2030과정, 시민과정, 방북과정 등 5개 과정 운영

▶ 중앙정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

- 교육과정과 함께 보다 많은 국민들이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다양한 종류 도서(교재, 그림동화, 공공교육 및 지도서 등)와 영상자료(애니메이션, 클립영상, 캠페인 광고, TV광고 등)의 개발 보급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이와 함께 대국민 인식확산과 올바른 통일의식 함양을 위해 통일부는 2013년부터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통일교육주간에는 특강과 학술대회, 참여와 체험행사, 지역통일교육센터 주관 행사, 통일관 체험 프로그램, 하나센터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됨
- 통일교육교재발간: 통일부는 '통일교육지침서'를 매년 발간해왔는데, 2018년 이후 내용과 구성을 개편하여 '평화·통일교육:방향과 관점'으로 발간하고 있음
- 통일교육민관협의회: 통일부는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협조 하에 통일교육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며 대표적으로 통일교육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통일교육민관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음

▶ 중앙정부의 사회통일교육의 지원정책

- 통일관 운영: 통일부는 지역사회 평화통일문제 관심과 이해제고를 위해 전국 12개의 통일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인천, 오두산(파주), 고성, 양구, 대전, 충남, 청주, 부산, 경남, 광주, 제주에서 운영함
-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 통일부는 지역사회 평화통일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 중앙 1개 및 17개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운영체제를 전국 7개 권역에서 각 1개씩 운영하는 방식으로 재편하였음(충청권은 서원대학교에서 운영)
- 통일부는 통일교육위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교시민 대상 평화통일교육 사업', '시민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 평화통일교육 사업', '세대별 지역 특색을 반영한 역량 강화사업' 추진을 지원

-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연령 및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포럼과 강연회 등을 개최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평화통일교육이 다음과 같이 진행됨
 - 광주광역시: 이동 통일관 운영, 통일이야기가 있는 코리안 드림 토크콘서트
 - 대구광역시: 보드게임을 활용한 청소년 통일교육
 - 경상북도: 통일화랑아카데미
 - 충청북도: 청년자문위원 통일역량 강화 교육
 - 부산광역시: 제2기 통일열차 리더쉽 아카데미
 - 서울특별시: 민간단체 스포츠를 통한 피스메이커, 서울 청년 평화 아카데미
 - 강원도: DMZ 지역주민 대상 남북평화 지역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평화교육, 지역자원을 통한 문화콘텐츠 발굴 및 공연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 통일부는 한반도 통일 미래를 위한 남북청소년교류 지원과 통일체험연수를 목적으로 2014년 11월 한반도통일미래센터를 연천군에 개관하여 운영중임
- 본 센터는 통일관, 통일미래 체험관, 어울림관, 생활관, 한반도 투어링장 등의 체험 편의시설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센터는 통일부가 직접 운영하는 유일한 통일체험연구 전문기관으로 남북한 인적교류 관련 행사 지원과 함께 국내외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미래 세대 양성을 위한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 현재 청소년 단체, 대학, 지방자치단체 등 25개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다양한 통일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 추가적으로 통일 공감대의 국내외 확산을 통해 민족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 다양한 세대, 계층을 초청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 특성

(1)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

▶ 광역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

- 지방자치단체들은 1999년 「통일교육지원법」 제정 이후 지역의 정책과 사회적 환경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통일교육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였고,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

- 우선 광역자치단체 평화통일교육 관련 조례는 다음과 같음
- 인천광역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2010년 이후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2015년 이전에 제정된 지역들은 2017-2019년 사이에 개정과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음

[표 24] 광역자치단체의 평화통일교육 관련 조례 제개정 현황

지방자치단체	조례명	제정일	최근개정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	2015.4.2	2017.1.5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9.9.25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04.11.8	2018.10.8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9.1.30	
경기도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1.4.7	2019.11.12
강원도	강원도 통일교육문화활성화 조례	2016.12.30	
충청남도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1.11.10	2018.12.31
전라북도	전라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2016.12.30	
전라남도	전라남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1.10.20	2017.11.2
경상북도	경상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8.12.27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9.9.25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1.9.15	2018.12.15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5.12.1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6.5.13	

▶ 기초자치단체 및 교육청 조례제정 현황

-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평화통일교육 조례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기초자치단체는 총 39곳에서 평화통일교육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대부분 2017-2019년도 사이에 제정되었음
- 이 중 고양시,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북구, 충남 예산군, 충북 증평군은 2015년 이전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최근 조례가 개정되었음
- 교육청의 조례는 모두 2015년 이후에 제정되었고 대부분 2018-2019년에 제정되었는데 경기도 교육청은 유일하게 통일교육활성화 조례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로 분리되어 제정하였고 각각 2019년도에 개정하였음

[표 25] 기초자치단체 및 교육청 평화통일교육 조례제정 현황

기초자치단체	계룡시, 고양시, 광양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시, 군산시, 군포시, 나주시, 남양주시, 남원시,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서구, 서산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순천시, 안산시, 안양시, 양산시, 양주시, 예산군, 울산광역시 북구, 음성군, 인천광역시 서구, 전주시, 증평군, 파주시, 평택시, 하남시, 화천군
교육청	서울특별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인천광역시 교육청, 강원도 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 전라남도 교육청, 경상북도 교육청, 경상남도 교육청, 충청북도 교육청, 충청남도 교육청, 부산광역시 교육청, 대전광역시 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2) 지방자치단체 통일교육의 특성과 방향

▶ 지방자치단체 통일교육의 특성

-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을 일반적으로 「통일교육지원법」을 기반으로 하여 제정된 조례를 통해 수행되며 통일부의 통일교육원 중심으로 현장의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체제로 운영
- 남북교류협력의 체계 속의 한 부분으로 통일교육이 주로 고려되면서 지방자치단체보다는 통일부 및 통일교육원에서 전체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하향식 운영체계의 특성을 보이고 있음
-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반도 평화기류가 확산되면서 지자체들의 조례제정 움직임이 확대되고 자체적인 예산과 인력을 활용하여 평화통일교육을 수행하는 시도들이 증가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일교육의 방향

- 지방자치단체들의 통일교육은 공통적으로 도민과 공무원교육으로 과정을 크게 구분하고 있으며 도민교육은 일반도민과 청소년 중심의 통일교육 대상을 구분함
-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은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통일교육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사회통일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통일교육의 추진방식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통일 관련 전문성을 가진 민간 단체에 공모를 통하여 지원을 통해 수행하고 있음
- 일반적인 강의식 집합교육 형태 이외에도 강원도, 인천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통일 관련 문화행사, 학술회의, 통일관련 지역 답사 등의 체험형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III. 충남 남북교류협력의 현황

1

충남 남북교류협력 정책 현황

1) 제도적 기반 마련

(1) 조례제정과 정책방향 변화

▶ 충남 조례제정 현황

- 충청남도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인 추진을 위해 2011년 11월 10일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남북교류협력의 목적과 범위 및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기금설치·운용 및 위원회 설치·운영을 규정함
- 이후 2015년 11월 10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강화하였음
- 2018년 12월 31일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조례명을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전부 개정된 조례에는 남북교류협력과 함께 통일교육이 주요내용으로 추가되어 정의를 비롯하여 활성화 방안이 제시됨
- 개념 정의
 - － 남북교류협력사업: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추진하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과 문화·관광·체육·학술·경제 및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등 교류협력에 관한 모든 활동

- 통일교육: 남북한 화해와 평화 공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 기존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위원회 규모를 확대
- 통일교육 내용의 신설
 - 기본방향: 자유민주 가치의 실현,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통일환경 기반 구축
 - 충청남도 통일교육계획의 수립 시행
 - 통일교육 활성화 시책 추진
- 이와 함께 보칙으로 다음과 같이 추가됨
 - 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위탁관리: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

▶ 충남 남북교류협력의 정책 방향

- 충청남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개요
 - 충청남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 단체 포함)과 문화관광체육·학술경제 및 인도주의적 지원사업 등 교류협력에 관한 모든 활동을 의미
-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

① 남북경협

- 경제협력사업: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 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행하는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반활동
- 일반교역: 남한과 북한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 등의 이동(반출, 반입)' 을 의미

② 사회문화협력

-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해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 및 계약에 따라 계획·준비·실시 및 사후처리 등이 연속성 있게 이루어지는 행위를 의미

③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 단순 긴급구호를 포함하여 영유아 등 취약계층 대상 지원사업, 농업, 축산, 산림, 환경분야 등 북측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
-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이 정한 요건에 따라 투명성 확보를 전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통하여 안정적 사업 추진

•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정책추진의 과정

- 기본방향: 정책효과를 감안한 단계적 추진 및 교류협력의 지속성 확보가 관건으로 다음의 추진절차로 진행

[표 26] 충남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로드맵

1단계(준비)	2단계(시범교류)	3단계(실질교류)	4단계(통일이후)
▶ 제도/재정 확충 ▶ 조직/인력 확보 ▶ 도민 공감대 찾기	▶ 사회문화교류 ▶ 공동연구 및 경험 사업 협의	▶ 물적·인적교류 ▶ 상호이익 위주의 실질사업교류	▶ 통일이후 대비

•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정책추진의 전략 방향

- 비전: 남북 평화통일을 선도하는 충남
- 목표: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추진
- 추진전략: 3대 추진전략과 9개 추진계획

[표 27] 충남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전략

1. 제도정비 및 내부역량 강화	2.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3. 평화통일 공감대 조성
1-1. 조례 개정 1-2. 남북교류위원회 기능 강화 1-3. 남북교류협력기금 확충 1-4. 전담조직 및 인력양성	2-1. 사회문화 교류사업 2-2. 경제협력 교류사업 2-3. 황해도와의 자매결연	3-1. 통일 타운홀 미팅 개최 3-2. 평화통일 교육강좌 및 토크 콘서트

▶ **충남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성과와 평가**

- 2018년 이후 남북평화협력체계가 구성되었으나 2019년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프로세스가 남북관계의 경색에도 영향을 미침
- 또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북중간 국경이 공식적으로 폐쇄되는 등 내부적으로 인적·물적 이동 제한을 통해 남북교류 행위가 불가능한 상황임
- 현재는 국제기구를 통해 소독약 등 방역물품 및 식료품만 극히 제한적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짐
- 이러한 여건에서 충청남도는 남북상호간 협력이 필요한 개발협력 의제와 전염병 방지를 위한 남북보건협력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 예정으로 있음
- 또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다양한 소통채널의 확보(민간, 국제 등) 및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확충, 통일기반조성의 확대의 추진계획이 있음

(2) 남북교류협력의 재원

▶ 충남 남북교류협력기금

-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재원으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존재하며 2012년에 설치하여 적립중임
- 현재 충청남도는 2020년에 10억원을 추가하여 약 43억원 정도 적립되어 있으며 2022년 까지 총 70억원의 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재원은 충청남도 일반회계 출연금(도비) 및 이자수입으로 구성됨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활용은 다음과 같은 사업 목적이 있음
 -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통해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
 - 농업, 문화, 사회, 체육 분야 교류협력 확대 및 인도주의적 사업 추진

▶ 충남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재원(예산)

- 충청남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계획에 요구되는 예산은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산'에서 활용
- 2021년 실시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취약계층 인도적 지원, 농업 및 방역, 보건·의료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약 10억원 편성 예정임

2) 정책추진 현황과 실태

(1) 남북교류협력 정책추진 체계

▶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2018년 개정된 조례에 의거하여 30명 내외로 규모가 확대되었고 위원 위촉시 성별비율과 함께 충남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적 인사를 발굴하여 위촉
- 주요한 기능으로는 충남 남북교류협력 정책의 협의, 조정 지원 등에 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것이며 임기는 2년(2회에 한해 연임 가능), 회의는 매년 반기별 1회 개최함

- 이와 함께 충청권 남북교류협력 광역협의회(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시, 세종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시도간 정보교환 및 사업협의, 공동사업개발 및 북한에 대한 공동대응을 주요 활동으로 수행함
-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2012년 4월에 최초 1기가 구성되어 현재 2020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4기가 활동 중에 있음

▶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남북교류팀

- 충청남도는 민선7기 이후 2018년 7월 남북교류협력활동에 정책적 관심을 갖고 자치행정과 소속에 남북교류 TF팀을 3명 규모로 구성함
- 2019년 1월 이후 충청남도는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남북교류팀을 구성하였고 관련되어 전문직 공무원을 팀장으로 임명하고 주무관 3명 공무원 1명을 배치하여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관련 전담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자치행정과 남북교류팀이 담당하고 있는 주요한 사업으로는 충남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공무원 및 도민 통일교육 실시, 충남 통일공감대 조성사업,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신건강관리와 정착지원 및 가족통합서비스, 남북교류협력 유관기관(민주평통충남회의, 이북5도 사무소)지원 업무가 있음

(2) 남북교류협력 사업추진 현황

▶ 사회문화분야 교류사업

- 남북교류협력의 초기에는 북한의 시각에서 수행에 부담을 갖는 내용보다는 문화, 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교류로 상호신뢰를 형성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표 28] 충청남도 추진 남북교류협력 주요사업

년도	추진 사업
2001년	전국체전, 성화체화, 특산품 교류전 북한참여
2002년	동아마라톤대회 북한인사 초청
2002년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북한 참여
2014년	남북화합 평화통일 줄다리기
2015년	제97회 전국체전 북한유소년축구단 초청

- 위의 내용처럼 2000년 이후 충남은 주로 사회문화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하여 대북교류 승인단체를 통해 북측에 제안하였으나 주로 무응답 및 과도한 사례금 요구로 무산되었음

▶ 2021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방향

- 남북교류 패턴의 변환: 충남도 대북 네트워크의 확장 및 교류협력의 다각화, 다변화를 통해 협력사업들의 추진 확대
- 충남도의 지원·기술 활용: 농업 분야 등 북측의 수요가 높은 품목에 대한 실효적 지원
- 취약계층 지원 강화: 북측의 취약계층(영유아, 산모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남북 개발의제 발굴: 중앙정부(통일부)와 협력하여 북측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우선 추진

2

통일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1) 추진배경과 방향

(1) 추진 근거와 방향

▶ 충청남도 통일교육사업의 제도적 근거

- 통일교육사업의 추진은 통일부의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하며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3에는 구체적으로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을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충남에서는 「충남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도지사의 책무로 통일교육의 계획수립과 활동 수행을 명시하고 있음

▶ 충청남도 통일교육사업 방향

- 충청남도 통일교육은 현재 시작하는 초기단계로 주로 도민 대상의 분야별, 세대별 맞춤형의 통일공감대 확산과 공무원 역량강화로 내용을 구분할 수 있음
- 도민 통일공감대 확산: 도민 중에서 미래 통일시대의 활동 주역인 청소년 통일교육의 추진과 함께 전문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
- 공직자 통일교육: 2019년에 도입하여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 공무원 대상 통일 및 남북교류의 이해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발굴과 추진

▶ 충청남도 교육청 평화·통일교육 추진

- 충청남도와 함께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도 별도의 학교평화·통일교육을 수행함
- 교육청의 통일교육은 주로 민주시민교육 과정속에서 통일 관련 교육활동의 내용을 통해 수행하고 있으며 4가지의 주요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① 학교교육과정 내 평화통일교육의 강화
 - ② 교원의 평화통일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확대 및 학습공동체 지원
 - ③ 학생의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체험 캠프 운영
 - ④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민주평화교육센터 활성화 및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 구체적인 충남 교육청의 평화통일교육 관련 예산은 다음과 같으며 평화·통일 관련 교육과정 중심의 예산이고 탈북학생 교육지원 등 예산은 미포함

[표 29] 충남 교육청 평화통일교육 사업 및 예산

사업명	예산	성격
평화·통일·역사·독도교육 운영비	702,200	본예산
충남 학생·교육가족 평화·통일·역사 캠프	150,000	
충남 학생 통일 농구대회	40,000	
통일교육 홍보	20,000	
소계	912,200	
학생평화·통일 이야기 한마당	13,000	특별교부세
평화·통일공감대 확산	47,000	
평화·통일 핵심교원 연수	9,000	
교원 평화통일 전문성 제고(연수)	20,000	
통일평화학교, 통일교육협력체제 구축	20,000	
소계	109,000	합계
합계	1,021,200	

2) 주요사업 현황

(1) 충남 통일교육의 주요내용

▶ 2019년 충남 통일교육사업

- 특징: 통일교육지원법 개정(2018.9)에 따라 공무원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대상자가 확대되었고 하나센터와 개별 운영하던 통일교육을 공동주관으로 효율성 있게 재편

- 열린통일강좌: 도민 및 공무원 대상 통일문제, 남북관계, 북한이해의 내용에 대해 충남 하나센터 및 도내 대학교 등과 함께 교육내용의 공동진행
- 통일공감 토크콘서트: 대학생과 공무원 대상으로 북한실상, 탈북과정,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의 삶의 내용으로 충남 하나센터와 교육 공동진행
- 공무원 의무 통일교육: 충남도 소속 일반공무원(5,047명)과 공무원(458)대상으로 통일문제 및 북한 이해교육내용으로 집합교육 방식의 전직원 통합교육 시행
- 공무원교육원 통일교육: 충남도 및 시군 공무원 대상으로 통일안보와 북한의 이해 및 통일교육원의 2박3일 합숙교육으로 실시

▶ 2020년 충남 통일교육사업

- 특징: 도민 통일교육내용을 강화하여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 실시와 공무원 대상 통일교육의 확대
- 충남 청소년 열린통일강좌
 - 목적: 개성공단의 남북 통합경험을 생동감있게 전달하여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확대 형성
 - 내용: 개성공단의 생생한 남북 통합의 경험을 통한 미래의 통일상 구현
 - 대상: 도내 중고등학교 29개교 2,943명을 대상으로 7월~12월 실시
-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통일공감 토크 콘서트
 - 목적: 탈북민의 솔직한 토크와 북한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기대
 - 내용: 우리의 이이수 북한이탈주민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의 교육
 - 대상: 15개 시군 도민대상으로 6~12월 4회 실시
- 통일역량강화 위한 공직자 통일교육
 - 내용: 도 공직자 통일교육(평화통일교육으로 개성공단의 남북통합경험의 사례), 충청남도 공무원반 통일교육원 교육, 15개 시군 공직자의 통일교육
 - 방법: 도 본청, 시군 소속 공직자 대상 평화, 통일분야 직장교육실시하며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통한 남북교류협력 관련 전문 인력 양성

▶ 2020년 평화통일 공감대 조성 사업

- 지역사회 평화통일 의식 참여 및 공감대 조성을 위한 행사 진행
 - 통일공감대 문화, 체험, 전시 프로그램 운영 및 평화 통일 공감 특별기획 전시로 북한의 생활, 교육, 놀이문화 등 테마별 전시 진행(2019-2020년)
- 평화통일실현을 위한 민족 역량배양 프로그램(통일강연 등) 진행
 - 제51회 한민족통일문화제전공모 시상식 및 통일강연, 통일퀴즈대회(2019-2020)

IV. 남북교류협력의 국내 사례분석

1

남북교류협력 체계와 분석 개요

1)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실행체계

(1)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방식과 체계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1990)」에 근거하여 추진되지만 관련 법률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관련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에 구체적인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통일부에서 제정한 지침 및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2019년 10월 통일부의 '인도적 대북지원 및 남북협력 사업처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대북지원사업자로 역할 수행이 가능하게 됨
- 이에 따라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 수행시 민간조직을 통해서만 가능하였지만 2019년 10월 이후에는 직접적인 대북사업자로 역할이 가능하게 되었음
- 이러한 법적근거와 함께 2019년 11월 충청남도가 4번째로 광역자치단체 대북지원사업자로 선정되어 관련된 활동이 가능하게 됨

(2) 남북교류협력의 로컬거버넌스

▶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와 주체의 구성

- 의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 의회, 민간단체, 국제기구, 기업, 지역주민 등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상호협력하는 시스템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주체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전담조직(행정조직)과 함께 각 시도별로 제정되어 있는 조례에 근거한 시도별 남북교류협력 위원회(위원회) 조직이 대표적이며 시도별 특성에 따라 위원회 산하로 실무협의회 및 추진단의 실행조직들이 활동하는 것을 포함
- 또한 각 시도별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에서도 특성에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지역이 존재하며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과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관련 시도의 위탁사업을 집행, 관리하는 민간단체들 또한 주요한 로컬거버넌스의 주체로 바라볼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의 의의

-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로컬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음
-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거버넌스 구축은 필수적 역할로 부각
 -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되며 중앙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실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
 - 남북교류협력은 중앙정부가 전체적인 방향과 틀을 설계하고 실행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기업, 민간단체, 지역사회 주체 등의 참여 없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둘째, 남북교류에서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 및 대북정책, 대북지원을 둘러싼 남남갈등의 완화와 해소를 위해 필요
 - 남북교류는 중앙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노력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음
 - 중앙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은 일반 시민이 참여하기 어려운 반면,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비정치적 영역에서 북한 주민들의 실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지역사회 및 일반시민들의 참여 공간 확보가 용이함
 -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 거버넌스 구축은 대북정책 및 대북지원을 둘러싼 한국사회 내부의 갈등 완화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대두
-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거버넌스 구축은 필수적임
 - 지방자치단체별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분절적으로 실행됨에 따라 목적과 사업방향이 상

- 이하여 투자와 사업추진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과당경쟁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협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 조직은 필수적
-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간 정보공유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북사업의 실효성, 효과성 제고
 - 사업 중복 방지 및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 시민사회의 폭넓은 참여권인 및 남남갈등 완화
 - 대북 협상력 제고 및 위험부담, 비용감소의 효과
- 따라서 본 과업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의 사례에 대해 앞서 제시한 조례 등의 제도적 기반과 함께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주요한 추진조직의 활동 및 사업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2) 남북교류협력 사례조사 내용

(1) 남북교류협력의 주요 요인

- 남북교류협력의 지방자치단체 사례분석하기 위한 공통적인 요인으로는 추진전략과 추진체계와 함께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조사하고자 함
- ▶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전략**
 -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달리 타 지역과는 다른 지역적 환경과 문화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역에 존재하는 자원과 장점을 활용하여 북한과 교류할 수 있는 추진 방법 및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 ▶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주체**
 - 남북교류협력은 내적·외적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복합적인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매우 복잡하고 불확실한 정책활동의 특성을 지님
 -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으로 실행될 수 없으며 통일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함께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교류를 위한 북한과 접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전문 민간단체, 시·도민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활동 필요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협력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주요한 주체들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수행

▶ 남북교류협력의 주요 사업

-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전략과 주요 주체들 간의 체계를 통해 구체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시기별로 진행한 주요 사업들을 살펴봄
- 지방자치단체들의 대표적인 남북교류협력 성공사례의 사업들을 중심으로 추진전략과 체계가 어떻게 적용되어 실행되었는지에 대한 사업 실행중심의 사례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2) 통일교육의 추진의 주요 요인

▶ 통일교육의 추진 체계

- 시·도민들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대상으로 통일 인식확대와 북한 바로알기 등 통일 관련된 교육에 대한 주요 주체들의 형태와 운영방식에 대한 조사
- 통일교육 관련된 민관의 주요 주체들간 네트워크와 거버넌스 방식에 대한 조사와 정책의 추진체계에 대한 사례 조사 실시

▶ 통일교육의 주요 사업

- 남북교류 인식확대를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수행하는 통일관련된 교육사업의 주요 내용에 대한 사례조사 실시
- 주요 통일교육 사업에 대해 공무원, 학생, 일반도민 등 대상을 구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기반한 사업들의 조사

2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사례분석

1) 경상남도의 사례분석

(1) 남북교류협력의 배경

▶ 남북교류협력 준비단계

- 경상남도는 6.15 남북공동선언문 이후 남북간 교류와 경제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실제 사업추진을 시도함
- 남해안 굴패각 비료 생산 후 이를 북에 제공하는 사업은 실현되지 못했으며 북한과 중국 등 사료작물 생산 후 반입 추진도 실현되지 못함
- 이후 사업 추진 이전 지역 중소기업의 북한진출 희망업체와 개성공단 입주희망업체 조사를 추진

▶ 남북교류협력 실행단계 이후

- 남북교류협력의 개발협력시기(2005년 이후)의 경상남도는 농기계(이앙기, 경운기, 트랙터)지원과 함께 남북공동 벼농사 사업, 시설채소 재배 기술교류, 과수원(사과, 배 등)조성 등 농업교류 관련사업들을 주로 진행함
- 이와 함께 남북교류협력의 대표적인 상호주의의 경제협력사업으로 거론되는 통일딸기사업이 진행되어 딸기 모주의 북한 공급과 모종의 경남반입으로 상생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함

-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 이후 대외적인 남북관계 악화의 영향으로 경상남도 또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수행이 난항을 겪게 됨
- 2018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후 경상남도 또한 사회문화교류와 인도적 지원사업을 도모하고 있으며 보다 내실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체계를 정비함

(2) 남북교류협력 공공의 주요 주체

▶ 경상남도 실행조직

-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의 주요한 실행조직으로는 조례에 근거하여 마련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거론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경남도청에서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공공조직이 있으며 이와 함께 경상남도가 출연한 공공연구기관인 경남연구원 소속으로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가 운영 중임
- 경상남도는 시·도중 유일하게 관련 조례에 도 출자출연기관에 남북교류관련 사업위탁이 가능함을 제도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공공조직과 함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들을 거론할 수 있음

▶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경남도청 담당 실국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함을 명시하고 있어서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음
- 조례상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함을 원칙으로 함
 - ① 경남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② 경남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
 - ③ 경남 남북교류협력기반 조성 및 통일교육 지원
- 남북교류협력 위원회는 2016년까지 경상남도지사가 위원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음
- 이외에 경남도의회의원 3명, 지역 언론인 2명, 학계(교수) 3명과 함께 민간 관련 협회 대표가 10명으로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와 함께 경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활동에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 전문위원회는 경제협력전문위원회, 사회문화 전문위원회, 농수축산 전문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위원회는 경상남도 소관부서 과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 소재 대학 및 연구소의 전문가와 기업인 및 남북관련 사회단체의 대표들이 포함되어 있음
- 주요한 활동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음
 - 경제협력전문위원회: 개성공단 개발 현황 등 정책소개를 비롯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 남북경협 진행상황 및 향후 경제협력분과 추진계획의 전문가 논의
 - 사회문화전문위원회: 사회문화분야 관련 한반도 신경제 뉴딜사업 구체화의 사업발굴과 관련 분야 전문가 초청 특강, 도교육청 남북교류사업 사업 및 영남통일교육센터 연계사업 발굴 논의 등
 - 농수축산전문위원회: 경남형 뉴딜사업 구체화 방안과 남북교류 신사업 발굴 논의(딸기 육묘장, 자연순환농업사업, 사과시범 농장 운영 등)

▶ 경상남도 도청 남북교류 관련 조직

- 경상남도청의 남북교류 관련 상시 추진조직은 2018년 7월 대민봉사과 내 남북교류 TF가 신설되었으며 2019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의 대외협력담당관에 남북교류협력팀이 설치되었음
- 최초 부서의 구성원은 5,6,7급 공무원 각 1명씩 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는 1팀에 팀장 포함 5명이 남북교류팀에 근무하고 있음
- 남북교류협력팀의 주요 업무는 ① 남북교류협력사무 ②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③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④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음
 -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
 - 남북교류 대외협력 사업 및 협력단체와 민관협의체 지원
 - 평화통일 공감대 조성을 위한 홍보지원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지원
 - 북한이탈주민 정착과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지역적응센터 운영
 - 통일단체 지원 및 통일교육 운영
 - 이북5도사무소 운영 및 행사지원
- 경상남도는 농정국 축산과 축산경영팀에서 축산분야 남북교류협력기획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혁신국의 전략산업과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경제협력분과 운영의 기능을 수행

- 경상남도 소속기관으로는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국 및 산업전략국 원예육종팀에 남북교류협력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경남연구원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

- 경상남도는 2019년 7월 경남연구원 소속으로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를 설치함
- 2018년 경상남도도 민선7기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조례제정 및 위원회 구성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남북교류협력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플랫폼 마련의 필요성에 의해 2019년 7월 개소함
- 경남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는 남북교류사업의 싱크탱크 역할을 지향하면서 관련된 정책연구,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의 중심적 역할, 남북경협 관련 기반 구축과 정책연구의 3대 역할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 이러한 역할을 통해 한반도 평화경제시대 대비, 정부의 분권형 통일정책 부응, 경남 특성을 살린 남북교류협력으로 상호이익 모델 실현을 지향함

[그림 5] 경남남북교류연구센터의 운영방향



- 경남 남북교류협력 연구센터는 2019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정책연구, 남북경협 정보 및 컨설팅 지원, 남북교류거버넌스 운영, 관련 사업 자문활동 등을 수행

[표 30]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 주요 사업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9월 기준
정책연구	정책연구 보고서 발간 3건 남북교류협력 정책 브리프 발간 1건	「남북교류 브리프」 발간 3회
남북경협 정보 및 컨설팅 지원	남북경협과 개성공단의 이해 특강(8.14) 남북경협 전문가 세미나 2회 남북교역 컨설팅 지원 3회	남북경협 전문가 세미나 3회
남북교류 협력 거버넌스 중심축 역할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MOU체결(8.14) 진주실크사업 남북협력세미나 개최(11.29) 창원시 남북경제교류협력 전문가 초청특강 참석 3회 부산연구원 남북경협 자문회의 참석(9.9) 전국 시도연구원 평화연구자회의 참석(10.17)	전문가 자문위원단 위촉(40명)
남북교류 시행기반 조성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전문위원회 지원 남북교류협력 사업지원(자문역할) -말이산고분군 별자리 관련 자문회의 참석(9.23) -남북공동 결핵연구 자문회의(10.16)	

▶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단체

- 경상남도의 남북교류협력과 통일 관련되어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의 현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음

[표 31]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단체

단체명칭	설립(회원)	설립목적	주요사업
(사)경남통일 농업협회	2005.11 (200명)	농업분야 인도지원 및 교류	-농기계 지원 -통일딸기 생산 -남북 공동벼농사 -어린이 콩우유공장지원사업 -평양소학교 건립지원
(사)하나됨을 위한 늘푸른 삼천	2007.11 (220명)	남북교류사업, 민족화해 기여	-산림복구사업 -수해복구사업 -평양제1인민병원지원사업 -개성인민병원 의약품 보내기
(사)우리겨레하나 되기 경남운동본부	2004.4 (690명)	남북교류사업 민족화해	-영유아용 밀가루 보내기사업 -사리원 인민병원 의약품 보내기
기아대책 경남본부	1998.8	기독교사랑의 개발, 구호활동, 기아지원	-평안북도 의주군 지역개발사업 -의주군 가정, 다락발 유실수지원, 가공사업 -꿈나무 사업(연간 10억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2003.2 (5만명)	6.15, 10.4선언 실천과 통일기념사업	-통일마라톤 대회 -6.15 선언 실천사업

(3) 경남 남북교류협력의 방향

▶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의 기본구상(2018)

- 2018년에 수립한 경남 남북교류협력의 기본구상에 따르면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의 비전은 ‘교류협력 강화와 한반도 평화변영통일 제일선의 경남’이며 목표로 경남과 북한의 공동변영 실현이라는 상생구조를 강조하고 있음

[그림 6]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의 기본구상



-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다음의 5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5가지 전략의 하위로 추진가능한 사업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음

- ① 도민과 함께 하는 민관 상호협력을 위한 준비
- ② 미래 통일비용 사전 축소 노력
- ③ 경남도와 도민의 전방위적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 ④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축을 위한 경남의 노력
- ⑤ 상호 인도주의와 상호주의 확대

[표 32]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세부 추진사업(안)

추진전략	주요내용	세부사업(제안)
도민과 함께하는 민관 상호협력을 위한 준비	-신뢰를 위한 전제로 북한주민 이해하기와 도민 인식전환 -탈북민, 북한전문가, 북한어 행가, 대북전문가 등 초빙을 통해 의식전환과 상호이해	-경상남도 평화번영통일센터 설립 -북한 이해와 교류협력을 위한 교육과 준비 및 홍보 -민간, 지자체, 단체, 기업 등 대북한과의 교 류협력 방안과 사업 발굴
미래 통일비용 축소	-천문학적 미래 통일비용의 사전 상쇄를 위한 방안	-경남도 연간 일반회계 예산중 0.5%(400억 원)의 대북교류협력 예산 편성 -도 대북교류협력기금 조성하여 2025년까지 3천억원 확대에 의한 교류협력사업 확대추진
전방위적 교류협력 확대	-도 산하 남북교류협력팀 설치 이후 과 단위 승격 -조례를 비롯하여 위원회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경남 남북교류협력추진본부 설치, 운영하며 산하에 실질적 추진기구의 본부 설립 -현재 운용중인 도내 3대 대북 민간단체(인도 적 사업)중심으로 실질적 교류협력 체계구축 -도내 대학연계 남북한 동질성 회복연구와 교 류협력 공동학술대회 추진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행	-다방면에서 남북경제협력 활동의 수행	-도내외 기업으로 남북경협SPC설립 후 북한 인프라 건설 -북한 원자재 발굴 및 생산과 반입, 연구, 가 공 위한 사업 추진 -남북내륙철도의 조기건설과 남북한 철도망 연결구축사업 연계 개발 -동북아 철도물류망 연계를 위한 기존 부산진 해신항 확대방안 -도내 중견-중소조선업체 협력하여 북한 내 공동 기자재 및 블록생산기반 조성
상호인도주의와 상호주의 확산	-경상남도와 도민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와 상호주의 사업 수행	-경상남도와 정서 및 역사성이 가장 유사한 함 경북도 간 자매결연 추진하여 교류협력 강화 -학생들의 북한 올바르게 이해하기 및 대학생들 의 다방면 교류 추진 -탈북민 정착지원팀 구성하여 남북 상호교류 협력 강화 위한 경남도탈북민-북한주민간 상 호이해와 공동협력 -민간차원의 스포츠교류 강화 -남북한 윤이상 평화음악제를 통해 통영과 북 한 특정지역의 교대로 축제진행

▶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의 방향

- 2020년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의 기본 구상은 3영역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사
업을 발굴하고 있음
- 농수축산분야: 경남 통일딸기사업을 기반으로 이를 여러 작물로 확장하여 북한
과 상호교류를 확대하는 방식 추진
- 사회문화예술분야: 통영 출신으로 남북한 모두 인정받는 국제적 작곡가인 윤이
상과 그의 음악을 기억하며 연주하는 예술교육분야의 공동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매개로 다양한 문화예술분야의 교류확대를 추진

- 산업연계분야: 경제분야인 남북경협에 중심을 두고 추진하려는 산업연계 분야는 경남도내 산업중 북한과 연계할 수 있는 지점과 콘텐츠의 연구 및 발굴

(4) 경남 남북교류협력의 주요사업

▶ 경남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 사업

- 경상남도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수행한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표 33] 경상남도 남북교류기금 조성과 사업별 지출

년도	기금 조성액	사업별 지출액	비고
2009	954	○ 남북교류협력 사업 406백만원 - 경남통일딸기 사업 64백만원 - 과수원 조성사업 72백만원 - 남새온실조성사업 185백만원 - 병원환경개선사업 30백만원 - 학술토론회 10백만원 - 방북모니터링 및 사무경비 45백만원	
2010	1,895	○ 남북교류협력 사업 147백만원 - 경남통일 딸기 74백만원 - 시설 채소용 지원사업 32백만원 - 방북 모니터링 및 사무경기 등 41백만원	
2011	2,812	○ 남북교류협력 사업 165백만원 - 통일벼 종자 보내기, 통일딸기	
2012	3,780	○ 남북교류협력 사업 145백만원 - 남북교류협력포럼 : 14백만원 - 통일벼종자보내기 131백만원	
2013	5,006	○ 예치금 3,006백만원 ○ 예탁금 2,000만원	
2014	6,150	○ 예치금 6,150백만원	
2015	-	○ 일반회계 전출 6,733백만원	기금폐지
2019	1,716	○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 운영 200백만원 ○ 평화통일교육사업 100백만원	

- 경남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경남 통일딸기사업을 비롯하여 과수원 및 시설 채소 지원, 통일벼종자 보내기 등 농업관련 분야를 주로 수행하였음
- 2015년 경상남도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폐지하여 기금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었으나 민선7기 이후 다시 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이후 경남연구원의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 운영과 평화통일교육사업으로 기금을 활용하고 있음

- 경상남도는 지난 민선6기와 달리 민선7기 이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9년에 도의 실무조직과 공공을 활용한 중간지원조직을 구축함
- 하지만 현재까지는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직접적인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경남 내부의 남북교류 정책연구 및 통일교육 등을 위한 정책들을 수행하여 기반조성과 인식확산의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할 수 있음

2) 전라남도의 사례분석

(1) 남북교류협력의 시작과 방식

▶ 광주·전남의 남북교류협력의 배경

- 광주 전남지역에서 남북교류의 흐름은 1996년부터 시작되어 2000년 6.15남북 공동선언 이후 (사)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가 발족되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민사회와 통일관련 단체들이 연합하는 계기가 됨
- 이후 민간영역에서 촉발된 남북교류의 운동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공공부문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치권의 설득을 통해 2000-2002년 사이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됨
- 조례제정 이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광주 전남 및 소속 시군에 대해 남북교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과정을 통해 우선 2003년 '전남남북교류협의회'를 발족하게 됨
- 구체적으로 2003년 2월 전남 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 '전남남북교류협의회' 결성을 합의하였고 4월 28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음

▶ 전라남도 남북교류 민관거버넌스의 구성

- 전라남도는 2003년 5월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하여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6월 화순군의회를 시작으로 기초의회에서도 관련 지원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함
- 이후 2004년 2월 통일부에서 사단법인을 승인하였고 2005년 3월 통일부의 대북지원사업지로 지정되었음
- 이처럼 전남남북교류협의회는 22개의 전라남도 소속 시군, 의회, 전남교육청, 시민사회영역, 종교단체 등 주요한 주체들간 민관거버넌스 조직으로 형성됨
- 도 및 시군, 교육청 등 공공부문에서는 남북교류의 활동을 위한 시드머니를 제공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였고, 초기 9억여원의 기금으로 교류사업을 시작하였음
- 이후 전라남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주로 협의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시기에도 축소되긴 하였으나 교류활동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됨
-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는 (사)전남남북교류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공공 및 민간의 대표자와 조직들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이러한 조직체계를 기반으로 남북교류협력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의 출범과 활동**

- 2018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 기간을 통해 남북교류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2019년 4월 기존의 단체간 협의회 조직을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로 전환에 민관이 합의를 도출
- 이는 남북교류 및 통일교육에 관련된 사업을 상시적으로 추진하는 전담기능을 갖춘 민관 거버넌스의 조직을 설립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남북교류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
- 이에 2019년 6월 11일 전남도의회는 센터의 지원근거를 위해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개정하여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의 지원근거를 다음과 같이 마련함

[표 34]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의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관련 내용

조항	내용
제8조(전남남북교류 평화센터의 설치)	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센터는 법인으로 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센터의 사업)	1. 남북교류 및 통일교육 추진 등 종합적인 통일정책의 수행 2. 남북교류 전문가 육성 3. 도민 통일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4. 통일공감대 조성을 위한 주민협의체 등 구축·지원 5.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통일정책과 남북교류사업 모니터링 및 연구 6. 그 밖에 센터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센터의 사업비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의 설립 목적과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음
 - 설립목적: 범도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남북 상호 교류협력사업과 북한 주민에 대한 자선사업 등 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공익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민족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을 구현하는데 이바지함
 - 주요사업의 규정
 1. 민족 공동 발전과 남북 격차 해소를 위한 교류협력사업
 2.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
 3. 평화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사업
 4. 통일을 대비한 통일기반구축사업
 5. 본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2) 남북교류협력의 거버넌스 체계

▶ 전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의 대표조직은 도 조례에 의거하여 구성된 남북교류협력 위원회가 다음 표와 같이 구성되어 있음

[표 35]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 구성(2020년 9월 현재)

구 분	성 명	소 속
위원장(당연직)	송상락	행정부지사
당연직	명창환	기획조정실장
	강영구	보건복지국장
	김경호	농림축산식품국장
	정찬균	자치행정국장
위촉직	도의원(3인), 관련단체 대표(3인), 교수(2인)	

-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라남도의 행정부지사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당연직으로 관련 부서 실국장이 참여하고 있음
- 반면 도의원 및 관련 민간단체와 교수 등의 인원은 8명에 그쳐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이나 민간의 참여규모가 많지 않음
- 본 위원회에서 수행한 전남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집행은 2019년 1건, 2020년 1건이 존재하여 실적이 많지 않음
 - 2019년: 대북 천일염 지원사업: 천일염 1,300톤 진원 / 5억원 규모
 - 2020년: 대북 의약품 지원사업: 항생제 등 의약품 지원 / 3억원 규모

▶ 전라남도 자치행정과

- 정책주체로서 전라남도 및 소속시군의 지방정부들은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를 기반으로 남북교류 및 통일교육 관련 재정자원과 함께 정책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우선 전라남도는 2018년 7월 이후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남북교류팀을 설치함
- 전라남도 남북교류팀의 주요 업무는 ① 전남 및 북한의 남북교류와 협력활동 ②

- 민주평통 전남지역회의 지원 ③ 이북5도 전라남도 사무소 지원 ④ 북한이탈주민 지역정착지원 ⑤ 도민, 공무원 대상 평화통일 교육과 행사지원을 거론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전라남도에서 남북교류의 주요한 정책 실행 주체는 현재 사단법인 전남 남북교류평화센터(과거 전남남북교류협의회)로 도 및 시군의 출연금을 기반으로 하여 남북교류 및 통일교육사업을 주요하게 진행하고 있음
 - 현재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는 전남도지사를 명예회장으로 하여 우리겨레하나되기 광주전남운동본부 고문 등 민간위원들이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음
 - 그리고 전라남도 소속의 시장군수를 비롯하여 지역 미디어 등 언론계, 교수 등의 학계, 종교계, 경제계와 함께 건설협회 및 약사회, 변호사회 등의 직능단체와 시민단체들이 회원으로 포함되어 있음
 -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이외에 남북교류사업 및 통일교육과 통일관련 문화예술행사 등 활동의 지원을 위해 광역차원의 보조사업이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음

[표 36] 전라남도 남북교류 통일교육관련 보조사업 현황(2020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계	보조금	사업자 부담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	민족통일전라남도협의회 등 6개 단체	200	200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남지역 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남지역회의	79	79	-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민족통일 전라남도 대회 및 통일 문예제전 지원	민족통일전라남도협의회	21	10	11
제4회 평화통일 전국무용경연대회	보훈 무용예술협회 전라남도지회	19	8	11
통일교육 공모사업	사단법인 우리민족, 6.15공동선언실천광주전남 본부, 문화관광콘텐츠연구원	33	20	3
통일새싹(탈북 청소년)재능개발 지원	전남하나센터	20	20	-

자료: 전라남도 2020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3) 남북교류협력의 주요 사업

▶ 전라남도의 남북교류 주요사업

-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은 2003년 조례제정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00년대 초반의 초기지원사업은 양파, 못자리용 비닐 등 농업관련 지원사업이 다수였으며 2003년부터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농사 장비지원과 농기계 수리공장 설립으로 확대됨

- 2004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민간단체인 전남남북교류협력협의회와 협력하여 우리밀 종자, 전남쌀 등을 선박편으로 지원하였음
- 2000년대 중반부터는 단순 물품지원에서 나아가 비닐온실과 시설원예 등 기술 지도 협력사업을 추진하였고, 평양에 발효콩(청국장)공장과 발효콩 빵공장 설립 등의 선진 농업기술 전파로 확대됨

[표 37] 전라남도청 남북교류 및 통일교육 주요 사업

구 분	사 업 명	사업내용	집행액 (백만원)
			342
2017	통일교육 공모사업	평화통일 강연회 등	30
	어린이 DMZ 통일캠프	DMZ 현장방문, 체험	40
	통일문예제전	청소년, 일반인 통일글짓기대회	7
2018	통일교육 공모사업	평화통일 강연회 등	30
	어린이 DMZ 통일캠프	DMZ 현장방문, 체험	40
	통일문예제전	청소년, 일반인 통일글짓기대회	10
2019	통일교육 공모사업	평화통일 강연회 등	30
	어린이 DMZ 통일캠프	DMZ 현장방문, 체험	40
	통일문예제전 개최	청소년, 일반인 통일글짓기대회	10
	DMZ 인간 띠잇기	DMZ 인간 띠잇기	40
	통일희망열차 지원	평화통일 희망열차 체험	5
	8.15평화통일열차 지원	8.15 기념 평화통일열차 체험	50
	한민족 자동차대장정	한반도 평화염원 자동차대장정	10

- 전라남도청에서 수행한 주요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주로 통일교육 및 인식확산을 위한 사업의 성격임
- 2017년이나 2018년에 비해 2019년도는 남북교류 및 통일교육 사업의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예산도 18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두배 이상 활용하였음
- 2018년까지는 국제정세의 여건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이 본격적으로 재개되지 못했으나 2019년 중국 단둥을 통해 콩기름 약 220톤을 북측에 지원하면서 남북교류가 재개됨

- 2020년 전라남도는 남북교류협력의 추진방향을 4가지로 종합함
 - ① 농수산 및 산림분야 지원과 기술교류: 전라남도에서 생산된 쌀, 밀, 천일염 등을 지원하며 이후 수산양식 기술, 산림녹화 기술 등 교류사업으로 확산
 - ② 화순생물의약품산업단지를 활용한 의약품 지원: 국내 유일 생물 약특화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의약품 지원
 - ③ 대흥사, 보현사의 서산대사 공동 봉행: 서산대사가 의병활동을 수행했던 대흥사와 서산대사가 입적한 묘향산의 보현사에서 공동으로 봉행의식을 2015년부터 협의하여 결실을 맺고자 함
 - ④ 국도1호선 및 호남선 활용한 교류활동: 목포에서 신의주까지 연결되는 국도1호선 테마의 마라톤대회, 호남선을 통한 땅끝 통일열차 운행 등 추진계획

▶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의 주요사업**

-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가 (사)전남남북교류협력협의회 시기부터 추진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목록은 다음 표와 같음
- 주요한 교류협력사업의 내용으로는 농기계 및 쌀 등 농업지원사업과 함께 수해 복구 및 보건 관련 인도적 지원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주목할 만한 것은 2007년 부터 평양 발효콩 빵공장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사업을 실시한 것이며 전라남도의 발효콩을 활용하여 북한에서 빵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 상호교류성격의 사업임
- 2017년 이후에는 2010년 이후 중단되었던 남북교류관계를 회복하여 수해피해 등 인도적 지원사업으로 다시 재개하고 있는 상태임

[표 38]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서 수행한 주요 사업

연도	사업명	지원내역
03~04년	대동군 농기계 수리공장 건설 및 농기계 지원사업	-영농자재(못자리용 비닐, 이앙기), 콤바인, 경운기, 농기계수리공장 건설 자재 등
04년	우리밀 종자 지원사업	-우리밀 종자 56톤
	전남쌀 지원사업	-전남 브랜드쌀 50여톤
05년	남북공동모내기 사업	-못자리용 비닐 (50만 평방미터)
	평남 청산리 농민편의소 건설사업	-농민편의소 건설자재, 이·미용 물품, 목욕용품 등
	북 수해 복구 지원사업	-전남 쌀 15톤
05~07년	평양 남새 비닐온실 협력사업	-비닐온실 건설 자재, 친환경농업 기술지도 및 야채유통(냉장트럭 등)지원 등
06년	남북공동모내기 사업	-못자리용 비닐 (100만 평방미터)
	적십자병원 현대화 사업	-외래병동 신축(지상 3층), 수술장 및 분만실 설치, 필수 의료장비 및 각종 기자재 지원, 필수 의약품 공급
	북 수해 복구 지원사업	-밀가루, 수도관, 시멘트, 의류 등
07년	평양 발효콩 공장 지원 사업	-발효콩공장 건설 자재 및 시설 지원, 종균 배양 시설 등 발효용 콩 지원
	북 수해 복구 지원 사업	-쌀, 아동용 의류, 내의(어른, 어린이)
08년	평양 발효콩 빵공장 지원사업	-발효 콩 빵공장 건설 자재 및 시설 지원
	평양 제1중학교 농구시설 지원사업	-농구체육시설 지원(우레탄 및 안전 제반 시설, 농구대, 농구공 등)
09년	평양 발효콩 빵 2공장 지원사업	-발효콩 빵 2공장 건설 자재 및 시설 지원
17년	북 함경남도 수해피해 지원사업	-0.07m 비닐박막 27.5t
18년	북 수해피해 복구 지원사업	-콩기름 220톤
20년	의약품 및 코로나19 방역용품 지원	

3) 인천광역시의 사례분석

(1) 남북교류협력의 배경

▶ 인천의 지리적 특성

- 인천지역은 서해 5도 및 한강하구를 중심으로 북의 황해도 지역과 마주하고 있는 서해 해상 접경지역인 강화군, 옹진군을 포함하여 인천 접경지역은 일반적인 DMZ의 국토와 함께 달리 해양으로도 구성되어 있음
-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인천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서해 한강하구 평화적 이용은 남북협력과 교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2018년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로조사’와 2019년 ‘서해5도 어장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 등 조치가 취해졌음
- 인천은 2019년 말 기준으로 경기도와 서울 다음으로 많은 4,433명의 이산가족이 있으며 대부분 황해도 출신이라는 점에서 정체성과 동질성의 동기부여가 강한 지역임

▶ 인천의 남북교류협력 방향

- 인천광역시의 장기발전계획 「인천 2030 미래이음」에서는 ‘세계와 한반도를 잇는 평화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하고 실행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다음 4가지를 제시함
 - ① 남북교류의 전진기지 ②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평화
 - ③ 국제 평화도시 위상 강화 ④ 평화경제협력 기반 구축
- 이처럼 인천 평화도시는 남북 지자체간 교류협력 차원에서 더 나아가 인천이 한반도에서 평화 창출과 공감대를 주도적으로 형성하는 주체임을 강조하는 것이며 한반도 평화변영을 선도하는 지역을 강조하고 있음

▶ 인천항과 남북교류협력

- 인천은 1984년 남한이 수해를 입었을 때 북한이 보낸 구호물자가 인천으로 들어오면서 최초 남북교류협력의 계기가 되었고 2010년 5.24조치 이전까지 인천항은 남북간 해상 교역물자 운송의 중심항구로 기능함
- 인천-남포 항로가 개설된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인천항을 통한 남북교류 물자 반입액은 전체 국내 반입액의 50%를 차지하는 29억 3,637만 달러로 인천항은 대북교역 1위 항만의 위상을 갖고 있음

(2) 남북교류협력의 기반

▶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

- 인천광역시 평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는 2018년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에 따라 기존의 남북교류협력조례(2014년 제정)를 전부 개정함
- 조례의 내용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의 지원과 함께 인천시 평화도시 조성 및 남북평화 정착 목적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인천시 자체를 평화도시 조성으로 변화시키는 계획을 수립
- 조례는 인천시를 국제적인 평화도시로 발전시키고 남북평화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러한 인천광역시의 관련 조례와 함께 옹진군과 강화군에서도 남북교류협력의 조례가 마련되어 있음
- 각 조례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39]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

조례명	제정일 (개정일)	목적	구성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04.11.8. (2018.10.8.)	-인천광역시를 국제적 평화도시로 발전시키고 남북평화 정착을 위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 -평화도시는 남북분단으로 인한 대치와 긴장의 관계를 극복하고 국내외적으로 평화 메시지를 확산하여 동북아시아 및 세계 평화 정책에 기여하며 각 호의 실현을 추구하는 도시	-평화도시 조성 및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평화도시조성 위원회 설치, 기능과 구성 -남북교류협력 사업 범위, 기금 설치와 조성, 용도 -사회단체 통일교육 활성화,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센터설치
옹진군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2007.11.20. (2018.12.27.)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뒷받침하고 옹진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재원, 용도, 운용관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회 회의
강화군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2019.4.1	-강화군 차원에서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고 대북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조성, 용도, 관리운영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회 운영

자료: 인천연구원(2019)

▶ 인천시 남북교류협력 기금

- 인천시와 강화군, 옹진군은 각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과 지원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및 출연금, 기금 운용수익금과 그 외 수익금으로 조성
- 기금의 활용은 인천시와 군이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된 사회간접자본 조성, 북한 인도적 지원에 필요한 경비, 기금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로 활용

[표 40] 인천시와 소속 군구의 남북교류협력기금 현황

기금	재원	기금의 용도	금액	조성 시기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기금	-일반회계로부터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	-인천시와 시민(법인 단체 포함)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 정책 사업 관련 인천 차원 사업 -인천시 남북간 경제 및 교류 협력 증진 사업 -인천시 남북교류협력 연계 사회간접자본 조성 사업비 지원	4,600	2004
옹진군 남북교류협력 기금	-군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	-정부 남북교류협력, 통일정책 사업과 관련된 군의 협력적, 독자적 남북교류협력사업 -남북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경비 -북한 재해 재난 및 기근 질병 등 인도적 지원에 필요한 경비	300	2019
강화군 남북교류협력 기금	-군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기금 조성과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지출		2019

▶ 인천시 남북교류협력 관련 위원회

-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 관련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평화도시조성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 과거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25명으로 구성되었으나 평화도시조성위원회는 30명으로 규모가 확대됨
- 위원회는 인천광역시장에 포함되어 있으며 소통협력관을 비롯하여 부서장이 5명, 교육청 1명, 시의원 2명, 대학 및 연구원 등 학계가 6명, 민간위원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3)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체계

▶ 남북교류협력 인천광역시 전담부서

- 인천광역시는 2018년 조직개편을 통해 남북교류협력 사업추진 및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전담부서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을 신설(2018.10.8.) 하였음
 - 정책기획관실 남북교류팀에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으로 확대 개편하여 남북기획팀, 평화교류팀, 통일기반팀의 3팀 체계로 구성함
 - 행정인력은 담당관 1명을 포함해서 남북기획팀 3명, 평화교류팀 3명, 통일기반팀 4명 등 11명 규모임
-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은 서해평화협력시대 선도를 위한 인천형 남북교류 추진 및 통일공감 형성을 위한 활성화 사업들을 추진함
 - 남북기획팀: 서해평화협력청 설치 추진 및 관련 조례 정비 등 남북교류협력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과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
 - 평화교류팀: 대북제재 여건에서도 실현 가능한 스포츠 및 문화예술 교류, 인도적 지원 사업 등 인천형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 추진하고 서해평화포럼 운영 등 지속가능한 중장기 교류사업을 추진
 - 통일기반팀: 통일교육 아카데미, 찾아가는 통일강좌 등 통일공감사업 추진 및 인천 통일+센터와 연계한 통일교육사업의 확대 추진

[표 41] 남북교류협력담당관 주요 업무와 인력(2019년말 기준)

구분	주요 업무	행정인력
남북기획팀	-남북교류협력 관련 사업계획 수립 -서해평화협력청 설치 추진 -중앙부처 협의회 관리 및 협조 -관련 조례 정비 등	3명
평화교류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및 발굴 -평화도시조성 위원회 및 서해평화포럼 운영 등	3명
통일기반팀	-통일기반조성 업무 -통일공감사업 추진 -남북관련 기념행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이북5도 인천사무소 등	4명

▶ 인천통일+센터의 운영

- 인천시는 2018년 9월 지역 내 산재한 통일 관련 인프라를 연계 통합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북 통일 정책관련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간 소통과 협력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인천 통일+센터를 전국 최초로 설치함
- 통일+센터는 통일부가 지방자치단체 남북관계 및 통일관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전국 광역시도에 설치할 계획임

- 2018년 우선 시범사업으로 인천시, 부산시, 광주시, 강원도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모하여 현장 및 사업설명 심사를 통해 인천시 1개소 선정
- 통일+센터의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 참여형 소통공감 프로그램 운영, 탈북민 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 남북교류협력 상담 및 지원, 이산가족, 납북자 문제 상담 및 지원, 열린 통일 사랑방 운영 등을 수행
- 이와 같은 센터의 사업은 하나센터, 통일교육센터, 통일사랑방 등으로 주체를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음

[표 42] 인천 통일+센터 기능과 주요사업

구분	기능	주요 사업
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적응 지원	-정착지원, 지역주민과 소통, 작은 통일마을 만들기 -교육, 진로, 생계, 의료, 심리안정, 법률지원
통일교육센터	지역주민들을 위한 통일 교육	-지정사업: 열린통일강좌, 통일순회강좌, 통일 체험학습, 통일체험학습, 워크숍 등 -자율사업, 통일 서포터즈, 대학생 토론회 등
통일사랑방	인천시민 대상 시설 이용 지원	-자료실, 세미나실, 영상미디어실, 강의실

▶ 인천문화재단의 역할

- 인천문화재단은 인천시의 문화예술창작지원, 시민생활속 문화가치 확산, 지역문화 발굴을 주요 사업으로 문화인천을 디자인하는 협력 플랫폼을 지향하는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임
- 2020년 인천문화재단은 재단 소속으로 남북교류사업TF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인천문화재단의 남북교류TF는 팀장을 비롯하여 3명의 담당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한 업무는 다음과 같음
 - 평화도시 인천 스토리텔링 개발: 남북교류 및 동북아 평화도시의 허브로서 인천에 대한 역사를 기반으로 스토리 개발 및 콘텐츠 구축
 - 인천남북교류평화백서 발간: 인천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및 활동에 관한 자료수집 및 백서 발간
 - 임진예성포럼 기획 운영: 임진강 중심으로 남북교류 포럼을 구성하여 정보교류 및 사업 추진 등의 정기적 교류행사 개최
 - 황해도 학술조사 기획 및 운영: 인천과 인접한 북한지역인 황해도에 관한 학술연구 및 조사사업의 운영
 - 인천 평화탐방단 사업기획 및 추진: 황해도를 비롯한 북한과의 지속적인 평화교류를 위한 평화탐방단의 구성 및 활동계획 수립과 추진

(4) 남북교류협력의 주요 사업

▶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추진계획(2019)

- 2019년 '인천광역시 남북교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목표와 전략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표 43] 인천광역시 남북교류 추진계획 목표와 전략

구분	주요 내용
추진 목표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남북교류 사업 태세 마련 -평화도시, 동북아 경제중심도시 인천 의제 확산 -소실된 역량 복원 및 새로운 시대 예비하는 기반 구축 -'인천항'남북교류사업의 실질적인 진전
추진 전략	-인천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방향 -중앙정부 흐름에 맞춰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 추진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사업의 선택과 집중 -시민들의 생활에 밀착하는 영역

- 이와 같은 목표와 전략을 기반으로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의 4가지 분야별로 추진계획과 세부 사업들을 구상하였음
- 인천광역시의 남북교류 활성화 계획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앙정부 건의사업과 대북제재상황에서 추진 가능한 단기적 과제, 대북제재 완화 이후 추진 가능한 장기적 과제로 구분하여 제시함

[표 44] 인천광역시 남북교류 추진계획(2019)

구분	영역	주요 사업내용
남북교류 협력 사업체계 및 계획 마련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 위원회 구성 운영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실행계획 수립
	-평화도시 조성 기본 5개년 계획 수립	-인천시 사업을 총괄하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서해평화포럼 구성 및 운영	-평화체제 조기구축과 한반도 번영을 위한 비전과 정책수립
남북교류 관련 네트워크 구축	-민관네트워크 구축으로 협력과 공감 도모	-서해5도 등 접경지역 주민간담회 정기적 추진 -평화통일 관련 민관 거버넌스 형성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와의 상시적인 소통 및 교류	-지자체 남북교류협의체·실무협의회(통일부)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시도지사협의회) -기타 목적별 T/F 참여(보건복지분야, 한강하구 등) -강화, 옹진 등 접경지역 지자체와의 연계 체계 마련
	-한반도 정세, 대외상황 관련 정보수집 및 공유	-남북교류 관련 동향 및 정보 수집 -실국별 남북교류 추진사업 파악 및 대북관련 업무 지원
선택과 집중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중앙정부 공조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속적 건의	-서해평화협력청 설치 및 한강하구 공동 이용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통한 교동 평화산업단지 조성 -접경지역(서해 5도 등) 정주여건 개선
	-대북제재 상황에서 가능한 사업 (단기적 과제)	-말라리아 예방·치료사업, 결핵 예방·치료사업 등 인도적 지원 -북한선수 초청 양궁대회, 인천국제복싱대회 등 스포츠 교류 -강화~개성 연계 남북학술회의, 유물 교류전 등 문화 교류 -접경지역 수산·환경지원 남북공동연구 등 수산 및 환경분야 교류
	-대북제재 완화(또는 해제) 이후 사업(중장기 과제)	-남북 음식점 상호 영업 -영농장비 지원 및 남북 합작 인삼재배·가공 시설추진 -한강하구의 생태, 문화, 관광자원 등 공동이용 -교동평화산업단지 조성 -인천-남포시간 자매결연 및 남포항 현대화 추진 -남북교류 및 대륙진출 철도망 확충 -인천국제공항을 대북교류의 관문으로 육성 -NLL 접경해역 남·북 공동어로수역 설정 -수산자원 관리 기반시설 공동구축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확충 -인천-북한간 크루즈(카페리) 정기 항로 개설 -서해남북 평화도로 건설 -남북한 경제특구간 교류 협력 강화 -공동어로구역 선박 지원
통일공감 형성사업	-전 세대를 아우르는 통일공감 형성사업 추진	-청소년캠프(차세대 통일지도자 과정)운영 -미래지향적 통일이카데미(고등학생 대상) -시민과 함께하는 통일어울마당 및 통일공감 워크숍 개최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한 통일 교육 실시	-찾아가는 공직자 통일 교육 실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준비를 위한 기획 강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직원 통일의식 강화 -대북투자 준비·희망 경험인 대상 아카데미 개최 -인천통일+센터와 연계하여 대시민 홍보 및 교육 지원 -민간단체 통일교육 지원(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남북교류 기념행사 추진	-시민과 함께하는 평화와 번영의 행사 개최

자료: 인천연구원(2019)

4) 경기도의 사례분석

(1) 남북교류협력의 배경

▶ 경기도의 지리적 배경

- 경기도는 북부가 북한과 경계를 접하는 접경지역으로 특히 연천군과 파주시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비율이 90%이상 차지하고 있음
- 경기북부 성장과 정체는 남북관계에 좌우되는 경향을 보이며 따라서 경기도는 북한과 관계개선 및 남북교류협력 확대가 경기북부 발전 기회 제공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배경과 전개

- 경기도는 2003년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와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의향서와 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의향서의 내용은 사업주체를 경기도와 민화협으로 하며, 황해남북도 지역을 중점 교류 대상지역으로 하고, 농업·보건의료 분야와 식품가공협력 분야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내용으로 구성됨
- 의향서에 근거하여 2005년 북한 농업과학원 사범포전에서 남북 공동 벼농사 시범사업을 전개하였고 성과를 보이자 2006-2008년 3개년에 걸쳐 평양시 강남군 강곡리에서 북한과 농업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함
- 시작은 농업관련 분야가 주로 수행되었으나 남북교류협력 사업 다각화를 위해 개성 산림녹화(개풍 양묘장 조성)사업, 접경지역 말라리아 공동방역 사업, 평양 농축산협력사업 등을 추진하였음
- 이후 2010년 5.24조치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으나 이시기에도 경기도는 북한에 말라리아 방역물자 지원, 북한 영유아 영양급식 및 긴급구호 지원, 북한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지원 등 인도적 지원으로 지속적으로 전개함

(2) 남북교류협력의 기반과 방향

▶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 현황

-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는 2001년 11월 제정 시행되어 현재까지 10차례 넘는 개정이 이루어짐
-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는 남북교류협력의 목적과 도지사 책무, 기금조성과 운용,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와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45]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

조례명	제정일 (개정일)	목적	구성
경기도 남북교류 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001.11 (2010.5.19.)	-정부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을 경기도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경기도와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간 교류협력 실질적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이란 경기도민과 북한의 주민(법인, 단체)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활동을 의미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기금의 설치 운영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추진을 위해 전문성 갖춘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 및 보조금의 재정지원 규정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운영, 기능과 소속 실무기획단 구성

▶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현황

-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5년 이후 다음과 같이 매년 증가하여 2020년 기준 39,330백만원이 조성되어 있음

[표 46]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액

(단위: 백만원)

구 분	연도별 기금조성액					
	'15	'16	'17	'18	'19	'20
조성액	12,958	12,684	12,645	32,917	38,874	39,330

▶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현황

- 조례에 기반하여 구성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2020년 기준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경기도는 평화부지사를 중심으로 평화협력국장과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으며 경기도의원 2인과 민간조직 대표가 9인 전문가가 4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통일부의 사회문화교류과장을 위원회에 포함시키고 있음

[표 47]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현황

분 야 별	구 성 원
계	20명
공 무 원	평화부지사, 평화협력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도 의 원	2인
시민사회, 종교 등 민간조직 대표	9인
전 문 가	교수 및 연구원 4인
정부기관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장

(3)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체계

▶ 경기도청 남북교류협력의 실행조직

- 경기도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방자치단체차원의 활발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추진을 위해 2018년 5월 ‘경기도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추진단’을 발족하여 대북교류협력사업의 실천과제를 수립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후 행정2부지사의 균형발전기획실 통일기반조성담당관에서 남북교류협력 관련 사업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평화부지사 소속의 평화협력국에서 남북교류협력과 접경지역 및 국제교류 관련된 정책들을 다루고 있음
- 평화협력국은 평화협력과, 평화기반조성과, DMZ정책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팀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음

[표 48] 경기도청 평화협력국의 주요 업무

부서	주요 사업
평화협력과	-남북교류협력업무 추진 및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평화협력사업추진과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평화정책토론회 추진 -남북교류협력과 농촌종합개발지원사업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국제협력사업
평화기반조성과	-통일경제특구 유치와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사업 -통일기반조성 정책개발과 정착지원 업무,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공직자 평화통일교육사업 추진 관리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돌봄상담센터 운영
DMZ 정책과	-DMZ 보전, 개발, 정책 등 종합계획 수립 -DMZ 브랜드 개발과 관광활성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추진 -임진각 및 통일촌 주변 통일관광지 활성화, 평화누리길 활용

(4) 남북교류협력의 주요 사업

▶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세부 집행사업

-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추진한 관련된 주요 사업들을 2015년부터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 2015년에는 주로 체육분야의 교류사업과 보건의료 부문의 인도적 지원사업이 직접적인 교류사업으로 추진되었고 통일교육 및 학술연구 등의 인식확산 사업도 함께 추진됨
- 2016년부터는 매년 공감통일교육 사업이 수행되었으며 2017년부터는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지원이 매년 수행되고 있고 2018년 이후부터 남북교류의 종류와 사업수가 증가하고 있음

[표 49]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세부 집행내역

(단위: 억원)

연도	사업명	사업비
합계		116.36
'15 (22.24)	① 2015년 국제남녀 청소년축구대회	3.5
	② 개성한옥 보존사업	2.26
	③ 2015년 국제 친선 양궁 교류전	0.91
	④ 제2회 평양 국제청소년 축구대회	5.15
	⑤ 북한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지원	5
	⑥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국제회의	1.6
	⑦ 통일정책 학술연구(경기도민 통일의식 연구조사)	0.35
	⑧ DMZ평화공원 UCC 공모전	0.03
	⑨ 개성공단 보건의료 지원	1.94
	⑩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	1.5
'16 (7.1)	① 국제 청소년축구 전지훈련 지원	1.31
	② 여성 평화 걷기	0.1
	③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국제회의 등	1.68
	⑤ 개성공단 보건의료 지원	0.39
	⑥ 남북교류협력 도정 홍보관 운영	0.02
	⑦ 대북사업 추진 국외업무여비	0.12
	⑧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	2.28
	⑨ 공감 통일교육	1.2
'17 (21.47)	① 북한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지원	5
	② 민족공동체 지원사업(축구캠프)	0.68
	③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국제회의 등	2.91
	④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	2.4
	⑤ 개성공단 기업지원	2.8
	⑥ 공감 통일교육	2.45
	⑦ 국외업무여비 등	0.23
	⑧ 개성만월대 특별전 지원	5

`18 (19.2)	① 시군 지역사회 소통화합 지원	0.5
	② 통일경제특구 국회 토론회	0.04
	③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	1.20
	④ 개성공단 기업지원	2
	⑥ 공감 통일교육	3.75
	⑦ 국외업무여비	0.39
	⑧ 민족공동체 지원사업	0.63
	⑨ 산림복원 지원	0.89
	⑩ 북한 다제내성 결핵환자 지원	5
	⑪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국제회의	1.45
	⑫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2.93
	⑬ 평화마라톤 격려 및 DMZ 홍보	0.42
`19.12.31 (46.36)	① 북한 어린이영양식 지원사업	9.93
	② 북한 묘목지원사업	4.95
	③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행사	5.07
	④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시아 국제배구대회	4.72
	⑤ 아시아태평양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2.97
	⑥ 개성공단지원사업	2
	⑦ 통일교육 사업	6.3
	⑧ 국외업무여비	0.93
	⑨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국제회의 등	2.28
	⑩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	2.2
	⑪ 북한 다제내성 결핵환자 지원	5

3

사례분석의 시사점

1)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방향

▶ 단계별 접근을 통한 지속적인 신뢰구축

- 살펴본 사례들은 앞서 살펴본 남북교류의 원칙처럼 초기에 인도주의적 지원과 북한의 수요에 따른 농산물 및 기술지원 등의 작지만 효과적인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함
- 현재 구축된 충청남도 남북교류팀을 중심으로 북측과 다양하게 접촉할 수 있는 대북 네트워크의 확장과 지속적인 창구 마련이 중요
- 경기도의 경우 북한다재내성 결핵환자 치료지원이 5년 이상 지속된 것처럼 작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사업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사업의 확장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지역 특색에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 방향 추진

- 경남, 전남, 경기, 강원 등 현재 남북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는 지역만이 갖고 있는 지리적, 역사적, 농수산 자원 등의 장점들을 적극 활용하여 북측의 수요와 부합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남 남북교류사업 추진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충남의 특성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사업발굴과 실행을 위해 특성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 및 민간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동반되어야 함
 - 금산의 인삼을 통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할 경우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금산축제관광재단 등의 시군과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한 전문성 확보 필요
 - 인천의 경우 접경지역의 특성을 살린 평화도시 컨셉의 문화콘텐츠를 인천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음

2) 남북교류협력의 거버넌스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다주체 참여기반 마련

- 전남, 광주 등의 사례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남북교류협력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사회의 다주체간 참여구조를 오랫동안 구축해왔음
- 정치적 이념을 벗어나 다양한 시민사회, 정치영역과 함께 경제계, 직능단체, 학계, 종교계의 지역 활동주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조직의 도내 대표성을 갖게 됨
- 이러한 주체 참여는 전라남도를 비롯한 시군의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도하였다는 점에서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성공적 형태로 볼 수 있음
- 전남, 광주, 경남과 같은 사례들은 남북교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다양한 민간주체들이 남북교류협력과 통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정부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적극적 추진의 기반이 되고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남북교류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는 성과가 있음
- 충남에서도 현재 조례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기능강화 및 별도 조직 구성을 통해 이와 같은 민관거버넌스의 종합적 논의구조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남북교류협력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남북교류협력의 실천적 추진조직 구축 필요

- 경상남도나 인천시의 사례처럼 광역자치단체 행정조직과는 별도로 남북교류협력을 주도적이고 상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함
- 이러한 형태는 해당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공 및 민간기관 소속의 별도 독립조직을 구성하는 형태로 초기형태를 구축할 수 있음
- 하지만 본 조직은 충청남도 남북교류팀과는 별도로 도내 다양한 관련 현황 및 실태파악이나 도 및 위원회의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을 수행하는 조직의 형태로 기능의 중복을 피해야 할 것임⁶⁾

6) 경남남북교류협력 연구센터장 인터뷰 내용

- 이러한 차원에서 경남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는 도 및 다른 민간지원조직들과 기능이 분리되어 있으며 이들을 연계시켜주는 거버넌스 운영 기능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음

▶ 남북교류협력 관련 중앙 및 기초자치단체와 연계 강화 필요

- 남북교류협력의 행위는 외부환경변화와 국가적 활동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파트너십의 협력활동이 필수적임
- 인천시의 경우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통일+센터를 유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정부와 함께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전략적 연계를 강조
- 이와 함께 광역자치단체 소속 시군과 함께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곳이 다수 있으며 특히 조례를 통해 남북교류 및 통일교육 관련 시군의 책무와 함께 시군의 활동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경기, 경남, 강원 등 일부 사례에서는 경제, 문화, 농업 등 지역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대학과 공공기관의 남북교류 참여와 연계협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조례에 근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연계 협력 활동들이 추진됨

3) 통일교육 및 인식확산

▶ 통일교육 및 인식확산의 제도적 근거

- 충남과 달리 통일교육 관련 조례가 제정된 자치단체들은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와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지원근거와 조직기능이 명시되어 있음
- 이와 함께 경기도의 경우 2020년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를 수립하여 중장기적 지원체계를 제시하고 있음
- 충남에서도 통일교육 관련된 다양한 정책추진을 위한 지원근거의 마련과 함께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수요자 맞춤형의 교육활동 필요

- 접경지역인 강원, 경기, 인천의 경우 통일교육활동에 대해 일반 강의식보다 체험과 방문형의 교육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음
-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평화통일 관련 페스티벌, 축제를 매년 개최하여 북한에 대한 인식전환과 정보제공 등의 場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남에서도 이와 같은 체험, 방문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활동이 수행될 필요가 있음

V. 충남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1

충남 남북교류협력의 추진방향

1)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방향

(1) 충남 남북교류협력의 방향 제안

▶ 충남 남북교류협력의 방향과 원칙

- 충청남도는 그동안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운영이나 이로 인한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경험이 부족한 상황
- 현재 충청남도에 남북교류팀이 구축되면서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교류의 특수성 및 앞서 다른 사례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제시할 수 있음

① 지속성과 신뢰형성 기반을 위한 단계적 접근

- 현재 충남 및 북측과 상호교류 및 신뢰형성이 미약한 단계에서 무리한 사업의 추진보다 북한의 관심을 유인하고 작지만 효과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단계가 필요
- 북측과 다양하게 접촉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대북 네트워크의 확장을 점진적 추진
- 남북교류는 기본적으로 시혜적이 아니라 호혜적 관계가 기반이 되어야 하며 당사자의 상호이익의 증진을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신뢰형성 마련이 필수적

② 다양한 주체 참여 기반의 추진체계의 구축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은 공공주체와 함께 시민사회단체와 민간의 전문역량, 직능단체의 참여와 함께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다주체의 협력적 방식 추진 필요

③ 충남의 장점과 기술을 적극 활용

- 타 지역의 선행사례의 답습이 아니라 충청남도의 역사문화, 경제활동, 보유기술 및 자원들의 특성을 중심으로 이를 필요로 하는 북한과의 교류추진이 바람직함
- 특히 수산자원, 농업기술, 인삼작물, 해양분야 등 충남이 갖고 있는 강점과 함께 문화역사자원의 발굴을 통해 북측과 지속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콘텐츠의 발굴 필요

④ 저변확산을 위한 통일기반조성 적극추진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이 공공차원을 벗어나 지역주민과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 북측지원에 대한 남남갈등을 최소화 하고 공공재원 활용의 당위성을 형성하며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함께 보다 다양한 사업들이 발굴 운영될 수 있음

▶ 충남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전략

- 앞서 제시한 충남이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원칙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추진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① 남북관계에 따른 시나리오별 전략 수립

- 남북관계가 변화의 예측이 어렵고 불안정성과 가변성을 항시 내포하는 만큼 일방적 방향보다 현재와 미래의 상황 분석 및 예측과 함께 이에 따른 대응전략의 수립 전략이 필요
- 현재까지의 남북관계 시점으로 규정하면 중단과 대기 상황, 재개와 활성화, 성장과 확대의 크게 3단계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충남의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함
- 중단과 대기상황에서는 향후 남북교류 활성화에 따른 내부역량강화와 추진체계 구축 및 통일인식확산의 역량결집의 사업추진 방식이 효과적임
- 재개와 활성화 상황에서는 기존 남북교류 추진사업의 재추진 여부의 검토와 함께 교류채널의 구축 및 교류협력 분야의 다각화 모색의 사업 추진이 효과적임
- 성장과 확대 상황에서는 중앙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의 전략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의 미흡한 사업을 충남이 추진하거나 과감하게 새로운 사업영역의 발굴과 경제협력 추진의 시점
- 성장과 확대 시점에서는 충남에서는 특정 북한 지역과 자매결연 등 심화교류 및 전면적 교류를 목표로 하여 충남의 지역과 기업을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적극 활동 지원이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체계화의 구축 필요

② 충남 다주체가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 조직 구성

-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을 위해 공공과 함께 다양한 민간영역의 주체들이 함께 논의, 추진할 수 있는 민관 거버넌스형태의 조직 구성이 필요함
-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사례처럼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계를 비롯하여 직능단체들이 참여하여 남북교류를 위한 역량을 결집하고 논의를 형성할 수 있는 협의구조의 추진주체가 전략적으로 필요함

③ 충남 남북교류협력 전문 실무추진조직 운영

- 남북교류협력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형태로 앞서 다주체의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조직과 함께 실무의 직접 수행과 함께 충청남도 남북교류 팀 및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무추진조직이 상시적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음
- 경남의 경남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와 같은 충남의 동향파악, 내부역량조사, 지속적 남북관계 파악과 포럼 등의 네트워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조직의 기능이 요구됨

④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파트너십 형성

- 충남이 남북교류협력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부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남북관계에서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접근이 필요함
-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남북교류 및 통일인식 확산 관련된 사업추진에 적극 참여하며 거점별 다양한 지원센터의 유치를 비롯하여 중앙정부의 실험적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충남의 선제적 추진 등의 적극적 모색이 필요

⑤ 주민의 삶에서 체험하는 통일교육의 다각적 추진

- 일방적으로 충남 및 공공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추진보다 주민들의 남북교류 인식개선과 필요성을 체감하여 정책지원의 당위성과 지원의 적극적 획득으로 내부역량의 강화는 가장 기본적 전략임
- 과거의 강의식, 주입식의 교육방식보다 통일의 인식을 확산하고 실제 체험 등의 다각적 방법을 통한 효과적인 대북 및 통일의 인식변화를 도모해야 함

(2) 충남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추진 방향

▶ 남북교류사업 추진의 방향

- 충남의 차별화된 개발지원사업 영역을 개척
 - 경상남도의 통일딸기사업, 경기도의 말라리아 방역사업처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맥락, 장점을 고려한 차별화된 사업 아이디어 발굴과 실현으로 영역 개척이 필요
-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기본적으로 상호이익의 호혜적 관계에 기반
 - 과거의 인도적 지원사업과 같은 북한의 일방적 지원사업에서 벗어나 남북교류활동으로 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북한의 지역이 함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이 지속가능성이 존재함
 - 말라리아의 공동 퇴치나 묘목 및 모종을 활용한 공동작물재배 판매 등의 사업들은 상호 호혜적 관점에서 성공의 요인이었음
- 해당분야의 전문가 교류와 기술지원을 통한 북한의 역량강화도 고려
 - 농축산업 등 분야에서 남한과 북한의 전문가 교류활동 수행을 통한 북한의 구체적인 교류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기술분야의 지원 등 북한의 관련 역량과 자립적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사업의 실행과 확산이 관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함

▶ 남북교류협력 사업운영의 방향

- 충남의 특성과 정책방향에 기반한 남북교류협력의 목표 및 원칙에 대한 수립이 필요함
- 사업의 목표는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획득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목표로 앞서 살펴본 사례들은 남북한 주민들의 동질감 회복(역사·문화분야), 평화증진(사회·정치분야), 상호이익 증대(경제분야) 등으로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에 따라 충남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개발과 운영의 원칙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함
 - 역사, 문화, 경제, 사회 등의 충남만의 차별화된 특성에 대한 고찰과 분석
 - 교류협력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점증적, 단계적 추진 전략과 방안의 확보
 -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한 충남과 북한의 상호이익 증진 전략
 - 충청남도 지역사회의 합의와 지원의 도출(통일교육, 주민참여 방안 등)
- 충청남도의 남북교류협력 지원사업은 이와 같은 충남의 여건에 따른 목표와 원칙에 따라 도출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추진 주체의 발굴과 전략이 뒷받침이 되어야 함
- 충청남도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충남의 주체 및 자산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수요파악을 통해 중장기적인 충남 남북교류협력의 비전과 추진계획들이 각 시기 별로 도출이 되어야 함
- 위와 같은 현황과 실태조사 ▶주민 및 다주체의 면밀한 수요파악 ▶중앙정부 및 대북, 통일관련 기관의 정책협력방안 등을 모두 종합하여 충청남도 의 남북교류협력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이 요구됨

▶ 충남 남북교류협력 방향을 통한 기대효과

- 충남에서 이와 같은 남북교류협력의 정책방향의 제시는 현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예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자로 명시되면서 이에 대한 대처의 필요성에 기인함
- 궁극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방향은 충청남도에서 북한의 다른 지역들에 대한 사회문화적 교류와 함께 경제적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한 남북평화시대 구축을 위해 국가와 민간 수행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함에 있음
- 단기적으로는 현재 하노이회담의 결렬과 코로나19의 상황으로 남북관계가 다시 냉각기로 접어든 시점에서 내부적으로 남북교류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기반의 조성 필요성에 따른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에 따라 적극적 남북교류의 방향제시보다 내부적 남북교류 추진체계의 구축과 통일인식확산의 제안을 통해 충남 남북교류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자 함

2

충남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체계 제안

1) 추진체계 구축의 방향

(1) 충남 남북교류협력 추진체계의 중요성

▶ 남북교류 추진체계 활성화 배경

-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적절한 추진체계의 정비와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에 달려있음(임을출, 2019)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분야는 반세기의 기간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류협력시스템을 갖추는데 한계를 보임
 - UN,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의 대외환경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정치적 변화에 민감하여 지속적인 경험과 체계 구축에 한계
 - 북한과 남한의 지방정부에 대한 인식의 현격한 차이와 국가 및 정부간 관계에 따라 독자적인 사업추진에 한계가 분명함
 - 남한의 지방자치단체 또한 민선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이에 따른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남북교류사업 추진에 미흡

-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의 남북교류협력 정책활동은 일부 접경지역 교류사업을 제외하고 2018년 이후 과거의 관계 회복 이후의 초기 시작단계들로 볼 수 있으며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과 2020년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해 남북교류협력의 활동이 위축된 대외적 환경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 반면에 2019년의 제도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남북교류활동의 적극적 참여가 가능하게 되면서 향후 미래의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 활동이 가능하기 위한 활동주체양성과 추진체계 구축의 단계라 볼 수 있음
- 결국 현재 시기에서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에서 주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제도적 변화에 따라 충남이 적극적으로 남북교류협력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역량강화와 함께 효과적인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내실을 다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향임
- 충청남도의 내부적인 통일인식 확대와 함께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의 활동이 형성되기 위한 다주체간 협력적 구조로 협의과정을 구축하고 이후 남북교류활동이 본격적 재기될 시 추진할 수 있는 실천적 추진조직들의 마련이 중요한 관건

(2) 충남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의 구축방향

▶ 다주체 참여와 논의구조 형성

- 접경지역으로 장기간동안 남북교류협력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경기, 인천과 달리 경남, 전남의 남북교류협력활동은 현재 추진체계를 구축 및 확대하고 있는 단계로 공공과 민간 중심의 다주체간 거버넌스 구축이 특징적임
- 전라남도과 광주시는 2000년대 이후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여 2003년 ‘광주전남남북교류협의회’가 발족하여 지역의 대표적 추진주체가 됨
- 특히 전남은 전라남도를 비롯해 전남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한 22개의 기초자치단체들과 전남교육청의 공공은 출연금 등을 통한 재원마련을 통해 적극적인 남북교류활동을 지원하고 있어서 보다 안정적인 남북교류협력활동이 가능함
- 공공과 함께 전라남도의 다양한 민간단체, 조직들이 ‘전남남북교류협의회’에 활동주체 및 협력지원단체로 참여하였는데,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각종 직능단체(의사, 세무사, 변호사 등)대표, 경제계 지역대표 등도 활동하는 다양성을 확보하여 실질적 남북교류활동의 논의와 실천이 가능하도록 구성함
- 광주광역시도 ‘(사)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의회’를 통해 전라남도과 유사한 형태와 방향으로 남북교류협력활동을 추진해왔음

- 이후 두 광역자치단체는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광주평화센터’로 보다 전문적인 남북교류협력과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전문실행기관으로 조례를 통해 전환하고 지원을 명시함
- 이와 같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다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의 체계를 구성하는 효과적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음
- 다주체 참여구조는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많은 역량들을 결집시킬 수 있으며 이들을 대표로 다양한 참여구조를 구축하고 대북지원의 근거들을 확산시킬 수 있음
- 따라서 정치적, 사회적 성향과 관계없이 다양한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 종교 및 경제계를 포함하여 충남 차원의 대표성을 가진 논의구조의 형성이 우선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

▶ 충남 남북교류협력의 실천주체 육성

- 충남 남북교류협력의 다양한 주체들의 수요와 역량을 결집하고 논의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전략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구조 형성에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실천행위가 필요함
- 따라서 협의된 논의들을 남북교류협력에 활용하고 다양한 제반적인 행위들을 주도적이고 상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남북교류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 실천적인 조직이 함께 필요함
- 이러한 형태는 경상남도에서 경남연구원에 구축한 경남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 경상남도는 경남연구원 소속으로 경남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의 상시적 실행조직을 구축하여 센터장 1인 팀장 및 직원 3인으로 운영하고 있음
- 주요한 업무로는 정책연구, 거버넌스 운영, 정보교류 및 컨설팅 지원으로 남북교류의 행위가 경남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황 및 실태파악의 조사연구와 네트워크 운영의 기반마련을 주로 수행하고 있음
- 또 다른 형태로는 조례개정을 통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는 별도의 추진단을 구축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두도록 하며 추진단을 중심으로 위원회와 도의 활발한 정책추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 이러한 대표적인 경우로는 울산광역시로 볼 수 있으며 울산광역시는 조례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능과 역할도 제시하고 있음
- 이처럼 남북교류협력의 행위가 충남에서 대외환경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벌어질 수 있도록 하는 상시적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실천조직의 구성은 필수적

2) 남북교류협력 추진체계 제안

(1) 충남 남북교류협력 추진주체

- 앞서 제시한 방향에 따르면 충남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는 주요한 거버넌스 주체로 충남 남북교류의 민관거버넌스 조직과 상시적 실무추진주체를 강조하였으며 이와 함께 현재 충청남도의 남북교류팀 조직을 포함함
- 도 남북교류팀은 충청남도가 공공재원을 통해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운영과 함께 위원회 및 기금운영, 관련된 계획 수립, 통일교육 및 인식확산의 정책 개발운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충청남도의 대표적인 추진조직임
- 따라서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실질적으로 논의하며 실천하는 조직은 충청남도의 남북교류팀, 다주체 참여기반의 민관거버넌스 조직, 상시적 민간실천조직의 3주체로 종합할 수 있음

(2) 충남 남북교류협력 민관거버넌스 구축 운영

▶ 충남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조직의 형태

- 우선 충청남도에서도 남북교류협력 활동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의 조직체로서 다음의 두 가지 방향으로 구성을 제안할 수 있음
- ① 현재 충남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강화와 남북교류, 통일교육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위원회별 전문가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조직으로 확대
- ② 별도의 충청남도 남북교류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의 (사)충청남도 남북교류협의회 구성을 제안할 수 있음

▶ ① 충남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거버넌스 기능 확대

- 현재 조례를 통해 구성된 충남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행정부지사 위원장 및 당연직을 포함하여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또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문화, 관광, 체육, 학술, 경제, 인도적 사업의 분야로 구분할 수 있음을 제시
- 현재의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2명의 당연직(행정부지사 및

자치행정국장)과 함께 2인의 도의원을 제외하면 26명의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음

- 현재 26명의 민간전문가들은 남북교류, 통일교육, 기금의 3가지 분야로 현재 구분되어 있으며 활동내용에 따라 문화관광, 의료, 시민사회, 기금의 분야로 구분이 가능함
- 하지만 관련 정책의 심의 의결과 예산의 승인 등 수행을 위해 연간 2회 정도 소집되는 현재의 운영방식으로 적극적 남북교류협력 사업추진의 내실을 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과 함께 전문성의 확대가 필요하며 나아가 실질적인 민관거버넌스의 역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을 현재 행정부지사에서 도지사로 격상하여 위원회의 위상과 책무를 강조할 필요가 있음

▶ ② (사)충청남도 남북교류협의회 구성

- 이와 달리 충남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새로운 민관 거버넌스의 조직을 구성하는 방안도 제안될 수 있음
- 새로운 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별도로 활동하며 위원회는 기금심의 및 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자문역할에 한정하며, 협의회는 실질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 발굴과 실행을 위한 의견 논의 등의 포괄적 범주로 활동
- 충남 남북교류 관련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인 (사)충청남도 남북교류협의회는 구성과 발족은 다음의 단계를 통해 추진될 수 있음
 - ① 준비위원회 구성
 - ②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의 참여 명사와 역할의 조례 개정
 - ③ 충남의 다양한 직능단체 및 경제, 사회, 문화 분야 협의체 참여 독려
 - ④ (사)충청남도 남북교류협의회 활동방향과 사업내용 구성과 정관작성
 - ⑤ (사)충청남도 남북교류협의회 발족과 통일부 대북사업자 승인
- (사)충청남도 남북교류협의회 추진을 위해 현재의 충남도의회 남북교류협력 연구모임 및 충남 남북교류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가칭) 준비위원회를 구성
- 협의회와 같은 민관거버넌스 조직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며 주요한 단체 및 협의회 대표들이 이사로 구성하여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
- 이와 함께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의사, 변호사, 건설업 등 다양한 직능단체 대표와 함께 경제계와 함께 새마을 단체 등 보수성향의 단체 참여를 망라하는 조직구성 다양성이 존재해야 충남의 다양한 계층으로 남북교류의 당위성과 긍정적 인식도 확산될 수 있음

-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충청남도과 15개 시군이 참여하기 위한 설득과 함께 조례개정을 통한 지원의 근거마련을 추진하여 공공의 참여기반을 마련함이 핵심이며 공공은 주로 조례에 근거하여 활동 재원을 조성하여 사업활동이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

(3) 충남 남북교류협력 실무추진조직 구축 운영

▶ 충남 남북교류협력 실무추진조직의 필요

- 충남 남북교류협력의 실무추진조직(이하 추진단)은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에 의한 상시적인 남북교류협력 추진조직을 의미함
- 남북교류협력의 활동수행을 위한 이러한 전담조직(추진단)의 구성은 남북교류협력 관련된 지속적인 정보습득 및 전파, 통일 및 남북교류 관련 교육과 인재양성, 정책개발과 사업수행의 컨설팅, 타 지자체와 교류협력 등의 다각적인 저변확산의 활동들의 지속적인 역할과 기능을 위해 필요성이 높음
- 추진단은 공공조직인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팀과 민간조직 및 위원회의 활동을 연결해주고 이들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지원하며 공공과 달리 유연하고 추진력 있는 활동을 수행하는 역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상근조직의 형태가 바람직함
- 추진단은 단기적인 방향으로서는 다음 두 가지 형태로 고려해볼 수 있음
 - ① 첫째, 충남남북교류협력위원회 소속으로 조례를 통해 (가칭)추진단을 상근형태 조직으로 두고 추진하도록 하며 추진단장은 도지사에 의해 민간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형태
 - ② 둘째, 충청남도 공공기관내에 센터형태로 추진단을 구축하며 해당 소속 공공기관장이 아니라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관리를 받도록 하는 형태
- 이러한 형태는 다음의 두 가지 사례를 통해 구체화 될 수 있음

▶ 위원회 소속의 추진단 구축 운영

- 첫번째 형태는 현재 충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소속으로 추진단의 구축방향을 제안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울산광역시에서 다음 표와 같이 조례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형태로 남북교류 실무추진단을 참고할 수 있음
- 이러한 형태는 충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소속으로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며, 추진단은 위원 중에서 남북교류협력 관련 역량을 갖춘 민간인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는 것이 업무의 추진과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은 추진단의 구성은 상근인력의 확보와 함께 관련 연구자 및 도, 시군 공무원 등 민관 협력의 체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50] 울산광역시 남북교류실무추진단의 조례 근거

제6조 남북교류실무추진단<개정 2019.08.01.>

- ①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에 실무적으로 응하기 위하여 남북교류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② 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단장과 위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위원회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④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남북교류협력방안에 대한 자료수집·조사
 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발굴
 3.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건의

▶ 충남 공공기관 소속의 추진단 구축 운영

- 보다 안정적인 형태로는 현재 충남에서 운영 중인 공공기관의 소속으로 남북교류협력 관련 추진단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앞서 경상남도는 '경남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 기관을 2019년 7월에 출범시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았음
 - 연구센터는 경상남도가 출연하여 경남연구원 내에 설립하였으며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의 주요한 동향 조사 및 정책연구의 기능과 함께 다양한 주체들의 거버넌스 조직 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음
 - 경남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의 주요한 업무로는 정책연구, 남북경협정보수집 및 컨설팅,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의 중심축, 남북교류 시행기반 조성을 수행하고 있음
- 충청남도 또한 경남처럼 남북교류협력의 초기단계로 현재 주체의 역량과 활동경험이 미흡한 상황에서 전문가 중심의 전담지원기관의 설립은 향후 남북교류협력의 기반구축과 효과적인 확산이 가능할 수 있음
- 따라서 경남의 사례처럼 충청남도 소속의 출자출연기관 소속으로 상시 업무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현재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은 충남 남북교류협력 실무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와는 별도로 구성 및 지원의 조례 명시 등의 제도화 과정이 필요함

▶ 실무추진조직 운영 방향

- 충남 남북교류협력의 추진단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주로 수행하도록 운영의 방향정립이 필요함
 - ① 연구조사: 충남 남북교류협력 활동 관련된 실태와 현황의 파악, 북한의 주요 교류대상지역의 정보와 정책DB 구축, 충남 남북교류협력 관련 정책 연구, 충남 남북교류 관련 이슈리포트 등 정기간행물 발간

- ② 거버넌스 운영: 충남 남북교류협력 전문가 자문위원단 운영, 충남 남북교류협력 민관거버넌스 조직 운영, 충남 출자출연 공공기관들간 남북교류협력 관련 네트워크 구성 운영
- ③ 추진조직 지원: 충청남도 남북교류팀 지원 및 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상정 안건의 건의 및 검토와 위원회(장) 자문활동 수행
- ④ 남북교류협력활동의 개발 및 추진: 충청남도 남북교류팀과 함께 교류협력활동을 공동으로 개발 및 추진하지만 공공조직과 달리 민간의 주체와 역량을 중심으로 공공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기능의 차별화를 둘 필요가 있음
- 남북교류협력의 실무추진단은 충남 남북교류협력의 성격 및 방향에 따라 충청남도가 출연한 공공기관과 함께 전담실행조직의 연계협력의 구축과 운영이 필요함
 - 문화예술 부문: 문화재단 및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등 기관과 연계협력 수행
 - 남북경협 등 경제분야: 충남경제진흥원과 업무에 대한 연계협력 수행
 - 공익 및 공동체분야: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연계협력 수행
 - 도시 및 지역개발분야: 충남도시개발공사 등과 연계협력 수행
 - 통일교육 및 인식확대: 충남공무원교육원, 충남교육청, 충남평생교육진흥원 등과 연계협력 수행
- 공공기관 소속 센터의 추진단 설립의 경우는 해당 소속의 공공기관과 이를 관리하는 충청남도의 주무부서로 인한 운영의 자율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별도의 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센터의 운영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민간전문가들로 구성하며 민간중심의 남북교류, 통일인식확산을 위한 정책추진과 사업운영의 의견을 개진하며 센터의 독립적 운영 확보를 위한 역할을 수행함

▶ 실무추진조직의 장기적 비전

- 우선 추진단은 어떠한 형태라도 조례의 개정을 통해 별도의 독립성을 가진 추진조직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초기 인큐베이팅의 과정을 거칠 필요는 있음
- 이와 같은 충남 남북교류협력의 추진단은 현재의 여건에 따라 위의 두 가지 형태 중에서 설립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나 광주평화센터처럼 별도의 독립된 재단으로 자립화가 필요함
- 남북교류협력의 추진단(재단)은 전남이나 광주의 사례처럼 독립적 자립기구로 충남을 대표하는 대북기구로 정부의 승인을 받고 직접 남북교류 및 통일인식확산의 활동을 수행하는 형태로 발돋움 할 필요가 있음

▶ 충남 남북교류협력 위한 협의회 구축

- 추진단은 충남 소속의 공공기관 및 중간지원조직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위원회

와는 별도로 ‘충남 남북교류 실무추진협의회(가칭)’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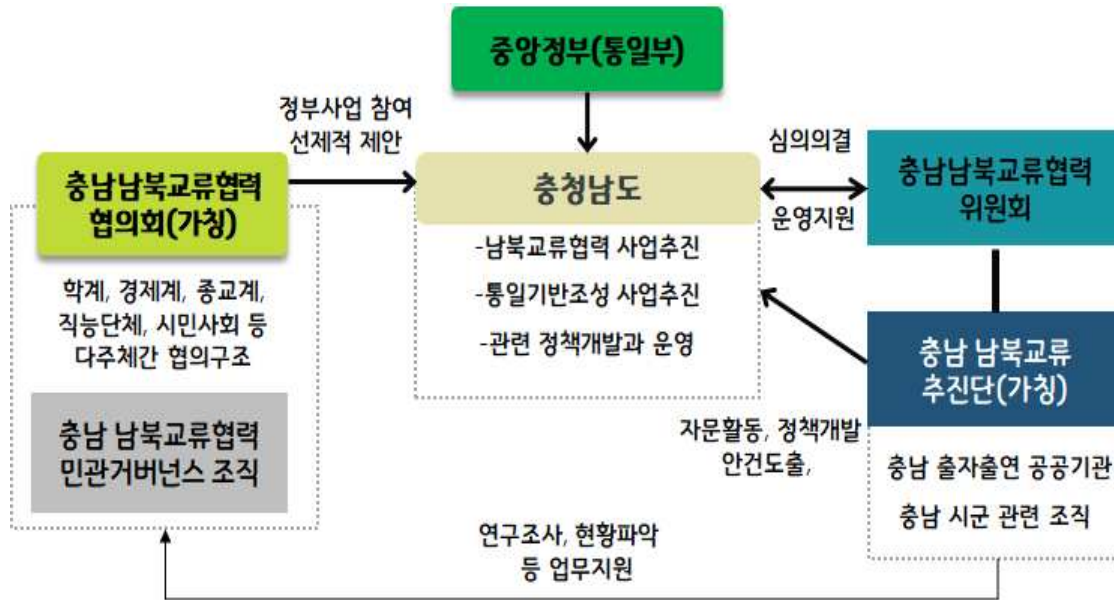
- 충청남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주체들간 협력과 함께 소속 시군들의 협력과정도 함께 수행될 필요가 있음
- 전라북도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에 보조금 교부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충청남도 또한 시군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수행에 관한 시군 사업의 재정지원의 필요성과 함께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제정, 계획수립 및 시책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제도적 기반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위원회는 별도로 충남 남북교류협력 민관거버넌스에 시군의 참여와 함께 실무추진단 중심의 정기적 협의체 구축 운영이 필요하며 이는 위에서 제시한 ‘충남 남북교류 실무추진협의회(가칭)’으로 통합하여 함께 논의구조 형성을 제안

(4) 충남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체계

▶ 충남 남북교류협력 추진체계의 제안

- 위에서 제시한 충남 남북교류협력 추진체계를 종합하면 다음 그림과 같음
- 우선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경험의 기반마련은 중앙정부에서 담당하고 광역 등 지방정부는 사회문화교류 등 비경제적 협력 모델 중심의 추진 전략이 필요
- 충남의 남북교류협력(통일기반조성 포함)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한 주체는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충남남북교류협력협의회(가칭)와 충남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상시적인 실무 추진조직인 추진단(가칭)을 거론할 수 있음
- 특히 추진단은 앞서 기술한 바처럼 다양한 형태로 둘 수 있으나 위원회 소속으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활동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최종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 민관거버넌스 조직과 함께 전남의 사례처럼 독립적인 재단의 형태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충남 남북교류의 추진체계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 참여의 구조를 마련하는 동시에 전문적이고 상시적 남북교류 활동 추구가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제안
- 또한 중앙정부와 파트너십의 역할과 함께 시군을 포함한 공공과 민간의 지역사회 협력망 기반의 남북교류 및 통일기반의 생태계 조성이 중장기적으로 갖추어질 필요가 있음

[그림 7] 충남 남북교류 추진 거버넌스 구축(안)



3) 남북교류협력 조례개정 및 추진단계 제안

(1) 남북교류협력 추진체계의 조례개정 제안

▶ 남북교류협력 위원회와 실무추진단 조례의 개정

- (충남 남북교류협력 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협력 담당 국장으로 한다.
- (충남 남북교류협력 실무추진단의 구성)
 - ①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에 실무추진단(추진단)을 둘 수 있다.
 - ② 단장을 포함한 추진단은 7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의 대상자(1. 남북교류협력사업 등 관련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하거나,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충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 ③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담당국장과 충남 남북교류협력 담당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추진단을 활용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추진단 업무의 전담인력을 두거나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실무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남북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자료수집, 연구조사]
2. 남북교류협력 민관협치 조직 운영, 출자출연 공공기관들간 네트워크 구성 운영
3. 위원회 상정안 검토, 조정 및 건의
4. 남북교류협력활동의 개발 및 추진

▶ 사업관련 위탁과 보조금 지원 개정 제안

- 제20조 (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인·단체, 출자·출연기관,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1조 (위탁관리)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인·단체, 출자·출연기관, 개인 등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2) 남북교류협력 정책수행의 단계 제안

- 위에서 제안한 통일교육 및 인식확산 관련하여 제안된 정책의 실행을 위한 다음과 같은 단계별 수행이 필요함
- (1단계: 2021년) 남북교류협력의 추진기반 마련
 - 충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기능 및 역량 강화(위원장 격상과 위원의 역량 강화)
 - 충남 남북교류협력 실무추진단 확정 및 구축(추진단 형태의 확정과 하반기에 구축 추진)
- (2단계: 2022년) 남북교류협력 활동의 수행
 - 남북교류협력 실무추진단 운영
 - 추진단 중심으로 충남 남북교류협력 민관거버넌스(협의회 등), 도 유관기관들과 실무추진협의회 등 조직 구성과 운영
 - 농업기술 전수, 보건의료 및 방역지원 등 남북교류협력 활동방향과 추진사업 확정
- (3단계: 2023년 이후) 남북교류협력 활동 확산
 - 도 남북교류팀 및 실무추진단과 북한의 교류협력 관련 소통 창구 개설과 다변화
 - 북한과 역사문화, 보건의료, 농업분야 등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분야 교류 확대
 - 충남 남북교류협력 민관거버넌스 조직의 재단법인화를 통한 민간독립화 기틀 마련

3

충남 통일기반 조성의 방향과 과제

1) 통일교육 및 인식확산의 방향

▶ 통일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의 의의

- 통일교육은 ‘통일교육기본계획’에 의하면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 필요한 긍정적 인식과 바람직한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으로 「남북의 평화공존과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시민양성」의 비전을 갖고 있음
- 통일교육과 인식확산은 남북교류협력 정책추진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공직자 및 주요 주체들의 대북관련 현실적인 이해와 정책추진 기반 마련 확산을 위해 필수적임
- 결국 통일교육과 인식확산은 도민 대상의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인식적 기반을 만드는 차원이며 지속가능하고 중장기적인 활동추진을 위한 내부적 역량 강화의 필수적인 정책활동으로 의의가 큼
- 따라서 일반적으로 통일교육 및 인식확산은 남북교류의 부수적인 정책영역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교류협력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적 기반과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의식고양의 측면에서 정책 효과성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함

▶ 통일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의 방향

- 통일교육과 인식확산은 관련된 지식의 주입이 아니라 올바른 북한 관련 정보와 인식을 알려주며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위한 도민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에 주요한 목적이 있음
- 현재까지 통일교육은 통일부 통일교육원 중심으로 지역통일교육센터를 통해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중앙정부 중심의 교육시스템이 주도적
-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통일교육은 통일부 중심으로 수행되는 통일교육의 실행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만의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발굴과 실행이 필요
- 최근 앞서 살펴본 경기, 전남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체적인 통일교육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남에서도 중앙정부의 통일교육과 함께 자체적인 통일교육 활동을 통한 남북교류의 인식확산 도모가 효과적인 방향
- 또한 강사 중심의 단발적인 통일교육의 행위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로드맵에 의한 지속가능한 통일교육 활동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
- 위와 같은 통일교육과 인식확산의 논의에 기반하여 충남 통일기반조성의 방향을 종합하면 다음으로 제시할 수 있음

① 지속가능한 생애주기별 평화통일교육과 인식확산

- 외부환경 및 정치적 변화와는 무관한 지역사회 내 평화통일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지원체계의 확립이 필요함
- 유아동부터 고령자에 이르기 까지 생애주기별 집단을 아우르며 집단별 특성에 맞춘 교육이 실행을 통한 전 세대의 통일 공감대 조성이 중요함

② 충남 특성을 반영한 평화통일교육 실행

- 충남의 역사적,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는 평화통일 교육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충남과 북한지역의 정체성 및 역사적, 문화적 접점을 통한 공감대 형성 등의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③ 북한의 실상과 변화를 반영한 교육 실행

- 평화통일교육은 우리사회의 통합과 함께 북한사회 및 주민과의 소통과 통합의 모습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 또한 중요한 목표라 할 수 있음
- 과거의 단절되고 제한적인 정보에 따른 정치 이데올로기에 의한 왜곡된 모습보다 현재 상태에서 북한사회와 생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제공과 평가가 기반이 될 필요
- 비록 제한적일 수 있지만 합법적 범위에서 습득한 미디어 매체를 포함하여 북한이탈주민들 중심의 북한주민과 체제의 정보교류 등의 기회를 조성하는 프로그램 또한 교육의 중요한 한 축이 되어야 함

2) 통일교육 및 인식확산의 정책 과제

(1) 충남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기반 조성

▶ 충남 통일인식확산을 위한 근거마련의 강화

- 현재 통일교육 및 인식확산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표 51] 지방자치단체 통일교육 관련 조례 내용

지역	실행조직 설치	시군 수행 및 지원	지역사회 협력	사업위탁 재정지원	인력양성
서울특별시	평화 통일교육 활성화 기관설치 운영			평화통일 교육의 위탁, 예산지원	
부산광역시	관련 조례 없음				
대구광역시	관련 조례 없음				
인천광역시	통일교육센터 설치			통일교육 위탁 수행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광주광역시		자치구청장 통일교육 책무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통일교육 위탁, 재정지원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대전광역시				통일교육 위탁 수행	
울산광역시	관련 조례 없음				
세종특별자치시	관련 조례 없음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센터 설치	시군 책무, 통일교육 지원 (시책, 재정)	통일교육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통일교육 위탁, 재정지원	평화통일교육 전문강사단 양성
강원도				통일교육 위탁, 재정지원	
충청북도	관련 조례 없음				
충청남도					
전라북도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통일교육 위탁, 재정지원	
전라남도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통일교육 위탁, 재정지원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경상북도	관련 조례 없음				
경상남도	관련 조례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통일교육 위탁, 재정지원	

- 통일교육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역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위원회 외에 다양한 지원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지자체 내 실행조직 설치,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책무 및 지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통일교육관련 사업위탁 및 재정지원, 인력양성(전문강사단)지원으로 구성됨
- 경기도의 경우 이러한 정책지원의 근거들이 조례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이며 대부분은 통일교육 관련 사업의 위탁과 이에 따른 재정지원과 지역사회협력망 구축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서울, 인천, 경기의 경우는 실행조직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음
- 하지만 충남의 경우 남북교류협력과 함께 통일교육의 조례가 함께 포함되어 개정되었으나, 위와 같은 실제 구체적인 지원정책의 근거들이 조례의 내용들에 포함되어 있지 못함
- 향후 통일교육 및 인식확산의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충남의 관련 조례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보강될 필요가 있음

① 충남 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치

-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의 형태로 평화통일교육센터 설치 근거 마련
- 관련 센터의 공공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과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도 필요
- 통일 교육 프로그램 및 교구개발과 이를 위한 행재정 지원
- 도민 및 공직자 통일교육 역량강화와 인력양성
- 통일교육의 수요조사와 홍보활동

② 충남 평화통일교육 전문강사단 운영

- 충남의 역사, 지리, 문화, 정체성 등 특성에 기반하여 사회통합적 가치를 평화통일교육 실시를 위한 전문과정 운영
- 전문교육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충남평화통일교육 전문강사' 인증 과정의 운영으로 지속적인 인력양성 필요

③ 시군 및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의 근거

- 평화통일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충청남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관련기관, 단체, 학교 등 관련 조직들이 모두 참여하는 네트워크 및 협의체 구성으로 상호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기반 마련
- 특히 시군이 적극적으로 평화통일교육을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책무와 함께 시군에 대한 사업지원의 근거를 마련

▶ 충남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필요

- 통일기반 조성은 도민 및 공무원 대상으로 통일교육과 인식확산의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간이 아니라 중장기적 비전을 통해 실행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는 3년마다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매년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 2019-2021년 계획이 수행중이기 때문에 충남에서도 시기를 맞추어 기본계획 수립의 실천이 필요함
- 통일교육기본계획은 외부환경 및 중앙정부의 통일환경을 비롯하여 통일교육의 현황과 실태분석을 포함하여 충남 도민대상의 통일교육 관련 인식조사, 국내외 타 지자체의 통일교육 사례분석의 기초적 조사활동이 선행되어야 함
- 이후 조사결과에 기반하여 충남의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과 비전, 원칙의 도출과 함께 이에 토대한 전략과 세부 실행사업들의 도출을 3년간의 중장기적 로드맵에 의거하여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기본계획에 기반하여 충청남도에서 통일교육과 인식확산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음

▶ 충남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행정기반 강화

- 남북교류협력의 정책사업은 대외적 성격의 정책활동이라면 통일기반조성은 내부적 역량강화를 도모하는 교육 및 홍보 등의 대내적 성격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충청남도에서는 남북교류팀과 함께 통일교육 인식확산의 정책활동에 집중하고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의 보강과 함께 별도의 조직화가 필요함
- 이와 함께 충남에서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별도의 교육실행조직이 중장기적으로 요구되며 이는 도내 교육관련 기관(충남평생교육진흥원 및 충남공무원교육원 등)과 함께 연계하여 '통일인식확산 실무추진조직'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도민과 공무원 대상의 교육활동을 구분하여 관련 기관내에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충남 통일교육의 전방위적 확산을 위한 연계협력

- 통일교육과 인식확산은 중앙정부의 통일교육원을 통해서도 수행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정하는 권역별 통일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이를 통해서도 실행하고 있음
- 현재 충북 서원대학교에서 운영중인 충청권 통일교육센터를 충남에서 유치하도록 충남의 관련 주체들간의 역량 결집과 사전 준비과정이 필요함
- 이와 함께 현재 충남에서 통일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통일교육 전문기관들간 연계협력을 통해 통합적 시각에서 효과적인 커리큘럼을 구성할 수 있도록 체계화의 역할이 필요
 - 통일교육 선도대학(충남대-공주대), 지역통일교육센터(건양대), 학생대상 강좌, 체험활동 사업(교육청)

- 이와 함께 통일기반조성과 유사한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통일교육과 인식확산의 과정이 포함되도록 정책적 협력과정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시군에서 진행하는 예비군 및 민방위 집합교육, 충청남도 자치행정과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위원회 대상 교육,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서 수행하는 민주시민교육, 충남 공익활동 관련 교육 등을 포함할 수 있음
- 이처럼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도내 다양한 주체들과 연계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앞서 제시한 ‘통일인식확산 실무추진조직’을 통한 상시적인 협의체(가칭 충남 통일인식확산 협의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구성 및 강사, 일정 등에 대한 논의 구조 마련

(2) 충남 통일교육 및 인식확산을 위한 사업 제안

▶ 충남만의 특색있는 통일 교육 프로그램의 발굴

- 통일부는 ‘통일교육 기본계획(2019-2021)’을 통해 지역사회 평화·통일교육 기반구축을 주요한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평화통일교육 추진의 측면을 강조하였음
- 특히 지역별 평화·통일계획 수립과 지역 특색의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활동 실시를 위해 다양한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남에서도 중앙정부의 통일교육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 발굴과 역량강화가 필요함
- 충남에서도 향후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역에서 지정받아 중앙정부의 통일교육사업과 함께 충남의 특색과 정체성을 갖춘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발굴과 지속적인 육성 필요함
- 충남에서 북한과 민족적 정체성과 동질감을 고려할 수 있는 역사문화 콘텐츠의 개발이나 충남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교육 등의 다각적 교육의 접근이 필요함
- 통일 및 남북 동질성 관련 연극, 뮤지컬, 공연 등의 문화예술콘텐츠와 시민참여형 행사 개발 보급 등의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보급

▶ 집합교육에서 탈피한 체험형 교육활동 확산

- 과거의 통일교육이 전문가(강사) 중심의 강의식 집합교육의 형태에서 탈피하여 수요자 지향형의 체험기반 교육활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실제 북한으로 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접경지역 및 DMZ인근을 방문하여 체험,

캠프활동의 수행이 통일교육에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충남에서도 체험형의 통일교육 활동이 수행되어야 할 것임

- 이와 함께 모의방식의 방북신청 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북한생활 간접체험 등의 북한의 삶의 체험을 유인하는 프로그램 방향도 효과적

▶ 유사 교육활동과 연계활동으로 인식확산

- 평화·통일 내용의 교육활동과 유사한 도내 주민대상 교육프로그램과 연계를 통한 교육활동 효율화가 필요
- 대표적으로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서 수행하는 민주시민교육과정의 연계를 통한 통일교육의 확대
- 충남공익활동지원사업 및 남북교류와 통일교육활동 관련하여 공동체와 주민자치 활동과의 연계 방안 모색도 고려

▶ 통일 인식확대를 위한 홍보 및 정보제공 기능 강화

- 통일교육과 함께 남북교류와 평화·통일에 관한 전 도민의 인식확산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임
-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충남도민 주체의 사회적 대화와 같은 정기적인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여 통일 관련 갈등완화 및 미래지향적인 통일문화 조성을 도모
- 충청남도 차원에서 평화통일 관련 도민참여 중심의 평화·통일 페스티벌(가칭)을 기획하여 다양한 북한, 통일 문화콘텐츠의 도민 향유기회를 확산
- 서울특별시 평화 페스티벌의 사례
 - VR을 활용한 평양여행을 즐기는 체험활동
 - 북한 및 평화 통일관련 영화 상영, 북한음식 체험전
 - 남북 및 평화 통일 주제의 토크콘서트 및 독후감, 단편소설 등 문예 경연대회 운영
 - 남북 및 평화 통일의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영상, 카드뉴스, 웹툰 등)
- 충청남도 차원에서 평화·통일 및 남북교류 관련 인식제고 및 홍보동영상 제작과 방송을 통한 송출, 관련 내용의 지역 라디오 방송이나 충남도 차원의 인터넷 팟캐스트 등의 다각적 매체를 활용한 남북교류 및 통일관련 인식확산 도모

3) 통일교육 및 인식확산 조례개정 및 추진단계 제안

(1) 통일교육 및 인식확산 관련 조례 개정 제안

- 충남은 남북교류협력과 통일교육이 같은 조례에 포함되어 있어서 전문성을 위한 구분을 통한 개정의 필요성이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관련된 조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강한 이후 실제 추진의 필요성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 따라서 위에서 제안한 통일인식확산 및 교육의 내용들을 통해 현재 제정되어 있는 조례의 통일교육 및 인식확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개정을 제안하고자 함

▶ 제13조 평화통일교육계획의 수립

- 도지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평화통일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신설) 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치 등

- ①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 ② 평화통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2. 통일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 통일교육의 실시
 3. 통일대비 공직자의 통일교육 역량강화 및 인력양성
 4. 통일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홍보
 5. 통일교육 및 인식확산의 네트워크 구축
 6. 통일 프로그램 및 교재, 교구 개발과 보급

▶ (신설)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단체, 학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 등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 평화통일교육을 수행하는 자는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평화통일교육 추진을 위하여 도내 평화통일교육단체 등이 참여하는 평화통일교육관련 협의체 설립이 가능하다.
-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통일화통일교육을 하는 자 간의 협의·조정 및 기타 상호간 협력 증진
 2.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조사연구와 연구자료 발간
 3. 평화통일교육 종사자의 역량강화와 복리증진
 4. 평화통일에 관한 인식 제고 및 홍보활동

▶ (신설) 시·군의 책무 및 협력

- 시장·군수는 충청남도의 통일교육 방향과 시책에 따라 시·군의 실정에 부합하는 평화통일교육 시책을 수립·시행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도지사는 시·군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연중·수시로 지원할 수 있다.

▶ (신설)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고 본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충청남도 평화통일교육 전문강사로 인증할 수 있다.
- 도지사는 전문강사로 구성된 강사단을 운영할 수 있다.
- 도지사는 강사단이 평화통일교육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군, 출자출연기관, 종교단체, 청소년단체 및 지역사회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하다.
- 도지사는 강사단과 협력하여 충청남도 평화통일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다.

(2) 통일교육 및 인식확산 정책수행의 단계 제안

- 위에서 제안한 통일교육 및 인식확산 관련하여 제안된 정책의 실행을 위한 다음과 같은 단계별 수행이 필요함
- (1단계: 2021년) 평화통일교육의 기반 마련
 - 충청남도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실시(2021년 2.~2021년 8.)
 - 충청남도 평화통일교육센터(2021년 하반기 설치)
- (2단계: 2022년) 평화통일교육 활동 실시
 - 충청남도 평화통일교육 전문강사단 발굴 육성(2022년부터 평화통일교육센터에서 양성)
 - 전문강사단 중심으로 충남형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과 관련 교구 개발 보급
 - 충청남도 평화통일교육 지역사회 협력망(협의체 등) 구축 운영(2021년 하반기)
- (3단계: 2023년 이후) 평화통일교육 활동 확산
 - 충남 내 도청 및 교육청 등의 다양한 도민교육 프로그램에 평화통일교육을 연계 확산
 - 접경지역 및 북한 방문 등의 체험형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확산과 평화통일 관련 도민 축제, 주간행사 등 인식확산과 홍보활동 강화

참고문헌

- 경기도, 2020,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 경기연구원, 2018, 남북평화협력시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기본구상과 전략 연구.
- 경남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 2019, 경남 남북교류협력 동향브리프1, 2, 경남연구원.
- 권숙도, 2020,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사회과학 연구, 36(1).
- 금창호, 2018,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어떻게 해야 하나, 월간 공공정책, 153.
- 김대옥·손화정, 2019, 평화시대 지방자치단체 남북한 교류의 방향, 지방행정연구, 33(3).
- 김동성, 2019,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거버넌스 구축, 월간 공공정책, 166.
- 김정수·우명수, 2010, 지방자치단체의 남북한 교류협력 사례분석, 대한정치학회보, 18(2).
- 대전세종연구원, 2018, 세종시 남북교류협력 추진방향과 정책의제 발굴.
- 박은주, 2018,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국내 정치집단 간 역학관계 연구: 이슈와 영향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부산연구원, 2019, 부산의 남북경제, 교류협력 방향과 과제.
- 부산연구원, 2019, 부산시 남북 문화체육 분야 교류협력 방안.
- 사득환, 2002, 정부간 관계(IRG) 변화와 지방정부간의 환경협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3(1).
- 서순복·금창호, 2016,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및 협력방안, 지방행정연구, 30(4).
- 서울연구원, 2018,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추진전략 연구.
- 성태규, 유병선, 2008, 충청남도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충남연구원 연구보고서.
- 신종호 외, 2016, 전환기 남북관계 영향 요인 및 향후 정책 방향, KINU 연구총서.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2014, 인도적 대북지원, 이대로 좋은가?- 남북화해와 평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대북지원의 모색 토론회.
- 이한희, 2017,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법적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31(1).
- 임을출, 2019, 남북교류협력 및 접경지역 평화지대화를 위한 지방정부간 거버넌스 구축 방안,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방안 토론회, 경기도.
- 통일교육원, 2018, 통일교육 기본계획, 통일부.

통일연구원, 2018,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지표와 발전방향.

홍석준, 2018, 한반도 평화변영을 위한 새로운 로컬 거버넌스의 모색, 세계지역연구논총, 36(1).

[부록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지자체	조례명 (제정일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남북교류협력기금	보조금 지원 사업위탁 사항
		기능	구성(위원장, 당연직 등)	소속조직 (실무협의회, 추진단 등)과 업무	기금용도	
서울	서울특별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2004. 7. 20)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화·통일 교육 기본계획 - 기금의 운용 및 관리 -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교류 및 평화·통일 교육 지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장 포함 30명 이내로 구성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 •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 시 관계공무원 • 시의회 의원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없음	-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 시 또는 주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 • 북한의 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 북한의 재해·재난 및 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 - 통일문화조성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화·통일 교육 • 학술회의 등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차원의 사업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 보조금 지원 및 사업위탁 • 시장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사업위탁 가능

지자체	조례명 (제정일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남북교류협력기금	보조금 지원 사업위탁 사항
		기능	구성(위원장, 당연직 등)	소속조직 (실무협의회, 추진단 등)과 업무	기금용도	
부산	부산광역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2007. 7. 11)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사항 - 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남북교류와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남북교류협력사업관련 국장급 이상 공무원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번만 연임 가능	-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음	-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 없음

지자체	조례명 (제정일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남북교류협력기금	
		기능	구성(위원장, 당연직 등)	소속조직 (실무협의회, 추진단 등)과 업무	기금용도	보조금 지원 사업위탁 사항
대구	대구광역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2005. 8. 10)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시책 - 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교류의 지원 - 기금의 운용 및 관리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 남북교류협력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 남북교류협력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 기금운용 분야 전문가 • 시의회 의원 • 시 공무원 - 위원의 임기는 2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	- 없음	- 시와 시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남북교류협력사업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 시장은 시와 북한 주민이 공동으로 문화·체육·학술 및 경제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함 •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위탁 가능

지자체	조례명 (제정일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인천광역시 평화도시조성 위원회)			남북교류협력기금	보조금 지원 사업위탁 사항
		기능	구성(위원장, 당연직 등)	소속조직(실무협의회, 추진단 등)과 업무	기금용도	
인천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08. 10. 8)	-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평화도시 조성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2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30명 이내의 위원, 성별 고려 구성 - 위원장 중 1명은 시장, 다른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 남북업무 담당국장, 문화관광체육업무 담당국장, 환경녹지업무 담당국장, 경제산업업무 담당국장, 해양수산업무 담당국장 • 인천광역시교육청 통일관련 업무 담당국장 • 인천광역시의회의원 •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문화계 등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그 밖에 평화도시 조성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실무위원회 •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 위해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 관계기관 등의 협조 •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 가능	-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과 관련 시 차원에서의 사업 - 시 차원의 남북간 경제 및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 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연계되는 사회간접자본 조성 사업비 지원 - 그 밖에 기금의 목적과 부합한 사업 등	- 사무의 위탁 •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 •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름

지자체	조례명 (제정일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남북교류협력기금	보조금 지원 사업위탁 사항
		기능	구성(위원장, 당연직 등)	소속조직 (실무협의회, 추진단 등)과 업무	기금용도	
광주	광주광역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2003. 1. 1)	- 시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 남북교류협력 촉진시책 연구 - 남북교류협력 기반의 조성 및 민간교류의 지원 - 그 밖에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협의회는 시 및 광주광역시의회, 자치구 및 자치구의회, 문화예술계, 언론계, 종교계, 경제계, 민간단체 등 각계 인사 30인 이상 50인 이하로 구성 -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함	- 없음	- 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 -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 없음

지자체	조례명 (제정일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남북교류협력기금	보조금 지원 사업위탁 사항
		기능	구성(위원장, 당연직 등)	소속조직 (실무협의회, 추진단 등)과 업무	기금용도	
대전	대전광역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2008. 6. 20)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교류의 지원 -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자치분권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	- 없음	-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 대전광역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지원	- 사업의 위탁 • 시장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 위탁 가능

지자체	조례명 (제정일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남북교류협력기금	보조금 지원 사업위탁 사항
		기능	구성(위원장, 당연직 등)	소속조직(실무협의회, 추진단 등)과 업무	기금용도	
울산	울산광역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2006. 4. 6)	-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 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남북교류협력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 남북교류협력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 시 관계공무원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 가능	- 남북교류 실무 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단장과 위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위원회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 남북교류협력방안에 대한 자료수집·조사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발굴 •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건의	-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 시장은 남북한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와 휴전선 북쪽지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체육·학술 및 경제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 • 시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 위탁 가능

지자체	조례명 (제정일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남북교류협력기금	
		기능	구성(위원장, 당연직 등)	소속조직(실무 협의회, 추진단 등)과 업무	기금용도	보조금 지원 사업위탁 사항
세종	세종특별 자치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2015. 7. 30)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기금의 운용계획, 결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남북교류기간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행정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협력 사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함 •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시 관계공무원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가능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함	- 없음	- 시와 시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과 관련한 시 차원에서의 사업 - 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의 추진	-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 시장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시 또는 시민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위탁 가능

지자체	조례명 (제정일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남북교류협력기금	보조금 지원 사업위탁 사항
		기능	구성(위원장, 당연직 등)	소속조직(실무협의회, 추진단 등)과 업무	기금용도	
경기	경기도 남북교류 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001. 11. 9)	-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남북교류기반 조성 및 시·군, 민간차원 교류지원에 관한 사항 - 남북교류협력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0명 이내 위원 구성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은 남북교류협력 업무 관계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회 의원 •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	-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단 • 도지사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에 실무기획단을 둘 수 있음 • 도지사는 실무 기획단을 활용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고, 관련연구를 경기연구원 등의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 대학 등 학과의 설치장려 • 도지사는 도내에 소재하는 대학교 또는 대학 등에 북한과의 교류협력과 관련된 학과의 설치를 장려할 수 있음 • 도지사는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치를 위한 장려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도내 기관·단체의 인도적 지원 및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 남북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 북한 재해·재난에 관한 사업의 지원 -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도가 추진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 중 도지사가 제안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 - 도가 추진하는 통일정책 사업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업 • 개성공단 도내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판로 지원 사업, 남북 노동자 보건의료 지원 사업, 개성공단 연계 남북교류협력사업 •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른 통일교육 및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 또는 국내 회의, 학술연구, 문화 등에 관한 사업의 추진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 업무 위탁 및 재정지원 •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그 사업 위탁 가능 • 도지사는 제5조 제3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산가족, 학생 등의 복측방문 등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지원 가능 • 도지사는 제5조 제3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민간 전문가 등에게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음

지자체	조례명 (제정일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남북교류협력기금	보조금 지원 사업위탁 사항
		기능	구성(위원장, 당연직 등)	소속조직(실무협의회, 추진단 등)과 업무	기금용도	
강원	강원도 남북교류 협력 조례 (2018. 5.4.)	-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자문 - 남북교류 기반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과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호선 -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문화·체육·산림·농업분야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임명 -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위촉 •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위원회 위원 및 기획단 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음	[기획단] -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남북교류협력기획단을 설치·운영 가능 - 기획단 위원은 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 - 단장과 위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위원회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 - 기획단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 • 남북 교류협력방안에 대한 자료수집·조사 •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 남북한 주민간의 문화·학술·체육·경제 분야 등 교류협력사업 - 북한 주민의 생활개선사업 -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자료 조사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그 밖에 남북 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업무 위탁 및 재정지원] -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 가능

지자체	조례명 (제정일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남북교류협력기금	보조금 지원 사업위탁 사항
		기능	구성(위원장, 당연직 등)	소속조직(실무협의회, 추진단 등)과 업무	기금용도	
충북	충청북도 남북교류 협력 조례 (2012. 11. 2)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항 - 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 그 밖에 남북교류와 협력의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 - 위원회의 위원장은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 •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 및 시민사회·종교단체에 소속된 사람 • 충청북도의회 의원 •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국장급 이상 공무원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 가능	[실무위원회] - 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활동을 위하여 문화·체육·경제·농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 등의 교류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함	-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 없음

지자체	조례명 (제정일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남북교류협력기금	보조금 지원 사업위탁 사항
		기능	구성(위원장, 당연직 등)	소속조직(실무협의회, 추진단 등)과 업무	기금용도	
충남	충청남도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1. 11. 10)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및 조정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심의 및 자문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의 - 남북교류협력 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 -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및 통일교육계획의 심의·자문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30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 구성 -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함 -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에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남북교류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의 장 •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 통일교육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두 차례만 연임 가능	[실무위원회] - 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활동을 위하여 문화·관광·체육·학술·경제 및 인도주의적 사업 등의 교류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함	-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의 추진	[보조금 지원] -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 가능 [위탁관리] -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단체 등에게 그 사업을 위탁 가능

지자체	조례명 (제정일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남북교류협력기금	보조금 지원 사업위탁 사항
		기능	구성(위원장, 당연직 등)	소속조직(실무협의회, 추진단 등)과 업무	기금용도	
전북	전라북도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2007. 12. 28)	-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남북교류기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지원에 관한 사항 - 남북교류협력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성별 균형 고려 -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 •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남북교류협력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 •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국장급 이상 공무원 -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 가능	[실무기획단] -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에 실무기획단을 둘 수 있음 - 도지사는 실무기획단을 활용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고, 관련연구를 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음	- 문화·학술·체육·경제·관광·축제·농업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남북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국제 또는 국내외의와 학술 연구에 관한 사업의 추진 - 북한 재해·재난에 관한 사업의 지원 -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보조금 지원] - 도지사는 남북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남북교류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보조금 지원 가능 •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홍보물 제작·활용 등 홍보사업 • 남북교류 및 협력을 위한 행사지원(기념행사, 박람회, 문화행사 등) -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단체 또는 법인에 지원하는 기금 사업의 사업비의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에 보조금 교부 가능

지자체	조례명 (제정일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남북교류협력기금	보조금 지원 사업위탁 사항
		기능	구성(위원장, 당연직 등)	소속조직(실무협의회, 추진단 등)과 업무	기금용도	
전남	전라남도 남북교류 협력 조례 (2003. 6. 5)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 남북통일 후 남북교류협력사업 중단시 조성된 기금의 활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임 - 위원회의 위원은 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6명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 남북교류협력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 남북교류협력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실무기획단]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에 실무기획단을 둘 수 있음	- 도내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과 북한 주민의 문화·학술·체육·경제분야 등 교류협력사업의 지원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그 밖에 남북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사업방법] -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기금을 조성하여 추진하되 필요시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에서 생산된 농·공·수산물품 등을 현물로 지원 가능 - 전라남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 위탁 가능

지자체	조례명 (제정일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남북교류협력기금	보조금 지원 사업위탁 사항
		기능	구성(위원장, 당연직 등)	소속조직(실무협의회, 추진단 등)과 업무	기금용도	
경북	경상북도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2008. 1. 10)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 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교류의 지원 - 기금의 운용 및 관리 -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20인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 • 남북교류협력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 남북교류협력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 •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도, 시·군 관계 공무원 - 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 가능	[실무위원회] - 제9조제1항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문화, 체육, 학술, 농림, 수산·해양, 경제, 보건·의료, 교육 등의 교류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북한의 재해, 재난, 구호 및 각종 인도적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 - 그 밖에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 도지사는 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와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문화, 체육, 학술, 농림, 수산·해양, 경제, 보건·의료, 교육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도지사는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음

지자체	조례명 (제정일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남북교류협력기금	보조금 지원 사업위탁 사항
		기능	구성(위원장, 당연직 등)	소속조직(실무협의회, 추진단 등)과 업무	기금용도	
경남	경상남도 남북교류 협력 조례 (2005. 4. 7)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 - 남북교류협력기반 조성 - 통일 교육 지원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남북교류협력 담당 실·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도 남북교류협력 업무 관계공무원 • 도의회 의원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1회에 한하여만 연임 가능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함	[전문위원회]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경제협력, 사회·문화 등의 교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 도와 도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 - 북한의 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개최하는 국제 또는 국내회의와 학술 연구에 관한 사업 - 북한의 재해·재난·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그 밖에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차원의 사업 -	[위탁관리] - 도지사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 출자·출연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 가능

지자체	조례명 (제정일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남북교류협력기금	보조금 지원 사업위탁 사항
		기능	구성(위원장, 당연직 등)	소속조직(실무협의회, 추진단 등)과 업무	기금용도	
제주	제주특별 자치도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2007. 5. 9)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전반적인 주요 정책 -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을 위한 추진계획 -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교류의 지원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 시민단체 대표 • 관계공무원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실무위원회]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남북교류협력사업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실무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 제주특별자치도민(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 정부사업과 관련한 제주자치도 차원의 남북협력분야 등 추진 사업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그 밖에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위탁관리] -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그 사업의 일부나 전부 위탁 가능

[부록 2]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지자체	조례명 (제정일자)	주요사업내용 (단체장 책무)		시군 책무 및 지원	(평화)통일교육 위원회		실행조직(센터) 설치 및 지역사회의 협력 등	교육위탁과 재정지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사업	전문조직(강사단)운영		기능	구성(위원장, 당연직 등)		
서울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 (2015. 4. 2)	- "평화·통일 교육"이란 남북한 화해와 평화 공존, 자주·평화· 민주의 원칙에 입각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의미함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 기관 설치· 운영] - 시장은 평화·통일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 가능	[평화·통일 교육의 위탁 등] - 시장은 평화·통일 교육의 일부를 자치구에 위임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 가능 - 시장은 평화·통일 교육을 위임받은 자치구 또는 위탁받은 법인,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 가능. 필요한 재원은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북교류협력기금으 로 할 수 있음

지자체	조례명 (제정일자)	주요사업내용 (단체장 책무)		시군 책무 및 지원	(평화)통일교육 위원회 (인천광역시 평화도시조성 위원회)		실행조직(센터) 설치 및 지역사회의 협력 등	교육위탁과 재정지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사업	전문조직(강사단)운영		기능	구성(위원장, 당연직 등)		
인천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04. 11. 08)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 시장은 통일대비 업무와 남북교류 및 협력 사업을 맡은 공직자, 종교단체, 여성단체, 지역사회 단체 등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가능		-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평화도시 조성 및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2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고려 구성 - 위원장 중 1명은 시장이 되며, 다른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 남북업무 담당국장, 문화관광체육업무 담당국장, 환경녹지업무 담당국장, 경제산업업무 담당국장, 해양수산업무 담당국장 • 인천광역시교육청 통일관련 업무 담당국장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문화계 등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그 밖에 평화도시 조성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통일교육센터의 설치 등] - 통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 통일대비 공직자 통일교육 역량강화 및 인력양성 - 통일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 통일교육의 실시 - 통일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홍보 - 통일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 통일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 사회단체, 군·구, 사업소 등에서 시행하는 통일교육 지원 - 통일·문화 체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통일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통일교육의 위탁 등] - 시장은 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에게 이 조례에 따른 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 가능 - 시장은 시 및 군·구 소속 직원의 통일교육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소속 통일교육기관 또는 시 소속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강사 파견 및 위탁교육 요청 가능

지자체	조례명 (제정일자)	주요사업내용 (단체장 책무)		시군 책무 및 지원	(평화)통일교육 위원회		실행조직(센터) 설치 및 지역사회의 협력 등	교육위탁과 재정지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사업	전문조직 (강사단)운영		기능	구성(위원장, 당연직 등)		
광주	광주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1. 9. 15)	[시장의 책무] - 시장은 「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의 통일교육 기본원칙에 따라 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함 - 시장은 통일부가 제시한 통일교육 지침을 준수하여 관내 공직자, 시민,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통일교육 실시하고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가능 - 시장은 통일대비 남북교류 활성화 및 관내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 가능 • 공직자 통일교육으로 통일대비 및 통일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 시민 통일교육의 인력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통일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	[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 시장은 통일대비 업무 또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맡은 공직자, 종교단체, 여성단체 및 지역사회 단체 등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이수하게 하여 통일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함	[교육감의 책무] - 교육감은 자라나는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함으로써 민족통일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함	- 제7조에 따른 통일교육계획 수립 - 제18조에 따른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 제19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위탁 - 통일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 시 통일교육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시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통일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위원의 임기는 2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 시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단체, 학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통일교육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	[통일교육의 위탁 등] - 시장은 지역통일 교육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에게 이 조례에 따른 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 가능 - 시장은 시 및 자치구 공직자 통일교육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소속 통일교육 기관과 협의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강사 파견 및 위탁교육 요청 가능
								[재정지원 등] - 시장은 통일교육기관, 그 밖의 사업자에 대하여 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시장은 법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은 기관·단체에게 필요한 행정적 지원 가능 - 관내 통일교육 위탁을 받은 기관·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가능

지자체	조례명 (제정일자)	주요사업내용 (단체장 책무)		시군 책무 및 지원	(평화)통일교육 위원회		실행조직(센터) 설치 및 지역사회의 협력 등	교육위탁과 재정지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사업	전문조직(강사단)운영		기능	구성(위원장, 당연직 등)		
대전	대전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조례 (2015. 12. 18)	[통일교육사업] - 통일교육 실태 조사 - 공직자 통일교육으로 통일대비 및 통일역량 강화 - 통일교육의 인력 양성과 교육 -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 지원사업 -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통일교육활성화 위원회 설치] - 대전광역시 통일교육계획 수립 - 통일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대전광역시 통일교육활성화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대행함			[통일교육사업] - 시장은 제1항의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

지자체	조례명 (제정일자)	주요사업내용 (단체장 책무)		시군 책무 및 지원	(평화)통일교육 위원회		실행조직(센터) 설치 및 지역사회의 협력 등	교육위탁과 재정지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사업	전문조직(강사단)운영		기능	구성(위원장, 당연직 등)		
경기	경기도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 조례 (2011. 4. 7)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 - 경기도형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도민, 공직자, 지방공기업등, 기업 및 각종 단체 등에 대한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 - 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립·운영 - 강사단의 양성 및 활용 - 통일교육원이 실시하는 평화통일교육에 교육대상자 파견 및 지원 -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평화통일교육 전문강사단 양성 등] -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고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전문강사로 인증 가능 - 도지사는 전문강사로 구성된 강사단을 운영 가능 - 도지사는 강사단이 평화통일교육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군, 지방공기업등, 종교단체, 여성단체, 청소년단체 및 지역사회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가능 - 도지사는 강사단과 협력하여 경기도형 평화통일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 가능	[시·군의 책무] - 도의 평화통일교육 시책에 따라 시·군의 실정에 맞는 평화통일교육 시책 수립·시행 가능 [시·군 평화 통일교육 지원] - 도지사는 매년 도내 시·군별 평화통일교육 실태파악, 실적 하위 시·군의 평화통일교육 확대를 지원하는 방안 마련 필요 - 도지사는 시·군별 평화통일교육 의 내용과 수준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12조의 강사단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마련 가능 - 도지사는 시·군의	- 평화통일교육 및 강사단에 관한 사항 - 경기도 평화통일교육센 터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 평화통일교육 관련 각종 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평화통일교육계 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평화통일교육계 획 연차별 이행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 구성 - 위원장은 평화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평화협력국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 평화통일교육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 평화통일 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 가능	[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치 등] -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센터를 설치·운영 가능 - 평화통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 •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 통일대비 공직자 평화통일교육 역량강화 및 인력양성 •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도민 평화통일교육의 실시 • 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홍보 • 평화통일 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 통일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 사회단체, 시·군, 사업소 등에서 시행하는 평화통일교육 지원 • 통일·안보 문화 체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평화통일교육의 위탁 등] - 도지사는 도 설치 교육기관, 평화통일교육센터, 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그밖에 평화통일교육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받은 기관 등에게 이 조례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및 강사단 양성 등을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가능 [재정지원 등] -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센터, 평화통일교육기관, 그 밖의 사업자에 대하여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 도지사는 법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에게 필요한 행정적 지원 가능

지자체	조례명 (제정일자)	주요사업내용 (단체장 책무)		시군 책무 및 지원	(평화)통일교육 위원회		실행조직(센터) 설치 및 지역사회 협력 등	교육위탁과 재정지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사업	전문조직(강사단)운영		기능	구성(위원장, 당연직 등)		
경기				-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연중·수시로 지원 가능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단체, 학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 - 평화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평화통일교육 추진을 위하여 도내 평화통일교육 단체 등이 참여하는 평화통일교육협의회 설립 가능 -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 평화통일교육을 하는 자 간의 협의·조정 및 기타 상호 간 협력증진 •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연구 자료 수집 및 발간 • 평화통일에 관한 인식 제고 및 홍보 • 평화통일교육 중사자의 자질 향상과 복리증진 •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도지사는 도내 평화통일교육 또는 강사단 양성 등의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가능

지자체	조례명 (제정일자)	주요사업내용 (단체장 책무)		시군 책무 및 지원	(평화)통일교육 위원회		실행조직(센터) 설치 및 지역사회의 협력 등	교육위탁과 재정지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사업	전문조직(강사단)운영		기능	구성(위원장, 당연직 등)		
강원	강원도 통일교육· 문화 활성화 조례 (2016. 12. 30)	[도지사의 책무] - 강원도지사는 통일교육·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함 [통일교육] -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 민간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통일·안보 현장체험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강원도민 및 공직자의 통일교육 - 이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통일문화] - 통일과 관련한 문화행사 및 기념사업 등 - 평화통일 방안 모색 등을 위한 학술회의 - 분단과 통일에 관련된 기록물에 대한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 이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위탁 등] -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가능 - 업무를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함

지자체	조례명 (제정일자)	주요사업내용 (단체장 책무)		시군 책무 및 지원	(평화)통일교육 위원회		실행조직(센터) 설치 및 지역사회의 협력 등	교육위탁과 재정지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사업	전문조직(강사단)운영		기능	구성(위원장, 당연직 등)		
충남	충청남도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1. 11. 10)	[통일교육의 활성화] -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도민의 참여와 협력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 도민 및 공직자의 통일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지자체	조례명 (제정일자)	주요사업내용 (단체장 책무)		시군 책무 및 지원	(평화)통일교육 위원회		실행조직(센터) 설치 및 지역사회의 협력 등	교육위탁과 재정지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사업	전문조직(강사단)운영		기능	구성(위원장, 당연직 등)		
전북	전라북도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2016. 9. 30)	[도지사의 책무] - 전라북도지사는 제3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함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 -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16조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원 방안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15명 내외 위원 구성 -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 행정부지사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 위촉 •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 사람 2명 •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 사람 6명 내외 • 평화통일 분야의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5명 내외 - 위원의 임기는 2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	[평화통일교육의 위탁 등] -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이 조례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 가능 - 평화통일교육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 가능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 -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지자체	조례명 (제정일자)	주요사업내용 (단체장 책무)		시군 책무 및 지원	(평화)통일교육 위원회		실행조직(센터) 설치 및 지역사회의 협력 등	교육위탁과 재정지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사업	전문조직(강사단)운영		기능	구성(위원장, 당연직 등)		
전남	전라남도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 조례 (2011. 10. 20)	[도지사의 책무] - 전라남도지사는 제2조의 기본이념 및 방향에 따라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도지사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가능 [사회단체 통일교육의 활성화] - 사회단체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 도지사는 도 소속 공무원 및 각종 사회단체 등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통일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함		-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방안 -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 -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 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은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 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2명 • 도 내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 가능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 도지사는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	[통일교육의 위탁 등] - 도지사는 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이 조례에 따른 통일교육 등 실시 위탁 가능 - 도 및 시·군 공직자에 대한 통일교육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소속 통일교육기관과 협의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강사 파견 및 위탁교육 요청 가능 [재정지원 등] - 도지사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 도지사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에게 필요한 행정적 지원

지자체	조례명 (제정일자)	주요사업내용 (단체장 책무)		시군 책무 및 지원	(평화)통일교육 위원회		실행조직(센터) 설치 및 지역사회의 협력 등	교육위탁과 재정지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사업	전문조직(강사단)운영		기능	구성(위원장, 당연직 등)		
제주	제주특별 자치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6. 5. 13)	[도지사의 책무]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재정지원] - 도지사는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 통일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통일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 통일교육 관련 현장 체험학습 및 연수 운영 •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참여 연구진

□ 연구책임

전지훈 초빙책임연구원

총괄

□ 내부 연구진

성태규 선임연구위원

고승희 연구위원

홍원표 책임연구원

송영현 책임연구원

목소리 연구원

신혜지 연구원